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 8월
박사학위 논문

통관제도 효율성 제고에 따른 통관 활성화방안 연구

- 주요국 통관제도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류 승 범

통관제도 효율성 제고에 따른 통관 활성화방안 연구

- 주요국 통관제도를 중심으로 -

Strategies for Active Customs According to Increased
Effectiveness in Customs Clearance System

- Focus on Customs Clearance System in Major Countries -

2017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류 승 범

통관제도 효율성 제고에 따른

통관 활성화방안 연구

- 주요국 통관제도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정 분 도

이 논문을 경영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류 승 범

류승범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u>김 명 호</u> (인)
위 원	호남대학교	교수 <u>이 동 렬</u>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이 제 홍</u>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심 재 희</u>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정 분 도</u> (인)

2017년 6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v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4
제1절 이론적 고찰	4
1. 통관제도	4
2. 국제기구의 무역원활화 논의 동향 및 결과	6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4
1. 국내연구	14
2. 해외연구	18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2
제3장 주요 국가의 통관제도	23
제1절 한국의 통관제도	23
1. 통관제도	22
2. 수출통관 관련제도	25
제2절 미국의 통관제도	28
1. 통관제도	29
2. 수출통관 관련제도	32
제3절 중국의 통관제도	38
1. 통관제도	38
2. 수출통관 관련제도	54

제4절 일본의 통관제도	63
1. 통관제도	63
2. 수출통관 관련제도	77
제5절 캐나다의 통관제도	84
1. 통관제도	84
2. 수출통관 관련제도	92
제6절 호주의 통관제도	94
1. 통관제도	95
2. 수출통관 관련제도	103
제4장 주요 국가의 통관제도 비교 및 활성화방안	105
제1절 주요 국가의 통관관련제도 비교분석	105
1. CFS 운영과 CS 관리	105
2. 통관관련제도 비교분석	105
제2절 통관관련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방안	118
1. 주요 국가의 수출입 통관절차의 비교 및 시사점	118
2. 통관관련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방안	156
제5장 결 론	159
제1절 논문의 요약	159
제2절 논문의 한계 및 향후과제	163
참고문헌	164

< 표 목 차 >

<표 2-1> 주요 국제기구의 무역원활화 정의	7
<표 2-2>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추진 경과 및 내용	8
<표 2-3>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의 내용	9
<표 2-4> APEC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12
<표 2-5> 통관제도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19
<표 3-1> 탄력관세율의 종류	24
<표 3-2> 우리나라 AEO 공인기준과 주요 내용	25
<표 3-3> WCO SAFE Framework상 AEO의 사후관리	27
<표 3-4>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28
<표 3-5> 거래가격의 가산요소 및 공제요소	29
<표 3-6> 중국의 통관관련 주요기관 및 업무	39
<표 3-7> 수출입 화물 통관단계	40
<표 3-8> 특수 수입화물 과세가격 평가방법	41
<표 3-9> 일반 수입화물 과세가격 평가방법	42
<표 3-10> 중국의 관세 관련 법률체계	42
<표 3-11> 중국의 수입관세율 범위와 적용범위	44
<표 3-12> 보세화물의 통관 절차	46
<표 3-13> 중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유형	48
<표 3-14> 기준별 기업분류 및 통관적용 조치	55
<표 3-15> 중국의 검험검역제도	59
<표 3-16> 식품라벨 표기사항과 금지사항	62
<표 3-17> 관세국의 주요 기능	64
<표 3-18> 일본 관세의 관계법령	65
<표 3-19> 특수한 형태의 관세	67
<표 3-20> 특수관세의 종류	68
<표 3-21> 수출 규제 이외의 법령 일람표	73
<표 3-22> AEO 공인혜택	78
<표 3-23> 캐나다의 대(對)한국 무역 및 투자 현황	84
<표 4-1> 주요 국가의 수출제도 비교	106
<표 4-2> 주요 국가의 관세법 처벌의 근거 법령 비교	107
<표 4-3> 주요 국가의 관세법 처벌 규정 비교	108
<표 4-4> 소액물품 특례기준 비교	109

<표 4-5>	우리나라 AEO제도와 중국 기업분류관리제도의 비교	110
<표 4-6>	우리나라와 중국의 FTA 원산지 검증 비교	111
<표 4-7>	중국의 REACH와 EU의 REACH 비교	111
<표 4-8>	주요 국가의 기업의 자율관리 비교 분석	113
<표 4-9>	주요 국가의 AEO 및 통관적법성 심사 비교분석	114
<표 4-10>	주요 국가의 사전심사제도 비교	115
<표 4-11>	주요 국가의 사전심사 신청절차 비교	116
<표 4-12>	주요 국가의 사전심사 결정 및 재심사	117
<표 4-13>	우리나라의 보세구역	119
<표 4-14>	우리나라의 수입신고	120
<표 4-15>	우리나라 수출통관제도의 변천사	122
<표 4-16>	미국 수입통관의 관계	124
<표 4-17>	미국의 운송수단에 따른 적하목록 제출시기	125
<표 4-18>	미국 보세운송의 종류	129
<표 4-19>	미국의 수출규제 담당기관	134
<표 4-20>	일본의 수입신고 후 심사의 구분	140
<표 4-21>	일본의 수출 면세 증명 서류	144
<표 4-22>	한국-호주의 농수산물식품 수입 추이	152

<그림 목 차>

<그림 3-1> 관세환급요건	25
<그림 3-2> 우리나라 AEO 공인 절차	26
<그림 3-3> 미국 C-TPAT 안전관리 주체 및 세부기준	35
<그림 3-4> 대중국 수출입 흐름도	50
<그림 3-5>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보호의 흐름도	54
<그림 3-6> 수입화물 검험검역 -1절차	60
<그림 3-7> 수출화물 검험검역 절차	61
<그림 3-8> 식물검역절차	71
<그림 3-9> 식품검역의 절차	72
<그림 3-10> AEO 운영 절차	79
<그림 4-1> 한국의 수입통관 절차	118
<그림 4-2> 한국의 수출통관 절차	121
<그림 4-3> 미국의 수입통관 검사절차	126
<그림 4-4> 중국의 수입 통관절차	136
<그림 4-5> 일본의 수입통관 절차	139
<그림 4-6> 일본의 수출통관 절차	143
<그림 4-7> 호주의 수입신고 절차	151

ABSTRACT

Strategies for Active Customs According to Increased Effectiveness in Customs Clearance System

- Focus on Customs Clearance System in Major Countries -

Seung-Beom, Ryu

Advisor : Prof. Boon-Do, Jeong, Ph. 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rade safety and facilitation is one of the trends and issues in international trade to achieve active flow of products through reasonable and efficient improvement of trade procedure.

Each country in the world has automated and simplified customs formalities for trade facilitation and enlargement as it was pointed out that complicated and unnecessary customs formalities disturbed active flow in trade. As trade facilitation has an important meaning of reduced cost in trade both for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most of the countries have joined in the negotiation about it. With 9.11 Terror in 2001 as its starting point, as more emphasis has been put on security in export and import freight for trade facilitation and border protection, much effort and attention have been paid on international logistics security system, and Manifest submission system is recommended for SAFE Framework.

According to this trend, as a means of trade facilitation,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program for only companies which are recognized as good companies in faster customs clearance and reduced lead time was introduced

and administered.

Korea introduced AEO program in 2009 and has improved it to alleviate post-management of authorized companies. Although our trade volume has been consistently increasing due to FTA expanding tendency, inefficient and excessive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have been recognized as a trade barrier. Difference in customs clearance processe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can be recognized as a non-tariff barrier which disturbs trade. Information acquisition in our customs clearance system is easy, but information on the customs clearance system of trading partners is limited.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customs clearance systems of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S., China, Japan, Canada and Australia and compared them to analyse problems of the systems and presented strategies to enhance them according to trade flows as follows:

First, global trade volume is steadily increasing due to expanded FTA, but inefficient and excessive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are recognized as a barrier which interrupts trade.

Therefor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have made efforts for trade facilitation by minimizing burden and transaction cost caused by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As World Customs Organization(WCO) ratified Revised Kyoto Convention on simplification and balance of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and introduced WCO SAFE Framework as a supply chain security protocol, our country introduced AEO in 2009 to join in the framework according to change in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The AEO system was designed to minimize non-tariff barrier such as unnecessary control and investigation for export-import companies which were authorized as safe and earnest. Therefore, the screening system should be recognized as a means of trade facilitation to achieve fast, transparent and standardized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Second, our country only inspect export goods at the place of loading and the rest of the inspection countries inspect goods at the place of report. Our country alone has an export control system and the U.S. inspects high-risk goods using EIS and ATS-AT programs. Thus, in terms of institutions, our country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xport-import customs clearance system.

Third, the law source of customs offence is customs laws is prescribed in the

Customs Laws in Korea, Japan and Canada, and that of the U.S. is prescribed in the Criminal Law. In case when an offence is regarded as grave, our country applies the Law on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for the case which is regarded as grave, but major inspection countries do not have any the law on aggravated punishment although Japan alone has articles on aggravated punishment. Therefore, it should be institutionally improved.

Fourth, as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standard values of tax exemption on small sum according to institutions of each country, it is difficult to compare them. In our case, simple customs clearance and manifest customs clearance systems are managed for express cargo and simple report and the system of tax exemption on the spot are managed for mails. Major countries have a legal basis in the Customs Law or related acts on express cargo, mails and electronic commerce import. They apply tax exemption standard on small sum regardless of import, express cargo, and mails, but it is suggested that our country should simplify different standards of simple report and small sum range.

Fifth, in terms of the law on punishment of customs offence, the punishment standard of Canada and Australia relies on prosecution of law courts, and the rest of countries consider smuggling as a serious violation and impose harsh punishment. However, our country does not impose severe punishment on the customs offence though the Law on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is applied for it. In terms of institutions, our country imposes more limit to export inspection than major inspection countries, but the punishment level of smuggling is the lowest in all the inspection countries.

Our country punishes false report relatively slightly and imposes only fines while the U.S. Japan and Canada punish it in imprisonment. For export and import of prohibited goods, as Japan and our country impose imprisonment while the U.S. and Canada break down punishment according to related individual acts rather than the Customs Law it is impossible to compare intensities of punishment. Most of the major inspection countries including the U.S., Japan and Canada are different .

Sixth, the present AEO program of our country was designed to enhance control of all the risks that may occur in customs administration including inspection, investigation and customs clearance and facilitate rule observation based on voluntary partnership with all the suppliers.

However, as major inspection countries manages the program for security of logistics, it is somewhat different in management and political direction. Our country judges whether customs clearance and cargo safety supervision is legitimate in authorizing AEO program and judging renewal to cut down specified administration expenses and to efficiently utilize the personnel. Major inspection countries have different systems from the AEO program.

Seventh, each country except Australia institutionalizes the screening system in the Customs Law, and specifically regulates the origin, the taxable amount, and classification. Specific procedures including expiration period and processing period are somewhat different, but the big framework is similar according to the APEC guideline.

The customs clearance system of our country has made considerable political efforts for trade safety, but illegal export is not remarkably decreasing.

To compare punishment acts on customs offence between major countries and our country, our illegal export punishment level is relatively low, but the legal and cultural system is different according to each country. As reinforcing punishment against illegal export contradicts our export facilitation policy, reinforcing supervision and inspection on the spot is desirable rather than manipulation of punishment level. Therefore, our present act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are well developed in comparison with those of major inspection countries should be maintained and information related to types of illegal export should be collected to control illegal export through enhanced effectiveness, risk control, supervision and inspection on the spot. To enhance customs clearance system, it is divided into customs system and customs related systems. The customs clearance system should develop electronic commerce facilitation arrangements to institutionalize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related ministries and international governments, institutions and laws enactment, readjustment of the Customs Law and other measures. The customs related systems are divided into AEO program and the screening system. The AEO system gives benefits to companies authorized, but for companies which do not know the AEO system and are not authorized because of strict authorization standards and cost burden,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necessary:

First, trade-related companies should understand the AEO program to receive national and international benefits and efforts to receive AEO authorization are necessary. Second, to receive the AEO authorization, the government support is needed in institutions and expenses.

The screening system is almost similar to recommendations of the major countries and APEC guidelines, but there are a few things to be reformed and reviewed: First, a rejudgement system on the taxable amount and classification should be developed. Second, things decided through screening should be declared. Third, it should be examined that there is not expiration period in the screening.

Key words: trade facilitation, Customs Clearance System, AEO program, AEO authorization, screening system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제무역의 흐름 및 이슈는 거래절차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상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무역의 안전 및 원활화’이다.

세계 각국은 국제적인 상품이동과 관련하여 복잡하거나 불필요한 통관절차가 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통관절차를 자동화하고 간소화함으로써 무역원활화 실현 및 교역을 확대를 위한 노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무역원활화는 개도국이나 선진국 모두에게 무역 거래비용의 경감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상당수의 나라가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2001년 미국의 9.11 테러를 기점으로 국제적으로 무역원활화의 촉진 및 국경안전을 위한 수출입화물의 보안확보가 강화됨에 따라 국제적 물류보안체제 구축에 대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SAFE Framework’를 채택하여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무역의 흐름에 따라 무역원활화를 위한 방법으로 신속한 통관과 리드타임의 단축 등에 대하여 우수업체로 인증 받은 기업만이 향유할 수 있는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 우수업체) 제도가 도입 및 활용되었다.

우리나라는 2009년 AEO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공인기업들의 사후관리를 경감하기 위해 내실화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FTA의 확대에 인하여 무역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관과 관련하여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절차가 원활한 무역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인식 되고 있다.

통관과정에 있어서 나라별 차이는 실제로 무역을 방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여겨질 수 있다. 우리나라 통관제도에 대한 정보 취득은 용이하지만 수출 상대국가의 통관제도에 대한 정보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

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통관제도 현황과 해외 선진통관 국가들인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의 통관제도 현황을 조사 및 비교하여 통관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통해 무역 흐름에 맞춰 통관제도 선진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논문은 주요 국가의 통관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통관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통해 무역 흐름에 맞춰 통관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국내외 연구논문, 국내외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유관기관의 자료, 인터넷, 관세청 및 통계청의 자료, 관련기구의 정기간행물, 단행본 등을 통하여 수집한 문헌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은 제1장부터 제5장까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에서는 서론부분으로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구성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통관제도에 대한 이론적 접근으로서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자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통관제도 및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의 통관제도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통관제도 비교 및 활용도 분석으로서 통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앞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요약정리 및 보충설명과 본 논문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제1절 이론적 고찰

1. 통관제도

가. 통관의 의미

한국은 1996년 7월부터 수출입 신고 수리제를 시행하며,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 수출입 허가를 받고 물품을 수출, 반송,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출, 반송, 수입을 위한 신고부터 세관의 물품검사 및 신고서의 심사를 거쳐 신고 수리되는 과정을 좁은 의미의 통관이라고 한다. 또한 수출, 반송, 수입을 위해 입출항, 하역, 운송, 보세구역 반입 등을 포함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과정을 넓은 의미의 통관이라고 한다¹⁾.

나. 수입통관

수입통관이란 세관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입신고를 받아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을 확인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규의 인·허가 사항 또는 수입승인사항 등의 제반사항과 세관에 신고되어 있는 사항이 모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부합된 때 수입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²⁾.

1)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4, p.285.

2) 기획재정부, 상계서, p.286.

다. 수출통관

수출통관이란 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내국물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 법령상의 규제사항을 확인하여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출신고인에게 수출면허를 허용하여 수출을 집행하는 것이다.

라. 반송통관

반송통관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수입신고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절차를 말한다.

마.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핵물질, 미사일, 재래식무기, 생화학무기, 군수품 사용가능 물품 및 이들 부품 등은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대외무역법 및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한 수출통제제도이다.

바. 간이통관

간이통관제도는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단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품, 탁송품, 특급탁송품, 우편물과 같이 소량이면서 빈번하게 반출입되는 물품 또는 면세물품 등에 대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거나 일반통관절차의 신고를 생략 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국제기구의 무역원활화 논의 동향 및 결과

가. 무역원활화 협정

복잡한 통관절차 및 무역 관련 규제에 따른 비용은 국제교역 총금액의 약 5~10%라고 추정되며,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다³⁾. OECD는 국제교역에 필요한 각종 거래비용의 규모를 국제교역의 총금액 중 2~15%로 추정하고 있다⁴⁾. APEC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제무역에 있어서 높은 관세 다음으로 복잡한 통관절차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⁵⁾.

통관절차에 필요한 서류에 따른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으며, EC는 서류관련 비용이 총교역금액의 3~7%이지만 서류에 사소한 실수라도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은 최대 15%까지 증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⁶⁾. 이에 영국 런던 상공회의소 및 SITPRO에서는 각종 통관서류를 UN Layout Key의 형태로 통일시킬 경우 서류비용이 50%가 절감될 것이라고 하였다⁷⁾.

위의 조사들의 결과를 보면 국제무역에 있어서 복잡한 통관절차는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각 기관 및 국제기구들은 무역에 의한 거래비용과 통관절차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여 무역을 원활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무역원활화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각국의 인프라 수준, 국내 규제, 기업 환경, 투명성 등 국경 내 조치 및 국경에서의 조치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과, 통관절차의 표준화 및 간소화 등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⁸⁾. 주요 국제기구들은 다음의 <표 2-1>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3) Paolo Cecchini, "The European Challenge 1992: The Benefit of a Single Market," Hampshire, Gower Publishing, 1988.

4) UNCTAD, "Columbus Ministerial Declaration on Trade Efficiency," 1994.

5) APEC, "Benefits of TILF in APEC," 2001.

6) EC, "EU Cost 306 Final Report," 1989.

7) IAPH, "Implementation of UN/ECE Recommendation[063]- Methodology for Estimating Costs and Benefits of Trade Facilitation," Contribution to UN/CEE meeting, 1986.

8) 홍미선, "통관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활성화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p.22.

<표 2-1> 주요 국제기구의 무역원활화 정의

국제기구	무역원활화 정의
WTO	상품의 국경이동 및 통관절차에 대한 국제무역절차의 조화와 간소화
APEC	세관행정, 표준과 기술규정, 기업인의 이동, 전자상거래 등 국경 간 상품의 이동을 지연시키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모든 절차 및 행정상 장애의 간소화 및 합리화
WCO	불필요한 무역 제한의 방지
UNCTAD	법령과 규정의 조화, 절차와 문서의 단순화, 운송·정보·통신체계 등 무역인프라의 표준화를 통한 무역효율성 증대
UN/CEFACT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상품이 이동하고 지급을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의 흐름과 절차의 간소화, 표준화 및 조화
OECD	국제무역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을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의 수집, 제출, 전달 및 처리와 관련된 활동, 관례, 형식의 간소화 및 표준화
ICC	국경 간 제품의 교역과 관련된 절차의 효율성 개선

자료: 홍미선, 전계서, p.22.

무역원활화를 통한 자유무역규모의 확대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제도적 합일점을 찾는다는 점에서 보다 심화된 형태의 경제통합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⁹⁾.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물류제도 개혁의 혜택은 첫째, 인적자원, 경비, 시간의 불필요한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잠재적 이익은 모든 관세 및 기타 부과금을 철폐할 때 예상되는 이익을 상회할 수도 있다. 둘째, 통관절차 및 검사절차의 자동화에 따른 이익이 발생된다. 셋째, 기술규제와 관련된 통상 분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¹⁰⁾.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을 지지한 비선진국 중 하나이며¹¹⁾, 협상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 받았다.

각 기관 및 국제기구의 무역원활화를 위한 노력 결과 2017년 2월 22일 WTO 164개

9) Assanie, Nizar. Michel Hardy and Mariette Maillet, "Facilitating Asia's Trade :A Rol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Discussion Paper,"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2000.

10) 김석민, "WTO 무역원활화 논의에 따른 중국의 통관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43집, 한국동북아학회, 2007, p.139.

11) Neufield, Nora, "The Long and Winding Road: How WTO Members Finally Reached 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WTO Economic Research and Statistics Division, Staff Working Paper, 2014.

회원국 중 112개국 수락하여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되었다.

<표 2-2>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추진 경과 및 내용

일시	추진 내용
1996	제1차 WTO 각료회의(싱가포르) : 상품무역이사회 논의 결정(싱가포르 이슈)
2001.9	제4차 WTO 각료회의(도하) : 5차 각료회의 이후 명시적 합의 하에 협상 개시를 규정, 구체적 협상 범위 합의 (GATT 5조 8조 10조)
2003.8	제5차 WTO 각료회의(칸쿰) : 각료합의 실패로 협상 개시여부 불투명
2004.7.8	WTO 차원의 협상 개시 노력으로 7월 'July Package' 타결 및 8.1일 공식협상 개시
2013.12	제9차 WTO 각료회의(발리) : 협상 타결('Bali Package'에 포함된 3개 부분의 일부)
2014.1.31.	WTO내 무역원활화 준비위원회(CTF) 설치(의장 : 필리핀 대사)
2014.5.7	협정문 법률검토 완료 및 공식 언어본(영어, 불어, 스페인어) 채택(CTF)
2014.7.22	무역원활화 협정 이행지원기금(TFAF) 설치 공식 발표
2014.7.31	WTO 협정문 부속서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 채택 실패(인도의 채택 거부)
2014.11.13	미국-인도 간 무역원활화 협정 이행 동의 합의
2014.11.26	개정의정서 최종문안 확정(CTF)
2014.11.27	WTO 협정문 부속서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 채택(WTO 특별 일반이사회)
2015.7	각 회원국은 의정서를 수락하기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
2017.2.22	WTO 무역원활화협정 발효

자료: 한국무역협회, “WTO 무역원활화 협정(TFA) 공식 개정의정서 채택과 기대효과”, Trade Brief, 국제 무역연구원, 2014.12.16., p.2.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절차의 간소화, 통관규정의 투명성 강화, 對개도국 우대, 세관 당국 간 정보교환 등을 규정하여 통관의 신속화 및 무역비용 감소를 통한 국가 간 교역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1995년 WTO 설립 이후 최초로 타결된 회원국 간 다자간 무역협상이며¹²⁾, 내용은 <표 2-3>과 같다.

이 협정은 최빈개발도상국과 개발도상국은 이행의 능력에 따라 이행의 의무를 부여하고 선진국의 지원 규정을 도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12)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 2.22 발효 -WTO 회원국의 통관절차 효율화로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 개선 기대-”, 보도참고자료, 2017.

<표 2-3>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의 내용

분류	조항	주요 내용
GATT 제10조 (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개선 및 명확화	제1조 정보의 공표 및 이용가능성	수출입 관련 정보의 공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 질의처 설치·유지 등
	제2조 의견제시 기회, 발효 전 정보 및 협의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회 제공, 이해당사자간 협 의 기회 제공 등
	제3조 사전심사	품목분류, 원산지 등에 대해 사전심사 요청, 사전심사 결정에 대해 재심 요청 등
	제4조 불복청구 또는 재심을 위한 절차	세관의 행정적 결정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불복 청구권 보장
	제5조 공정성, 비차별 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그 밖의 조치	국경에서의 통제 또는 검사는 위험관리에 기초하여 실시, 수 입 신고 된 상품에 대한 시험 절차 등
GATT 제8조 (수출입 수수료 및 절차) 개선 및 명확화	제6조 수출입 관련 수 수수료, 부과금, 벌금에 대한 규율	수출입 관련 수수료, 부과금 관련 사항을 공표하고 비용은 대 략적 실비에 한정
	제7조 상품의 반출 및 통관	도착 전 처리, 전자적 지급, 반출과 관세 등 부과금의 최종 결 정의 분리, 위험관리, 통관 후 심사, 평균 반출시간의 수립 및 공표, 인가된 영업자를 위한 무역원활화 조치, 특송 화물, 부 패성 상품 관련 무역원활화 조치
	제8조 국경 기관 협력	무역원활화를 위한 국내 및 국가의 국경 기관 간 협력
	제9조 수입을 위한 상 품의 세관 통제 하의 이동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하의 이동 허용
	제10조 수입, 수출 및 통과 관련 형식	형식·서류 요건의 간소화, 종이·전자 사본의 수용, 형식·절차의 국제표준 사용, 싱글윈도우 설치, 품목분류·관세평가 관련 선 적 전 검사 금지, 관세사의 의무사용 금지, 공통 세관절차 및 통일된 서류요건 적용, 위생·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거부 된 상품의 반송, 역내·역외 가공 상품의 세금감면 또는 환급 허용
GATT 제5조 (통과의 자유) 개선 및 명확화	제11조 통과 자유	회원국 통과화물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비용은 대략적 실 비에 한정, 회원국 간 협력
신규도입 (세관협력)	제12조 세관 협력	세관 간 수출입신고의 진위·정확성 확인을 위한 정보 교환 절 차, 상호주의에 의한 정보 교환, 요청한 정보의 비밀 유지 의 무 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중 9번째로 무역원활화협정 수락서 기탁”, 보도자료, 2015.

무역원활화협정의 발효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GDP 성장률 0.54% 증가 및 수출 1조불 증가¹³⁾, 평균 14.3%의 무역비용 감소¹⁴⁾, 2천만개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¹⁵⁾ 및 개도국의 통관 절차가 개선되어 우리 기업 수출의 여건 개선¹⁶⁾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WTO 사무총장인 호베르투 아제베두는 2030년까지 세계 경제가 0.5% 성장하고 세계 무역량도 저개발국가 중심으로 2.7%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개발도상국에 수출할 때 겪는 과도한 통관 절차와 비용, 신선식품의 통관·검역 소요시간 지연, 자의적인 품목 분류로 인한 부당한 관세 징수, 지역별로 다른 통관 규정 등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¹⁷⁾.

나. AEO 제도

세계관세기구(WCO)는 세관 절차의 조화 및 간소화에 관한 개정교토협약을 비준하였으며,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세관 보안의 강화 및 국가 간 화물 흐름의 원활한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 6월 WCO SAFE Framework라는 화물보안 의정서를 도입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WCO SAFE Framework에 동참하기 위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제도¹⁸⁾를 2009년에 도입하였다.

SAFE Framework은 AEO를 “국내 세관당국 또는 세관당국을 대신한 기관이 WCO 또는 이에 준하는 공급망(supply chain) 보안 기준을 준수한다고 인증한 국제적인 상품 교역에 참여하는 당사자”라고 정의한다.

13) WTO, “2015 세계 무역보고서”, 2015. 동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CGЕ) 모형 분석을 통해 전세계 GDP 성장률은 0.34%~0.54%, 수출증대는 7,500억불~1조불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 : 무역비용의 잠정적 효과”, 2015.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시 소득그룹별로 분석한 결과 OECD국가 11.1%, 중상소득국 13.7%, 중하소득국 15.5%, 저소득국 14.5%가 잠재적 무역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15) 국제상의(ICC)·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세계무역의체의 영향”, 2013. 선진국 1,800만개, 개도국 3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3. 무역원활화협정 상의 의무를 회원국들이 이행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이 3.34%~6.49%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17) 산업통상자원부, 전거서, 2017.

18) 안전관리 및 법령준수의 체제를 정비한 수출입공급망 당사자를 세관이 AEO업체로 인증하며, 인증 받은 수출입공급망 당사자에게는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민간과 세관 간의 협력 프로그램이다.

AEO제도¹⁹⁾는 WCO의 SAFE Framework의 핵심으로서 미국의 C-TPAT 제도와 WCO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9개 분야의 대상자에게 안전관리,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법규준수의 4가지 기준 및 약 60여개의 세부항목의 공인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²⁰⁾, 국제 무역의 신뢰성과 안정성 보증을 위하여 다수의 회원국들이 동 제도를 채택 및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운영하던 기업관리 제도에 안전관리 분야까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AEO 기반의 관세행정의 위험관리 체제에 동참하고 이 가운데 공인기업들의 사후관리를 내실화 하여 가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²¹⁾.

다. 사전심사제도

사전심사제도는 무역거래자가 관세할당, 관세의 감면세, 과세가격, 원산지, 품목분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를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이며, 일정기간 동안 관세당국과 해당 무역거래자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이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예측가능성 및 확실성을 강화하며, 통관시점에서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등에 관한 분쟁을 줄이고, 신속통관을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국제규범(WCO 개정교토협약, WTO 원산지협약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전심사제도를 수출입 전에 권한 있는 관세당국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식적인 결정으로 정의하고 있다²²⁾.

사전심사제도는 최근 국제 무역사회에서 통관절차의 신속, 투명성, 표준화의 강화를 위하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무역원활화의 이행수단으로 인식되며, WTO 국제무역센터에서는 무역원활화의 이행에 사전심사제도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였다²³⁾.

OECD에서는 국가별 무역원활화 관련 운영 실적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으

19) 국제 공급망의 모든 부문에서의 보안 향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제조업자, 수입자, 수출자, 브로커, 운송업자, 화물혼재업자, 중개업자, 항구, 공항, 터미널 운영업자, 창고·유통업자 등 모든 수출입 업자를 포함한다.

20) 김경호, “AEO제도의 실질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EO에 대한 사무관리 절차 개정을 중심으로”, 2013.

21) 김재일, “한국 관세청의 위험관리 고도화를 위한 AEO 제도 효율화 방안”, 관세청, 2014, p.56.

22) <http://www.wcoomd.org/en/topics/origin/instrument-and-tools/comparative-study-on-preferential-rules-of-origin/specific-topics/study-topics/rul.aspx>

23) International Trade Center,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A Business Guide for Developing Countries,” 2013, pp.10-11.

며²⁴⁾, UNCTAD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주된 관세 행정기관에 전문부서의 설립 및 정보기술의 지원을 통한 업무를 권고하였다²⁵⁾.

또한 APEC에서는 행정적 이행방안에 대하여 각국의 행정절차를 마련하여 공표하도록²⁶⁾ 다음의 <표 2-4>와 같이 사전심사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표 2-4> APEC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구분	내용
목적 및 심사대상	-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심사 이행을 위한 목적 - 쿼터, 환급, 수수료에 적용 가능
회신기한 및 방법	- 관세당국 또는 관련 기관에서 요청한 모든 자료가 서면으로 제출된 때에 일정 기한 내에 결정을 회신 -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반려결정에 대한 사실관계와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
유효기간 및 적용조건	- 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정황이 변경되지 않는 한, 발급 이후에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적용 - 동일 신청인의 향후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심사 결정 당시의 상황과 거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적용 가능
심사내용의 변경통지	- 사전심사 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신청인은 당해 결정의 사실관계와 사유에 관한 서면통지를 받아야 함
공표 요건	- 최소한 관보, 인터넷 또는 관세당국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정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공표(회신기한, 유효기간, 제출서류 및 양식 등 신청요건)
이의제기	- 신청이 있는 경우 결정 당국은 원 결정의 심리 또는 원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한 심리 - 결정 당국은 사전심사결정 또는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 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공할 의무가 없음
기밀유지	- 다른 무역거래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전심사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인터넷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의 요청 또는 필요에 의해 기밀정보 유지와 자료보관의 의무가 있음

자료: APEC, op. cit., 2010.

이처럼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사전심사제도를 WTO 무역원활화협정에 포함시켜 제도적 이행절차를 논의하였으며 원산지 및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는 의무

24) Evdokia Molse, Thomas Orliac, Peter Minor,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the impact on trade costs,"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s No.118, 2011.

25) APEC, "2010 CTI Annual Report to Ministers," Appendix 6: APEC Guidelines for Advance Rulings, 2010.

26) UNCTAD, "Trade Facilitation-Technical Notes: Advance Rulings(TN/TF22)," 2011.

화되었으나 쿼터, 관세면제, 관세평가 등에 대해서는 권고수준으로 합의하였다²⁷⁾.

우리나라는 협정 발효시 개발도상국의 통관절차 개선 및 무역거래비용 감소로 인해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2014년 5월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계획에 대해 모든 의무를 협정 발효 즉시 이행하겠다고 WTO에 통보하였다²⁸⁾.

2008년 이후로는 무역원활화 관련 조항을 보다 활발히 규정하기 위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통관절차 또는 관세행정협력 장(Chapter)을 두었으며, 예측가능성, 관세행정 협력, 투명성에 관한 조항이 두드러졌다²⁹⁾.

27) WCO, "Practical Guidelines Valuation Control," 2012, pp.21-24.

28) 오현길, "WTO 발리패키지 무역원활화협정 즉시 이행", 아시아경제, 2014

29) Yadashi Yasui, "Trade Facilitatio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CO Research Paper No.30, 2014, p.4.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국내연구

양준석(2004)³⁰⁾은 국제교역 원활화의 장애요인으로 복잡한 통관절차를 지적하면서 WTO 협상과제로 무역원활화를 채택하여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남구(2006)³¹⁾는 WTO 차원의 무역원활화 논의를 분야별로 검토·분석한 후 전자무역을 중심으로 WTO 무역원활화 논의가 수렴 및 체계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남풍우, 최준호(2006)³²⁾는 국제무역의 고도화와 경제의 글로벌화 등의 문제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를 기초로 하여 교역안전과 무역원활화를 위해 일본세관행정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와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본세관행정의 u-Customs 구현 전략을 전개하였다.

김석민(2007)³³⁾은 무역원활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제1교역국의 위치에 있는 중국의 통관물류제도와 최근 중국정부와 해관에 의해 추진 중인 통관물류 개혁방안에 대하여 분석한 후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엄광열(2008)³⁴⁾은 환동해경제권의 부상으로 점차 교역이 증대되고 있는 강원도와 극동러시아간의 교역증진을 위해 통관상의 문제점을 살피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장점을 극대화하여 환동해권역에서 강원도가 대러시아 경제협력의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백승래, 유성진(2008)³⁵⁾은 통관현장에서 민원수렴내역, 기존 개선내역, 통관·물류 통

30) 양준석, “WTO의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논의와 정책적 함의”, 무역학회지, 제29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6, pp.59-80.

31) 이남구,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정책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06, pp.139-162.

32) 남풍우, 최준호, “무역원활화와 교역안전을 위한 일본세관행정의 u-Customs 구현 전략”, e-비즈니스연구, 제7권 제5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6, p.396.

33) 김석민, 전게서, p.131.

34) 엄광열, “한국과 극동러시아간 교역증진을 위한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강원도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9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08.

35) 백승래, 유성진, “물류축진형 통관제도 구축방안”,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2권 제8호, 한국항해항만학회,

계내역 분석 등을 바탕으로 물류축진형 통관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세부 분야별로 세관의 목적달성과 더불어 물류흐름을 촉진하고 항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중성(2008)³⁶⁾은 일본과 한국의 관세제도를 수·출입 통관제도 및 관세법 체계를 중심으로 검토, 비교함으로써 동 분야에서 한국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향을 시사하였다.

성남길(2009)³⁷⁾은 물류업계, 항공사, 선사에서의 전략적 제휴에 대하여 통관업체 현황 분석을 하고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곽병곤, 송희영(2009)³⁸⁾은 전자상거래물품 통관과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한 후 건전한 전자상거래 통관의 정착을 위해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장우(2009)³⁹⁾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를 위하여 특별통관제도의 운용상을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세행정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효율적인 통관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정책적인 시사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재호, 마정화, 정경화(2009)⁴⁰⁾는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물품 반출 지원 및 관세납부의 편의 제공을 위해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의 유보조항을 조사하였다.

라공우, 강진욱, 이선표(2011)⁴¹⁾는 최근 개정되었거나 신제정된 중국 해관 관련법을 중심으로 관세관법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 관세법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유나(2011)⁴²⁾는 중국의 수입통관에 관한 제도와 법 및 세관 운영의 실태를 검토한

2008, p.659.

36) 김중성, “일본의 통관제도 연구”, 유통정보학회지, 제11권 제4호, 한국유통정보학회, 2008, p.6.

37) 성남길, “戰略的 提携를 통한 通關業體의 競爭力 強化 方案에 관한 實證研究”,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9, p.3.

38) 곽병곤, 송희영,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0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09, p.71.

39) 최장우,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0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09, p.230.

40) 정재호, 마정화, 정경화,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조항 조사”, 세법연구, 09-03, 한국조세연구원, 2009, p.8.

41) 라공우, 강진욱, 이선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1, p.84.

42) 이유나, “中國의 重裝備 機械 통관제도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2011, p.1.

후 거대한 중국영토에서 통일되게 적용될 수 있는 선진 통관제도의 당위성 및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장건위(2011)⁴³⁾는 중국 해관 설립의 현황 및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향만물류와 해관 통관간의 관계를 분석한 후 해관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향만 물류에 국제물류 발전추세가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조룡(2011)⁴⁴⁾은 한국과 중국의 수출입통관절차상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관련기업들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양기(2011)⁴⁵⁾는 관세평가의 전자적 적용을 위하여 통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세평가의 체계와 한국의 전자통관제도를 제검토하고 사후세액심사제도와 UNI-PASS 시스템 운용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김종훈(2012)⁴⁶⁾은 무역원활화 정책에 대한 의의 및 국제적 논의 동향을 살핀 후 무역원활화 구현을 위한 통관제도에 대해 고찰하였고, 중국의 통관제도에 대한 일반적 현황을 살핀 후 대통관 제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통관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라공우, 민태홍, 김형철(2012)⁴⁷⁾은 러시아의 관세법을 중심으로 관세제도의 특징과 통관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러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천홍욱(2012)⁴⁸⁾은 수출입기업의 AEO 제도 도입의 요인을 도출하였고, 도입요인 및 성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후 AEO 제도를 도입하려는 수출입기업 및 정부에게 방향을 제시하였다.

라공우, 강진욱, 김형철(2012)⁴⁹⁾은 일본의 세관행정 및 관세에 대한 변화에 대하여

43) 장건위, “중국통관제도의 현황 및 발전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1, p.3.

44) 조룡, “한·중 통관절차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2011, pp.1-2.

45) 이양기, “관세평가의 전자적 적용을 위한 통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1, p.25.

46) 김종훈, “WTO 무역원활화에 따른 중국의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 13권 제3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2, p.227.

47) 라공우, 민태홍, 김형철, “러시아 관세제도와 통관애로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12, p.48.

48) 천홍욱, “한국 수출입기업의 AEO제도 도입요인이 활용수준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49) 라공우, 강진욱, 김형철, “한일 세관행정 변화와 전략적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통상정

재무성의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일본의 변화에 대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한상훈, 김태환(2012)⁵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제도의 개념과 ICT 현황을 분석한 후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행정의 전자화를 위한 노력을 SaudiEDI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전자무역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일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안암(2013)⁵¹⁾은 중국과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서오관(2015)⁵²⁾은 수입 시 관련된 수입통관 제비용을 분석 및 문제점 확인 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정부기관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적당한 가격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입자에게는 불필요한 수입통관제비용의 제거 및 절감하는 통관제도를 만들고자 하였다.

최준호(2015)⁵³⁾는 한·인도간 경제교역의 활성화 방안이 급속하게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인도의 수출입통관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한·인도 CEPA를 더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태인(2015)⁵⁴⁾은 한국과 미국의 통관환경과 관세법 체계 및 구조를 비교분석하고 도입 및 활용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특히 수입통관제도를 수입신고절차와 관세납부절차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들을 상호 비교하여 한국 수입통관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한상훈(2015)⁵⁵⁾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구매 현황과 통관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학회, 2012, pp.273-299.

50) 한상훈, 김태환,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제도와 SaudiEDI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5권 제1호, 국제 e비즈니스학회, 2014, p.217.

51) 안암, “중국 전자통관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전자통관시스템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13, p.2.

52) 서오관, “수입통관 제비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5, p.2.

53) 최준호, “인도의 수출입통관제도를 이용한 한·인도 CEPA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무역연구원, 2015, pp.288-289.

54) 김태인, “한국과 미국의 관세법 및 통관제도 비교 연구”, 무역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15, pp.503-524.

55) 한상훈, “해외직접구매와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3권 제1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5, pp.1-23.

과약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소비시장 확대와 해외직접구매시장 활성화로 인한 역직구와 해외직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조일립(2016)⁵⁶)은 중국의 통관제도 및 관세의 법적현황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중국정부 및 세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변경되는 통관제도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그에 따른 중국의 통관제도 및 관세의 문제점을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해외연구

Pravin Gordhan(2007)⁵⁷)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정부와 기업은 수출입 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을 줄이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tephen Holloway(2009)⁵⁸)는 관세개혁의 핵심 구성요소는 통관절차의 자동화이며, 관세시스템의 현대화 및 무역원활화를 위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각 국가별 시스템의 국제수준이 통일될 때 활용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Stefan Henningsson, Niels Bjorn-Andersen(2010)⁵⁹)는 동부아프리카지역에 전자세관 기능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부아프리카공동체의 인증수출자(AEOs) 제도 확대 및 구조와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였다.

Juha Hintsa, Toni Mannisto, Luca Urciuoli and Mikael Granqvist(2012)⁶⁰)는 스위스 국경간 물류운영 및 무역에 대한 형태에 대해 기업들이 요구하는 향후 방안, 관련 기업들의 세관통관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정보, 세관통관을 위한 방법, 전자통관의

56) 조일립, “중국의 관세 및 수입통관제도의 문제점과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6.

57) Pravin Gordhan, “Customs in the 21st Century”, *World Customs Journal*, Vol. 1, No. 1, 2007, pp.49-54.

58) Stephen Holloway, “ THE TRANSITION FROM eCUSTOMS TO eBORDER MANAGEMENT”, *World Customs Journal*, Vol. 3, No. 1, International Network of Customs Universities, 2009, pp.13-25.

59) Stefan Henningsson, Niels Bjorn-Andersen, “Exporting e-Customs to Developing Countries: A Semiotic Perspective”, *Inform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Paper 7, Proceedings of Second Annual SIG GlobDev Workshop, Phoenix, USA, 2010, pp.1-17.

60) Juha Hintsa, Toni Mannisto, Luca Urciuoli and Mikael Granqvist, “Future development of e-Customs: a survey study with Swiss compan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Government Research*, Vol. 8, No. 4, IGI Global, 2012, pp.1-13.

잠재적 이익 등을 연구하였다.

Aleksandar Erceg(2013)⁶¹⁾는 신전자교환시스템(NCTS)은 국제무역 담당자들에게 효율적인 세관 절차 및 제품의 보다 빠른 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세관, 기업가, 전달자(포워더), 운송업자, 수출입업자들에게 거래 시간의 단축 및 서류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제품의 제공과 운송을 위한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팻다오후영위행사완(2013)⁶²⁾은 라오스의 통관절차 및 그에 관련된 제도, ASYCUDA에 대하여 연구 한 후 한국의 UNI-PASS를 비교하여 분석하여 라오스 전자통관시스템의 기능적 보완방안, 국가간 협력방안, 법제도적 개선방안 등 라오스 통관 체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2-5> 통관제도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연구자	연구내용
양준석 (2004)	국제교역 원활화의 장애요인으로 복잡한 통관절차를 지적하면서 WTO 협상과제로 무역 원활화를 채택하여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남구 (2006)	WTO 차원의 무역원활화 논의를 분야별로 검토·분석한 후 전자무역을 중심으로 WTO 무역원활화 논의가 수렴 및 체계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남풍우, 최준호 (2006)	국제무역의 고도화와 경제의 글로벌화 등의 문제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를 기초로 하여 교역안전과 무역원활화를 위해 일본세관행정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와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본세관행정의 u-Customs 구현 전략을 전개하였다.
김석민 (2007)	무역원활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제1교역국의 위치에 있는 중국의 통관물류제도와 최근 중국정부와 해관에 의해 추진 중인 통관물류 개혁방안에 대하여 분석 한 후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엄광열 (2008)	환동해경제권의 부상으로 점차 교역이 증대되고 있는 강원도와 극동러시아간의 교역증진을 위해 통관상의 문제점을 살피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장점을 극대화하여 환동해권역에서 강원도가 대러시아 경제협력의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백승래, 유성진 (2008)	통관현장에서 민원수렴내역, 기존 개선내역, 통관·물류 통계내역 분석 등을 바탕으로 물류촉진형 통관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세부 분야별로 세관의 목적달성과 더불어 물류흐름을 촉진하고 항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종성	일본과 한국의 관세제도를 수·출입 통관제도 및 관세법 체계를 중심으로 검토, 비교함

61) Aleksandar Erceg, "The New Computerized Transit System And E-Customs Influence On Savings In Transit Time And Costs", Business Logistics in Modern Management, Vol. 13, 2013, pp.143-152.

62) 팻다오후영위행사완, "한국 통관시스템 기반의 라오스 통관절차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2013, p.4.

(2008)	으로서 동 분야에서 한국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향을 시사하였다.
성남길 (2009)	물류업계, 항공사, 선사에서의 전략적 제휴에 대하여 통관업체 현황 분석을 하고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곽병근, 송희영 (2009)	전자상거래물품 통관과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한 후 건전한 전자상거래 통관의 정착을 위해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장우 (2009)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를 위하여 특별통관제도의 운용상을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세행정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효율적인 통관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정책적인 시사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재호, 마정화, 정경화 (2009)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물품 반출 지원 및 관세납부의 편의 제공을 위해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의 유보조항을 조사하였다.
라공우, 강진욱, 이선표 (2011)	최근 개정되었거나 신제정된 중국 해관 관련법을 중심으로 관세관법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 관세법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유나 (2011)	중국의 수입통관에 관한 제도와 법 및 세관 운영의 실태를 검토한 후 거대한 중국영토에서 통일되게 적용될 수 있는 선진 통관제도의 당위성 및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장건위 (2011)	중국 해관 설립의 현황 및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항만물류와 해관통관간의 관계를 분석한 후 해관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항만 물류에 국제물류 발전추세가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조룡 (2011)	한국과 중국의 수출입통관절차상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관련기업들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양기 (2011)	관세평가의 전자적 적용을 위하여 통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세평가의 체계와 한국의 전자통관제도를 재검토하고 사후세액심사제도와 UNI-PASS 시스템 운용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김중훈 (2012)	무역원활화 정책에 대한 의의 및 국제적 논의 동향을 살핀 후 무역원활화 구현을 위한 통관제도에 대해 고찰하였고, 중국의 통관제도에 대한 일반적 현황을 살핀 후 대통관제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통관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라공우, 민태홍, 김형철 (2012)	일본의 세관행정 및 관세에 대한 변화에 대하여 재무성의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일본의 변화에 대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한상훈, 김태환 (2012)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제도의 개념과 ICT 현황을 분석한 후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행정의 전자화를 위한 노력을 SaudiEDI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전자무역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일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안암 (2013)	중국과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서오관 (2015)	수입 시 관련된 수입통관 제비용을 분석 및 문제점 확인 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정부기관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적당한 가격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입자에게는 불필요한 수입통관제비용의 제거 및 절감하는 통관제도를 만들고자 하였다.

최준호 (2015)	한·인도간 경제교역의 활성화 방안이 급속하게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인도의 수출입통관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한·인도 CEPA를 더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태인 (2015)	한국과 미국의 통관환경과 관세법 체계 및 구조를 비교분석하고 도입 및 활용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특히 수입통관제도를 수입신고절차와 관세납부절차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들을 상호 비교하여 한국 수입통관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한상훈 (2015)	우리나라의 해외직접구매 현황과 통관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소비시장 확대와 해외직접구매시장 활성화로 인한 역직구와 해외직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조일림 (2016)	중국의 통관제도 및 관세의 법적현황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중국정부 및 세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변경되는 통관제도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그에 따른 중국의 통관제도 및 관세의 문제점을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Pravin Gordhan (2007)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정부와 기업은 수출입 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을 줄이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tephen Holloway (2009)	관세개혁의 핵심 구성요소는 통관절차의 자동화이며, 관세시스템의 현대화 및 무역원활화를 위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각 국가별 시스템의 국제수준이 통일될 때 활용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Stefan Henningsson, Niels Bjorn-Andersen (2010)	동부아프리카지역에 전자세관 기능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부아프리카공동체의 인증수출자(AEOs) 제도 확대 및 구조와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였다.
Juha Hintsa, Toni Mannisto, Luca Urcioli and Mikael Granqvist (2012)	스위스 국경간 물류운영 및 무역에 대한 형태에 대해 기업들이 요구하는 향후 방안, 관련 기업들의 세관통관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정보, 세관통관을 위한 방법, 전자통관의 잠재적 이익 등을 연구하였다.
Aleksandar Erceg (2013)	신전자교환시스템(NCTS)은 국제무역 담당자들에게 효율적인 세관 절차 및 제품의 보다 빠른 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세관, 기업가, 전달자(포워드), 운송업자, 수출입업자들에게 거래 시간의 단축 및 서류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제품의 제공과 운송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팻다오후영위 앵사완 (2013)	라오스의 통관절차 및 그에 관련된 제도, ASYCUDA에 대하여 연구 한 후 한국의 UNI-PASS를 비교하여 분석하여 라오스 전자통관시스템의 기능적 보완방안, 국가간 협력방안, 법제도적 개선방안 등 라오스 통관 체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자료: 작성자 요약정리.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 연구자들이 제시한 통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본 연구와 유의한 면은 있으나 본 연구는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 이후 첫 논문으로서 협정 과정 및 결과를 정리 하였으며, 선진통관 국가들인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통관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통관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통해 무역 흐름에 맞춰 통관제도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도록 한다.

제3장 주요 국가의 통관제도

제1절 한국의 통관제도

1. 통관제도

가. 관세평가 및 과세가격 결정

관세평가란 관세부과를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관세평가는 GATT 제7조에 따라 최대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지만 무상수입물품 등 실제로 모든 수입물품에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관세법 제30조(제1방법),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 국내판매가격(제4방법), 산정가격(제5방법)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⁶³⁾.

나. 관세율 제도 및 면세제도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며, 우리나라 국회에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기본관세율, 법률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부에 관세율의 변경권을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탄력관세율,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해 국제기구 또는 특정국가와 행정협정 또는 조약 등으로 정한 양허관세율이 있다.

63) 관세청, 관세행정안내, 관세평가와 과세가격, 2017.

<표 3-1> 탄력관세율의 종류

종류	내용
덤핑방지관세	외국의 덤핑판매에 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과
상계관세	외국에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부과
보복관세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관세부과
긴급관세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 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부과
조정관세	물품간 세율불균형 해소,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국내 시장 및 산업기반 보호 등을 목적으로 부과
할당관세	특정물품의 수입촉진,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세율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수량의 쿼터를 설정하여 놓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무세 내지 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고세율 적용
계절관세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 유사물품,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시장 및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
편익관세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해 관세상의 편익을 받지 아니 하는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물품이 수입될 때 기존 외국과의 조약에 의해 부과하고 있는 편익의 한도 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하는 것

자료: 관세청, 관세행정안내, 품목분류와 관세율, 2017. 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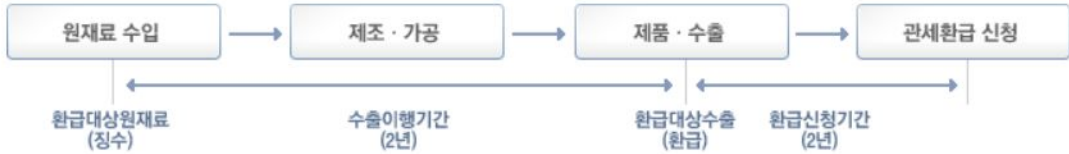
하지만 자가 사용 목적이며, 소액의 물품인 경우에는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관세법에서 소액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규정하며, 고시에서 각각 전자상거래물품의 특송물품, 우편물, 특별통관의 통관절차를 규정한다. 소액물품 면세 기준은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이며, 선물용 여부는 불문한다.

다. 관세환급

관세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에 불구하고 수출 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⁶⁴⁾를 말하며, 그 요건은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관세 환급요건



자료: 관세청, 관세행정안내, 환급, 2017.

2. 수출통관 관련제도

가. AEO 제도

우리나라의 AEO 제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공급자 당사자들과의 자발적 파트너십을 통해 관세행정과 관련한 법규준수도를 제고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 내부적으로 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있다⁶⁵⁾.

<표 3-2> 우리나라 AEO 공인기준과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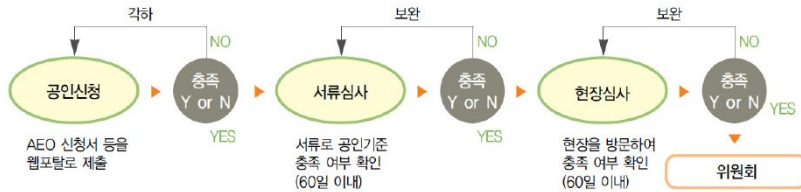
분야	주요 내용
법규준수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들이 정하는 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내부통제시스템	수출인신고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고관련 서류의 흐름, 기업의 영업활동, 회계처리와 관련된 부서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체제 평가
재무건전성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적절한 재정상황 및 기업규모인지의 평가
안전관리	거래업체, 훈련, 교육, 정보기술, 장비, 시설, 취급절차, 인사, 출입통제, 컨테이너 등의 안전성 충족여부의 평가

자료: 관세청, “알기 쉬운 AEO 제도 가이드”, 2013.

64) leegerlie blog(<http://blog.naver.com/leegerlie/80011172046>)

65) 장다영, “FTA확대에 따른 AEO 제도 활성화 방안 -부산세관 수입통관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p.18-19.

<그림 3-2> 우리나라 AEO 공인 절차



자료: 관세청, “알기 쉬운 AEO 제도 가이드”, 2013.

또한 전략적인 AEO 국가 간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을 추진하여 온 결과 2010년 미국 등을 시작으로 주요 교역국과 AEO MRA 체결을 확대하여 2016년 기준 세계 최대 AEO MRA 체결국이 되었으며⁶⁶⁾, 이 국가들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국에서 수입통관 시 검사생략, 검사 선별시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⁶⁷⁾.

WCO SAFE Framework 상 AEO의 혜택으로는 AEO 업체에게 가치가 있는 정보의 접근성 제고, 무역분쟁 또는 고조되는 위험수준의 기간과 관련된 특별한 조치, 새로운 종류의 화물절차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최우선 고려, 신속한 화물 반출, 신속한 운송시간, 낮은 창고비용 등이 있다⁶⁸⁾.

AEO 인증을 받고 난 후에는 공인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자율적인 법규준수와 수출입 안전관리 현황 등을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의 <표 3-3>과 같다.

우리나라는 중소 수출기업을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2010년부터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국제규범 범위 내에서 공인기준 완화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으로 중소수출기업의 공인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⁶⁹⁾.

또한 전략적인 AEO 국가 간 상호인정약정을 추진한 결과 세계 최대 체결국이 되었다⁷⁰⁾.

66) <http://www.aeo.or.kr/intrcn/aeoNationMraView.do>

67) 강성훈, 김미영, 김다량, “AEO 공인기업 사후관리제도 국제비교”, 관세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21.

68) WCO, “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Guidelines, Benefits to AEO,” 2015, pp.14-15.

69) 관세청, “관세연감 2014”, 2015, p.147.

<표 3-3> WCO SAFE Framework상 AEO의 사후관리

구 분	내 용	
위험평가의 자율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절차와 책임자를 문서로 기록 - 보안 관리 시스템의 정기적인 자체평가의 확립 및 수행 - 보안 위험의 평가를 수행, 위험 감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 - 다가오는 다음 기간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한 추천과 지정된 당사자의 피드백 및 심사결과를 포함하여야 함 	
내부통제	- 세관에서는 AEO 공인 심사 시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항목을 검토	
인증절차	제3의 인증자	세관당국에 의해 권한 위임된 제3자로서 안전위험도 심사나 관련 인증절차의 수행에 있어 세관당국을 보조하기 위하여 고용된 세관소속이 아닌 외부인임
검토 및 유지관리	정기보고서	AEO 공인기준 보안지침에 따라 세관당국에 제공하는 정보
	모범사례 공유	AEO 프로그램을 받아들인 세관당국은 정기회의를 실시하여 AEO 프로그램 개발의 논의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여야 함

자료: 강성훈, 김미영, 김다량, “AEO 공인기업 사후관리제도 국제비교”, 관세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46.

나. 사전심사제도

우리나라는 원산지, 품목분류,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을 수입 신고 전에 결정함으로써 조세의 예측 가능 및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전심사 제도는 사전에 ACBPS와 수입자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관세행정의 예측성을 높인다. 사전심사의 결정은 관세평가정보검색시스템에 관세청, 심판청구, 관세평가분류원, WCO 해설 및 예해, WCO 권고의견, WTO 결정 등 관세평가 관련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⁷¹⁾.

현재 우리나라와 발효된 FTA 중 한-EFTA FTA 및 한-ASEAN FTA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전심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심사대상에 따라 원산지 사전심사⁷²⁾, 품목분류 사전심사⁷³⁾,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사전검사⁷⁴⁾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70) 한국 AEO 진흥협회 홈페이지, <http://www.aeo.or.kr/intren/aeoNationMraView.do>

71) <http://portal.customs.go.kr/kcsass/index.jsp>

72) 관세법 제229조의 원산지확인기준의 충족 여부, 조약 또는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원산지확인기준의 충족 여부와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표시방법을 심사한다.

제2절 미국의 통관제도

미국은 중국 및 유럽과 함께 교역량이 많은 주요 교역대상국 중 하나이며, 최대 투자대상국이며⁷⁵⁾, 한-미 FTA가 체결되어 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다방면에 걸친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교역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1,115억 달러로, 우리는 미국에 702억 달러를 수출하고, 미국으로부터 452억 달러를 수입하였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등이며, 수입품은 항공기 및 부품,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흑자의 폭은 수년간 증가하고 있다.

<표 3-4>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무역현황	2012	2013	2014	주요 품목
수출(백만 달러)	58,525	62,052	70,285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수입(백만 달러)	43,341	41,512	45,283	항공기 및 부품,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투자현황	2012	2013	2014	2014년 말 누계
신규법인 수	493	507	524	12,541
천 달러	5,643,886	5,687,015	5,655,877	57,639,50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국가개황(2015)을 참고로 저자 제작성.

73) 관세법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106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관련 조항을 두었다.

74) 1990년 관세법 제27조에 법적적 근거가 마련되어 2008년부터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ACVA 제도를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75) 미국은 우리나라와 1882년 5월 22일 외교관계수립 후 전시지원협정(1992), 과학기술협력협정(1993), 투자촉진협정(1998), 범죄인인도조약(1999), 항공안전협정(2008), 자유무역협정(2012), 방위비분담협정(2014) 등 다양한 주요협정체결을 하였다.

1. 통관제도

가. 과세가격 결정과 세액 산정

(1) 과세가격 결정 방법

미국은 관세평가협정⁷⁶⁾을 수용하여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련된 규정을 <표 3-5>와 같은 19 U.S.Code §1401a(Value)에 두고 있다.

<표 3-5> 거래가격의 가산요소 및 공제요소

가산요소	공제요소*
① 수입 물품의 포장비용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②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 수수료 ③ 생산지원비용(assist) ④ 구매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 비용 ⑤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으로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금액	① 수출국으로부터 미국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운송비 ② 해상화재 보험료 ③ 미국으로 수입 후 발생하는 기술보조경비, 운송비, 설치비 등 ④ 미국 내에서의 판매세금, 연방세금과 관세

* 미국은 과세 기준 가격을 FOB로 하므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이 가산요소에 해당되지 않고 공제요소에 포함됨.

자료: KOTRA, "19 U.S.Code §1401a"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당해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이 가장 먼저 적용되며, 만약 금액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물품의 거래가격,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공제가격, 산정가격,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으로 순차적 적용된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산정가격의 거래가격을 공제가격 적용보다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는 수입국까지의 보험료와 운임료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에 관세를 과세하는 CIF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은 계약 화물

76) 정식명칭은 GATT 1994 VII조 이행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ATT 1994)

을 수출국에서 선박에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까지만 고려하는 FOB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다.

(2)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는 기본적인 관세 뿐만 아니라 품목에 따라 소비세(excise tax)⁷⁷⁾가 부과되기도 한다. 관세의 과세 시에는 가장 흔히 적용되는 유형의 과세로서 종량세(specific rates), 종가세(ad valorem rates), 종량세 및 종가세를 조합하여 과세하는 복합세(compound rates)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수수료는 해상 수입 화물의 가격에 부과되는 항만유지비(HMF, Harbor Maintenance Fee)와 세관에서 취급 수수료로 부과하는 행정 수수료인 물품취급수수료(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가 있다.

항만유지비는 외국무역지역 반입 허가, 승객 수송, 국내 운송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이며, 수입시에는 수입신고 시점에 지불한다.

물품취급수수료는 근거규정 19 C.F.R 24.23(c) 등에 의거하여 미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의 물품은 본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우리나라도 원산지증명을 통하여 본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FTA가 체결된 국가의 물품이더라도 특혜 규정을 적용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요르단 및 모로코는 본 수수료의 면제에서 제외되고 있다.

나. 관세율 제도

(1) 관세율의 적용

미국은 미국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가 HS 코드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위하여 품목 관련 정보 및 샘플을 제출하여 CBP의 결정 세번을 부여받을 수 있다.

77) 맥주, 와인, 발효주 등의 주류와 담배 제품.

미국 관세율표는 Column 1 및 Column 2로 구분하여 품목별로 관세율을 제기하며, 수입국 및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Column 1은 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세율로서 정상교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s, NTR)에 있는 국가⁷⁸⁾들에 적용되는 세율인 일반(General) 관세율, 기타 특정 협정이나 법령 등에 의해 적용되는 특혜세율로서 미국과의 양자 또는 다자 간 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협정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인 특별 관세율과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특혜관세(GSP)로 나뉘어져 있다.

Column 2의 세율은 테러 국가 등 적성 국가⁷⁹⁾에 적용되며, 본 세율을 적용받는 국가는 Trade Expansion Act of 1962의 section 231 또는 257(e)(2), Tariff Classification Act of 1962의 section 401, Trade Act of 1974의 section 404(a) 또는 그 밖의 법 혹은 대통령에 의해 결정된다⁸⁰⁾.

(2) 반덤핑 및 상계관세

미국은 무역구제조치 수단의 하나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사용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소급(retrospective) 시스템을 적용한다.

반덤핑 및 상계 관세와 관련하여 미국 상무부,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 무역위원회(ITC)에서 각각 법을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상무부는 과세 대상 상품이 공정한 가치의 미만으로 판매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 후 과세율을 책정한다.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은 상무부가 평가한 특정 수입재로 인하여 산업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실제 의무 관세부과율을 책정한다. 무역위원회는 수입되는 제품이 특정 미국 산업에 피해를 일으켰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3) 비관세

78) 우리나라를 비롯해 칼럼1의 Special 란에 속한 국가들과 칼럼 2에 속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 General란의 관세율에 적용을 받는다.

79) 현재 라오스, 북한, 쿠바 등이 해당된다.

80) 한국조세제정연구원, “주요국의 통관제도 -미국편-”, 2014, pp.82-83.

미국 세관은 관세 이외에도 화물하역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MPF), 부두사용료(Harbor Maintenance Fee; HMF) 등을 부과하고 있다.

화물하역료는 세관에서 Processing Fee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Air Shipment 및 Ocean 모두 해당되며, 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부두사용료는 Ocean Shipment에 해당되며, Air Shipment에는 해당되지 않고, 모든 국가에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다⁸¹⁾.

(4) 수출입 요건과 승인

미국은 불법 물품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역 관련 주요 현안으로 수입 안전을 내세우며, 물품검사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에서는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화물을 감시하기 위한 여러 부처 간 정보공유 협력시설로 수입안전정보분석센터(the Commercial Targeting and Analysis Center, CTAC)⁸²⁾를 설치하였다.

또한 원산지 표시제도 및 품질표시(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수출통관 관련제도

미국 세관당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경 및 운송보안의 확보가 미국의 핵심 과제가 되었으며, 이를 위해 2002년 11월 서명된 「국토안전보장법」에 따라 2003년 2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⁸³⁾를 발족하였다⁸⁴⁾.

또한 테러리즘에 대응하고 불공정 무역에 따른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하여 2002년 4월 물류안전공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민관 파트너쉽인 대테러 세관-무역업자가 파트너십(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TPAT)이 창설되었다⁸⁵⁾.

81) KOTRA, "미국의 관세제도", 국가정보, 미국.

82) <http://www.cbp.gov/trade/priority-issues/import-safety/ctac>

83) 해안경비대, 수사감독국, 운수보완국, 동식물검역국, 국경경비대, 이민귀화국, 관세청, 세관 및 국경보호국 등 8성청으로 이루어져 있다.

84) 한상현, 최준호, "WCO표준(Standards)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보완조치 강화방안", 한국관세학회, 2007, p.83.

가. C-TPAT

(1) C-TPAT 운영 현황

C-TPAT는 공급망 당사자별로 보안 항목 및 보안 기준을 제시하여 그 기준에 맞는 당사자에게 세관당국에서 공인함으로써 공인 업체⁸⁶⁾에게 빠른 수출통관 및 선적, 낮은 검사 비율, 트레이닝 프로그램 참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세관당국은 1년 이내에 C-TPAT의 승인된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서류 및 현장을 인증심사하며⁸⁷⁾, 세관당국의 사정에 따라 심사기간은 10 근무일 이내에 이루어진다⁸⁸⁾.

인증심사 절차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인증증서 교부와 함께 해당 업체를 담당하는 물류보안 전담직원이 지정되고⁸⁹⁾, 인증심사를 마친 C-TPAT 기업은 최초 인증심사 내용과 세관당국에 의하여 평가된 위험을 기반으로 4년마다 재심사를 받는다⁹⁰⁾.

세관당국은 C-TPAT를 통하여 대미국 수입 관련 업체에 대한 보안 정보 취합과 동시에 가입업체에 대하여 세관검사 완화 또는 면제, 물류보안 전담직원 지정, 벌금 경감, 우선 반출 및 검사비용 절감, 기타 세미나 및 교육 등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⁹¹⁾.

(2) C-TPAT 사후관리 현황

1) 정기 안전항목 보고서(Annual Review of Security Profile)

정기 안전항목 보고서는 물류보안 전담직원에게 다가올 검증 준비 및 가치 있는 정

85) 정재호, 박지우, 양지영, "주요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제도 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p.43.

86) 수입업자, 수출업자, 해상 운송업자, 철도 운송업자, 항만 터미널 운영업자, 멕시코의 장거리 운송업자, 고속도로 운송업자, 외국 제조업자, 관세사, 화물혼재업자, 항공 운송업자, 제3자 물류업자 등이 있다.

87) 김석오, "C-TPAT 활용을 통한 대미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3, pp.11-16.

88) CBP, "C-TPAT Validation process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16.

89) 김석오, 전게서, p.13.

90) WCO, "Compendium of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Programmes," 2015, p.30.

9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통관제도(미국)", 2014, pp.95-97.

보를 제공하며, C-TPAT 가입자의 안전현황에 대해 재평가를 가능하게 해주고, 세관 당국은 현재 기업이 물류보안 규정 및 절차를 맞게 이행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⁹²⁾.

2) 국제공급망 안전 위험평가(International Supply Chain Security Risk Assessment)
국제공급망 안전 위험평가는 C-TPAT 공인 기업의 국제 공급망 파트너의 보안에 대한 취약점 및 위해 항목을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C-TPAT는 미국 세관 및 민간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 위험관리 개념을 통하여 건전한 물류 공급망을 추구한다⁹³⁾.

C-TPAT는 관리 주체를 13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공급망의 자율적 위험관리를 하며, 다음의 <그림 3-3>과 같이 8개의 안전관리 조건을 제시하여 관리의 지속성 및 효과성을 제고한다.

C-TPAT 안전관리 주체들은 다음의 단계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급망의 안전 무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단계, 물류흐름 확인 및 비즈니스 파트너를 식별한다. 물품의 생산국에서 수입유통 단계까지의 무역 공급망의 전반에 걸친 직접 또는 간접되는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를 식별한다.

2단계, 위해요소를 평가한다. 조직범죄, 밀입국, 밀수, 테러와 같은 물류 흐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공개된 자료를 통해 식별한다.

3단계, 취약점을 평가한다. 위해요소 평가에서 식별된 국제공급망의 취약점으로 테러 및 기타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C-TPAT의 최소 보안 기준을 토대로 재평가한다.

4단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기술, 재정, 인력 등의 가용자원의 범위를 고려하여 세부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단계, 위험평가 수행결과 및 개선결과를 보고한다.

92) CBP, "Supply Chain Annual Security Profile Review(Formerly Self Assessment)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10.

93) CBP, "C-TPAT's Five Step Risk Assessment Process," 2014.

<그림 3-3> 미국 C-TPAT 안전관리 주제 및 세부기준

관리 주제	수입 업체	운송인				혼재업자			3PL	외국 제조 업자	관세사	항만· 터미널 운영인
		항공	해상	철도	도로	장거리 (멕시코)	항공	해 상				
▽												
안전 기준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보안		물리적 출입통제			인사보안			절차상 보안			
	· 컨테이너 검사 · 트레일러 검사 ·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봉 인		· 사원 · 방문자 · 배달(우편 포함) · 무단 출입자에 대한 신분증 요구 및 제거			· 채용전 확인 · 배경 점검/조사 · 해고절차			· 문서처리 · 적하목록 절차 · 선적 및 인수 · 화물 불일치			
		물리적 보안		정보기술 보안		보안교육 및 위협인지도		사업 파트너 요구조건				
		· 울타리· 게이트 및 초소 · 주차· 건물구조· 조명 · 잠금 장치 및 열쇠 통제 · 알람장치 및 비디오 감시 카메라		· 암호보호 · 책임				· 보안절차 · 현장 · 세관의 공급망 보안 · 프로그램의 참가 및 인증 · 보안절차				

자료: 김재일, 2014.

나.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mporter Self Assessment, ISA)

2002년 6월 C-TPAT를 보완하기 위해 수입자 자율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세관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우수한 업체로부터 자율 심사결과를 매년 보고 받음으로서 기업 관리를 대신 한다⁹⁴⁾.

수입자 자율심사제도는 C-TPAT와 유사한 점이 많으나 수입자 자율심사제도는 무역법규 준수파트너십의 성격임에 반해 C-TPAT는 물류보안파트너십이라는 차이가 있다⁹⁵⁾.

수입자 자율심사제도는 집중심사제도와 동일하게 기업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를 위한 구성요소로서 통제환경, 위협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모니터링의 5가지 요소를 포함한다⁹⁶⁾.

94) 한국관세무역개발원, “AEO 심사기법과 확산방안 연구용역”, 관세청, 2009, pp.69-76.

95) 송선옥, “미국 관세심사의 기업내부통제시스템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4권 제3호, 2009, p.36.

96)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계서, pp.75-76.

다. 세관관리(재심사)

재심사는 세관의 최초 심사 이후의 단계이며, C-TPAT 기업이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계속적으로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그 대상은 C-TPAT 등급 Tier 2와 Tier 3이다⁹⁷⁾.

라. 기업상담전문관 제도 및 CEE기관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AM)제도는 세관이 무역 법규위반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수입업체에게 지속적으로 정보 및 교육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법규준수를 높이고, 기업의 오류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다⁹⁸⁾.

기업상담전문관은 국제무역국에 소속되어 기업상담전문관을 전문으로 활동하는 국가기업상담관과 현업관리국에 소속되어 원산지, 지적재산권 등 다른 업무와 같이 겸업으로 기업상담전문관을 활동하는 세관기업상담관(Port Account Manager, PAM)으로 구분된다.

CEE기관(Center of Excellence and Expertise)은 C-TPAT 및 수입자 자율심사제도 기업의 세관 업무처리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업체별 또는 산업군으로 세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운영기관이다.

CEE기관은 세관 통관업무 중 주로 수입신고절차, 쟁송, 사후 심사업무, 납세신고 후 세액 정정, 화물반출신고 등의 사후정산활동에 대한 업무를 처리한다.

마. 사전심사(Advance Ruling)제도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CSI)는 미국으로 수입되려는 컨테이너를 선적되기 전에 수출국에서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는 제도이며, 태평양 및 대서양을 통해 미국으로

97) U.S Safe Port Act SEC. 219

98) 성남길 외 4인,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제도의 해외 사례조사 및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9, pp.34-71.

수입되는 화물 중 약 90% 정도가 수입되기 전 사전조사를 받는다⁹⁹⁾.

수출입물품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 관련 사항, 품목, 원산지 결정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하여 사전에 질의하는 제도로서 미국 관세청에서 198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¹⁰⁰⁾.

바. 자유무역지역(FTZ, Foreign Trade Zone) 제도

국제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미국 내 지정된 FTZ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사. 수출통관 관련 규정 위반에 관한 처벌

미국은 밀수출의 경우 관세법 18. U.S Code 554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하여 처벌한다.

외국법이 미국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이나 몰수시 미국 또한 밀수한 자가 미국과 관련이 있다면 관세법 18. U.S Code 546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하여 처벌한다. 비고속도로의 모바일 장비, 항공기, 선박이나 도난된 자동차 등의 수출입시 관세법 18. U.S Code 553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하여 처벌한다. 수출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하여 처벌한다¹⁰¹⁾.

그러나 금지품 수출입에 대한 처벌 규정은 관세법이 아닌 관련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다.

99) US CBP,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2006-2011 Strategic Plan, August 2006, p.37.

100) 이상엽·김미영·이민선, "주요국의 사전심사제 비교 연구", 2014, pp.27-38.

101) 정재호, 김수영, 노영예, "주요국의 관세법 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제3절 중국의 통관제도

1. 통관제도

중국세관은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신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엄격한 수출입신고제도, 서류 및 상품통관이 2원화된 통관절차, 통관기업과 통관원 관리 제도 운영, 세관 검사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대통관제도를 운영하여 공항 및 항구의 신속통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수출입화물 통관절차는 일반적으로 세관신고, 화물검사, 관세징수, 통관 및 반출입 등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중국정부는 대통관 절차를 일련의 절차로 전산화시켜 일괄처리 한다면 신속통관으로 인해 수출입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될 수 있으므로 대통관 사업 시행에 적극적인 의욕을 보였다.

대통관제도란 신속통관을 목적으로 수입절차 중 통관 관련기관과 연관되는 모든 절차를 포괄하는 광의의 통관개념이며, 대통관 절차를 일련의 절차로 전산화한 후 일괄처리하는 제도이다¹⁰²⁾.

대통관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개혁으로는 먼저 Fast Track 육로통관절차의 실시로 인해 환적차량이 전자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과거 1분에서 현재 4~5초로 단축되었다¹⁰³⁾. 또한 무지통관의 시행, 전자해관 구축, 전자항구 구축을 하였고, 온라인결제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관세수속 처리시간을 6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하였다.

가. 통관 행정조직 및 관리 업무

중국 해관은 전국 267개 내륙철로 개항지 및 공항만을 관리하며, 98개의 감시구역¹⁰⁴⁾을 운영한다. 중국의 통관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국무원 직속의 장관급 기관인 중국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hina Customs, GACC)이다.

102) 김석민, 전개서, p.146.

103) Yun-Wing Sung, "The China-Hong Kong Connection(The Key to China's Open Door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10.

104) 15개의 보세구, 12개의 보세항구, 4개의 종합보세구, 8개의 보세물류원구, 59개의 수출가공구 등

전반적인 관세 업무는 중국 해관에서 담당하며, 관세와 관련된 사항을 국무원 관세 세칙위원회에서 결정한다¹⁰⁵⁾.

중국 해관총서의 주요 기능은 여행자휴대품, 화물, 우편물품과 기타 물품 감독관리¹⁰⁶⁾, 국경을 출입하는 운송수단, 관세 및 기타 세금의 징수¹⁰⁷⁾, 해관 통계의 작성¹⁰⁸⁾, 기타 해관업무의 처리, 밀수단속¹⁰⁹⁾ 등이다.

나. 통관 절차 및 단계별 특징

중국의 통관에 관련된 주요기관은 다음의 <표 3-6>과 같이 해관, 출입국검사검역국, 국가외환관리국, 상무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등이 있다.

<표 3-6> 중국의 통관관련 주요기관 및 업무

기관	업무
해관	수출입 화물 및 운반수단의 출입국 감독, 해관 관리, 항구관리, 지적재산권 해관 보호, 해관 통계, 밀수 조사, 수출입 화물의 조사와 분석업무, 사후평가 업무, 보세가공 및 보세창고 관리업무, 납세의이신청의 처리, 관세의 부과징수와 환급, 납세가격의 산정, 납세의무자의 품목분류 및 세율의 적용 등
출입국검사검역국	각종 검역업무, 검사 및 검역 하위기구의 관리감독, 검사검역 통계업무, 수입허가제도에 의한 민간상품 검사
국가외환관리국	국제 수출입 통계 데이터 처리, 국제금융 관련 활동 참여, 국가외환보유고의 경영 및 관리, 외환시장의 관리 방법 시행령 제정, 외화수지와 국제수지 관련 정책건의 등
상무부	경제협력 및 외국투자의 법규 및 시행안 제정, 대외적 정책 수립, 독점규제 및 시장체계 수립, 수출입 할당 업무 등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품질감독검사검역, 동식물 검역과 감독, 출입국 위생검역, 출입국 검사검역의 종합적인 업무 규칙 및 제도 제정, 계량을 통일적으로 관리, 전국 품질 업무를 거시적으로 관리 및 지도 등

김종훈, 전계서, pp.236-237.

105) 관세청·관세무역개발원, “외국 관세청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 연구: 중국”, 2012.

106) 관리제도 및 절차에 따라 출입국 운송수단, 화물, 물품의 출입국 화동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관리 업무이다.

107) 대외무역 관리제도의 중요한 보조적 수단으로 관세 징수와 수입부분에 대한 해관 대리징수가 있다.

108) 실제 수출입 화물을 대상으로 수출입화물 통관서 또는 해관에서 비준한 기타 신고서류를 수집, 가공, 정리, 처리하여 수출입화물의 수량, 품목, 가격, 업체, 화물 공급원, 국가, 운송방식, 해관별, 무역방식 등의 항목을 각각 종합하여 분석한다.

109) 해관에서 감독관리와 세금 징수 등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보장조치이다.

중국의 통관 절차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감관실시 과정을 시간의 전후에 따라 살펴보면 전기단계, 수출입단계, 후속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기단계는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관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감관요구에 따라 화물이 수출입하기 전에 해관에 준비수속을 하는 과정¹¹⁰⁾이다.

수출입단계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표 3-7>과 같이 신고, 화물검사, 관세징수 및 납부, 통관 및 반출입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표 3-7> 수출입 화물 통관단계

단계	조치사항
1단계 : 신고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통관 신청하는 행위
2단계 : 화물검사	해관이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를 통해 신고서류와 화물의 일치 여부, 위법 행위의 유무 및 수출입의 합법성을 검토하는 단계
3단계 : 관세 징수 및 납부	해관에서 발급한 세비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해관에서 지정한 은행에 세비를 납부하는 것
4단계 : 통관 및 반출입	해관담당자가 서류신고, 화물검사, 관세징수 및 납부의 통관 절차를 재확인한 후, 확인 인장을 찍고 수출입을 반출시키는 것

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전계서, p.89.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후속단계는 통관이후의 세관, 세무국, 은행 등 관련기관의 사후관리 및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이나 그 대리인이 해관의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감관요구에 따라 화물을 수출입할 때, 가공, 장치, 사용, 조립, 유지보수 후에 규정된 요구에 따라 규정된 기한 내에 해관에 상술한 수출입화물의 정산 및 종결 및 감관의 해제 등을 신청하는 과정이다.

다. 과세가격 결정과 세액 산정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은 다음의 <표 3-8>과 <표3-9>와 같이 해관이 동 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심사 및 확정하며, 만약 거래가격을 확정하지 못했다면 해관에서 법에 의해 결정한다¹¹¹⁾.

1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세법연구센터, 2013, p.87.

111) 중국 해관법 제55조 및 수출입관세조례 제3장

<표 3-8> 특수 수입화물 과세가격 평가방법

무역방식	화물유형	평가방법	
원료수입가공 (비보세부분)	원료	원료 수입을 신고할 때의 거래가격으로 확정	
원료수입가공 (보세부분)	원료	원료 기존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내수신고 접수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 로 확정
	완제품 (불량품, 부산품)	원료 기존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위탁가공	원료 또는 완제품 (불량품)	내수신고 접수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수출가공구	완제품, 불량품	내수신고 접수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조각, 부산품	해관에서 평가하여 확정된 내수가격	
보세구 가공기업	수입원료 또는 완 제품(불량품)	내수신고 접수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원료수입가공 완 제품(경내 구매원 료 포함)	완제품에 포함된 경우 구입한 연료의 기존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원료 기존 수입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내수신고 접수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위탁가공 완제품 (경내 구매원료 포함)	내수신고 접수시 동시 또는 대략 동시 수입한 원료와의 동류 또는 유사 화물 수입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조각, 부산품	해관에서 평가하여 확정된 내수가격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구, 보세물류센터 입국	조각, 부산품	원료 및 그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경내 판매가 격을 기초로 확정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 중국”, 2013, p.37.

<표 3-9> 일반 수입화물 과세가격 평가방법

구분	내용	비고
1방법	당해 물품의 수입거래가격	
2방법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수입국의 이윤 및 일반경비, 수입원가관련 비용 및 관세 등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국판가격에서 제외)	5방법 우선적용 가능
5방법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조원가 + 수입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 수출국의 이윤 및 일반경비)	
6방법	상기의 방법으로 관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다면 객관, 통일, 공평의 평가원칙에 의해 객관적으로 수량화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수입화물 관세가격을 평가하여 확정	

자료 : WTO 관세평가협정

라. 관세율 제도

관세체제는 7단계 관세율에서 5%, 10%, 15%, 20% 등 4단계 관세율로 수정되었다.

<표 3-10> 중국의 관세 관련 법률체계

분류	주요법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¹¹²⁾ - 해관법¹¹³⁾ - 수출입 상품검역법 - 동식물검역법 - 고체 폐기물오염환경예방처리법 - 국경위생검역법 - 야생동물보호법 - 약품관리법 - 문물보호법 - 식품안전법
행정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수출입관리조례 - 수출입관세조례¹¹⁴⁾ - 지적재산권해관보호조례 - 야생식물보호조례 - 수출관리조례

	- 외환관리조례
부서규정	-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 - 수출외환회수관리방법 - 수입약품관리방법 - 정신약품관리방법 - 방사성약품관리방법 - 수입가축약품관리방법 - 외상투자기업자동수입허가관리 실시세칙
국제조약	- 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 - 무역정책검토제도 - 교토공약 - 멸종위기야생동식물국제협약 - 몬트리올의정서 - 런던지침 - 정신약품국제공약 - 런던지침 - 로테르담공약 - 바젤공약 - 국제방직품무역협정 - 세계직적재산권조직설립공약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중국의 관세는 과거 일반관세율과 우대관세율로 두 가지 뿐이었으나, WTO 가입 이후 최혜국대우 원칙을 토대로 다음의 <표 3-11>과 같이 7가지 세율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회원국 의무 실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세 인하를 하여 왔으며¹¹⁵⁾,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세계 HS 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하여 중국의 관세율을 검색할 수 있다.

112) 중국의 대외무역에 관한 기본법으로 1994년 5월 12일 처음 제정되었으며,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개정을 추진하여 개정 대외무역법이 2004년 4월 공포되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13) 중국 해관이 출입국 운송수단, 화물, 물품을 감독관리하며 세금을 징수하는 법률로서 해관 감독관리의 법률적 근거이다.

114) 해관법에 근거하여 수출입 허가 화물, 입국 물품의 수출입 관세 징수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115)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중국)”, 2010, pp.243-246.

<표 3-11> 중국의 수입관세율 범위와 적용범위

세율종류	적용범위
최혜국세율 (양허세율)	- 최혜국대우조항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WTO 회원국 원산지의 수입화물, 중국과 최혜국대우조항을 포함한 양자협정에 서명한 국가(지역) 원산지의 수입화물, 중국 국경내 원산지의 수입화물에 적용
협정세율 (FTA세율)	- 중국과 관세우대조항을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에 서명한 국가 또는 지역 원산지의 수입화물에 적용(FTA체결 국가 원산지 수입화물에 적용하는 세율) - 아세안협정세율(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미얀마, 말레이시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브루나이), 아·태협정세율(한국, 라오스,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홍콩·마카오협정세율, 코스타리카협정세율, 페루협정세율, 뉴질랜드협정세율, 싱가포르협정세율, 파키스탄협정세율, 칠레협정세율
특혜세율	- 중국과 특혜관세우대조항을 포함한 무역협정에 서명한 국가 또는 지역 원산지의 수입화물에 적용 - 아·태 2개국(라오스, 방글라데시), 아세안 3개국(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최빈국 37개국
보통세율 (기본세율)	-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 원산지의 수입화물과 원산지가 불분명한 수입화물에 적용하는 세율
잠정세율	-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관세할당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적용하는 세율
관세할당세율 (TRQ세율)	- 수입관세할당 관리를 받는 수입화물의 관세할당 내 물량에 적용하는 세율
IT상품세율	- 정보산업부가 정보산업제품에 사용된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IT상품(완제품이 아닌 것)에 적용하는 세율

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홍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세법연구센터, 2013, p.41.

마. 관세 감면 및 환급

(1) 관세 감면 및 환급 제도

감면제도는 해관법, 수출입관세조례 및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방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해관법 제56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임시감면(116), 특정감면(117), 법정감면(118), 일시 수출입화물 및 보세화물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납부 면제로 나

116) 국무원이 특수 상황과 수요에 근거하여 개별적 또는 임시적으로 부여하는 감면이다.

117) 특정기업, 특정지역, 특정용도 등의 물품에 대해 감면세 혜택을 직접 부여하여 별도의 감면세 신청에 대해 해관의 심사 및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조건부 감면이며, 업체는 화물을 수입하기 전에 해관에 신청을 해야 한다.

118) 해관에서 법정관세감면의 화물에 대해 감면세 혜택을 직접 부여하여 별도의 감면세 신청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무조건 감면이다.

누어진다¹¹⁹⁾. 감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은 모든 증빙 서류를 화물이 수출입이 되기 15일 전까지 해관에 제출하여 수출입화물 감면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관세 환급제도는 납세인이나 그 대리인이 관세를 납부한 후 해관에서 일부 또는 전부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이다.

바. 수출입규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해당 화물의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으며¹²⁰⁾,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에 따라 수입화물을 수입자유화물, 수입제한화물, 수입금지화물, 관세쿼터관리화물로 분류하여 관리 한다¹²¹⁾.

「대외무역법」 제17조에서 규정한 화물은 수출입 금지를 하며, 「수출금지화물목록」 및 「수입금지화물목록」은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제정 또는 조정하여 공포한다¹²²⁾.

사. 보세화물과 보세 심사제도

보세화물은 일반 수출입화물과는 다르게 해관의 감관하에 관세를 미납하고 있다가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화물을 말하며, 일시 세금납부 면제, 특정 목적, 재수출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대외개방 확대 및 기술, 해외자금의 유치를 위해 일련의 수입우대정책을 제정 후 시행하고 있으며, 보세화물의 최종목적은 중국 내 사용 및 소비자가 아니라 재수출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보세우대정책이다.

보세 심사는 해관이 보세기업의 경영행위를 관리, 검사, 감독하는 것으로 보세가공 및 보세물류화물에 대한 검사, 관련 보세기업 경영행위의 합법성 및 진실성 검사, 대조 및 조사진행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¹²³⁾.

119) 김원석, “중국의 관세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2009.

120)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16조

121)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 제2장 수입화물관리.

122)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 제8조, 제33조

보세 심사는 보고한 전산자료와 피심사자가 제출한 서류증명서에 근거한 서면심사 또는 장부와 물품의 대조 및 확인 등의 실지 검사로 이루어지므로 대상기업은 장부 등에 재무상황 및 관련 보세화물 반출입, 사용 등을 기록하고 유효, 합법한 증명서에 의거하여 당해 장부를 정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심사완료 후 15근무일 내에 결과가 보고되며, 이 내용이 대상기업에 통보되고,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보세화물의 통관 절차는 다음의 <표 3-12>와 같다.

<표 3-12> 보세화물의 통관 절차

단계	절차 내용
계약등록 (1단계)	보세화물 경영회사가 계약서, 허가서, 기타 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하해관에서 계약 등록을 신청하며, 해관 심사가 끝나고 등록을 마치면 등기수첩을 발급받는다.
화물수입 (2단계)	해관에 등록된 계약상의 보세화물이 반입되었을 경우, 경영회사 또는 그 대리인은 해관이 발급한 등기수첩과 기타 증빙자료를 가지고 입항지 해관에 가서 신고한 후 수입절차를 진행한다.
장치 또는 가공 (3단계)	보세화물이 국내에 반입되면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장치하거나 해관에서 허가한 가공생산기업에 교부하여 제조가공을 진행한다.
재수출 (4단계)	장치기간이 만료되거나 제품 가공 후 재수출하였을 경우에는 경영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동 보세화물 등기수첩과 기타 증빙서류를 가지고 출항지 해관에 가서 신고한 후 수출절차를 진행한다.
계약말소 종결 (5단계)	계약등록이 만료되거나 가공제품 수출 후에는 일정 기한 내에 경영회사가 가공무역 등기수첩, 수출입화물신고서, 관련자료를 가지고 계약등록 해관에 가서 등록말소 수속을 해야 한다.

자료: 중국관세무역연구회, “중국관세무역신보”, 제2011-1호, 2011.

아. 가공무역제도

중국은 외화를 획득하는 주요수단으로서 진료가공¹²⁴과 내료가공¹²⁵을 포함하여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일부 또는 전부의 원재료 및 부품 등을 국내기업이 조립하거나 가공하여 완제품을 재수출하는 가공무역 수출을 확대하였으며, 이의 촉진을 위하여 가

123) 관세청, “2012년 관세관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설명자료”, 2012.

124) 중국내 업체가 외화를 사용하여 국외에서 구매한 원재료, 부품 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국외로 재수출하는 가공무역이다.

125) 외국업체가 원재료, 부품 또는 필요시 기계설비를 제공하여 가공한 제품을 외국업체에 수출하고 가공비를 받는 방식의 가공무역이다.

공무역 수입원재료에 대해 보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가공무역물품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규정한 수입을 금지하는 물품 및 해관이 관리·감독할 수 없는 품목인 금지물품, 해관이 감독·관리하기 쉽지 않은 민감하고 수입 물품의 가격 변화가 큰 품목인 제한물품, 금지물품과 제한물품을 제외한 기타물품인 비제한 물품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고 있다.

2004년 이후 가공무역 제한 품목 설정 및 관리강화, 가공무역 금지 품목 확대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국제금융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의 가공무역금지 및 제한물품의 목록을 조정하여 관리하고 있다¹²⁶⁾.

자.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이란 관세 이외의 수단을 통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 및 행위를 말하며, 원산지 규정 및 무역규제, 통관 관련 규제, 위생 및 검역조치, 기술무역장벽, 수입허가제 등이 있다¹²⁷⁾.

비관세장벽은 일반적으로 각국의 상이한 지리 및 환경적 특성, 문화 및 제도 등으로 인해 발생되며, WTO 역시 각국간의 차이점을 권리로 인정하여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제소가 어려운 점이 있다. 중국의 비관세조치들은 다음의 <표 3-13>과 같이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통관관련 규제,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 기술무역장벽, 수입규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26) 관세청, “2011년 수출기업 해외통관업무 협의회 발표자료”, 2011.

127) 정환우, “한·중 FTA 비관세장벽 분야 쟁점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지역연구실, 2012.

<표 3-13> 중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유형

유형	주요 내용
수출입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업체 관리제도 - 수입상품 분류관리제도 - 수입상품 분류관리제도 - 자동 수입허가 관리제도 - 중고제품 수입금지(의류, 전기전자, 기계) - 수입허가증 발급시 민감한 기업정보 요구 - 쿼터 관리(화학비료, 면화, 벼와 쌀, 옥수수, 밀, 섬유, 설탕)
기술무역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인증제도 - 강제인증제도(CCC) - 자동차용 타이어 인증제도 - 목재포장재 열처리 증명 요구 - 수입계량기구 형식 검증제도 - 가전제품 에너지효율성 표기 부착 - 수입전자제품 전자수용강제검사 실시 -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 전자정보제품 오염관리방지법
위생 및 식품위생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허가제 - 화장품 수입절차 - 식품관련 규제 - 의약품관련 규제 - 화장품 수입절차
통관관련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운송 불허 - 과도한 통관심사 - 수입신고 지체금 부과 - 수입의약품 통관지 제한 - 관세부과 기준가격 비공개 - 환급규정관련 정보 획득의 어려움 - 이중 세관검사 - 관세분류의 자의성 및 화물에 대한 상세정보의 기밀보호 미흡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전계서, p.142.

(1) 수출입규제

1)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해당되는 경우 수출입을 제한 및 금지할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에 따라 수입화물을 관세쿼터관리화물, 수입자유화물, 수입제한화물, 수입금지화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외무

역법’ 제17조에서 규정한 화물을 수출입을 금지하며 행정법규, 기타법률이 수출입을 금지한 규정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수출금지화물목록’ 및 ‘수입금지화물목록’은 국무원의 관련부서와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가 공동으로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¹²⁸⁾.

중국은 생태환경 유지,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 국가안전 및 공공이익 보호, 국제협정상 의무이행의 관점에서 수입금지 품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입제한화물 목록은 상무부에서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조절 및 제정하여 정식 시행일의 최소 21일전에 발표하고 긴급 상황인 경우에는 시행일 전에 발표해야 한다¹²⁹⁾.

2) 쿼터관리제도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 중에서 수량을 제한하는 화물에 대하여 「화물수출입관리조례」 11조 및 36조와 「대외무역법」 19조에 근거하여 쿼터관리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서는 국무원 관련 경제관리부서와 회동하여 관세할당관리를 실행하는 수입화물목록을 제정 및 조정하여 발표한다¹³⁰⁾.

또한 상무부에서는 2002년 1월 1일 「화물수출입관리조례」와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수출상품 쿼터관리방법¹³¹⁾」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¹³²⁾.

3) 허가증 관리제도

수출입 허가제도는 국가의 법률, 정책, 대외무역계획 및 국내시장 수용에 근거하여 수출입 경영자격, 수출입 상품의 종류 및 수량, 교역국가별 정책, 경영범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제도이다¹³³⁾.

허가증 관리제도는 대외무역 경영업체가 국가의 수출입제한 상품을 수출입하기 전에 국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제도로서 특정 상품에 대한 허가증명이다¹³⁴⁾.

만약 수출입허가증 관리상품이 동식물검역, 무선전파관리, 상품검사 등 국가에서 수

128)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 제8조, 제33조

12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1.

130)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 제 25조.

131)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2001년 제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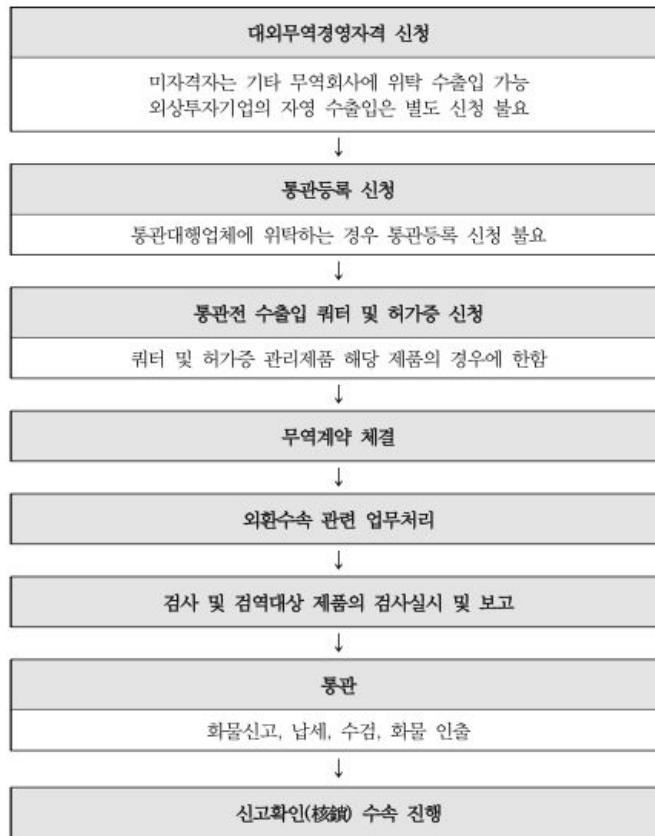
132) 전형진, “중국의 농산물 무역정책과 수출입제도”, 「해외농업시리즈9: 중국농업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13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세법연구센터, 2013, p.156.

134) 외교통상부, 2011.

출입관리를 실시하는 대상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출입 통관시 수권받은 기관에서 발급하는 기타 수출입 증명서도 해관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¹³⁵⁾, 수출입 흐름도는 다음의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 대중국 수출입 흐름도



자료: KOTRA, 「중국 국가정보(수입규제제도)」, 2013.

4) 자동수입허가 관리제도

상무부는 「화물수출입관리조례」와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출입상황을 통제해야 하는 경우 주요 수입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하여 일부 자유수입화물에 대

135) 중국관세무역연구회, 「중국관세무역신보」, 제2011-9호, 2011, p.12.

하여 자동수입허가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¹³⁶⁾, 이는 모든 수입 신청에 대해 비준하는 수입허가제도로써 자동수입허가목록의 품목은 수입허가 신청 즉시 허가증이 자동으로 발급된다.

5) 수출입업체 관리제도

수출입업체는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등록해 수출입 경영자격을 취득한 후 허용된 범위 안에서 수출입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¹³⁷⁾, 수출입업체 관리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WTO 가입 후 「화물수출입관리조례」 제4장과 「대외무역법」 제11조에서 국영무역 관리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연관되는 중요한 상품의 수출입에 대하여 국영무역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전문 수출입 총공사 또는 동종제품의 경영권이 있는 분공사가 총공사와 연합하여 거래를 추진하거나 지정회사가 경영하는 수출입상품의 분류관리제도를 운영한다¹³⁸⁾.

(2) 기술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기술무역장벽이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국가 간의 교역에 있어서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자유화 진전에 따른 관세장벽 완화에 따라 중요성이 제고¹³⁹⁾되면서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첫째, 강제인증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이다. 2002년 5월 1일부터 「제품인증관리조례」, 「소비자 권익보호법」, 「상품검사법」, 「표준화법」, 「제품품질법」에 기초하여 중국으로 수입되거나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 중 ‘CCC’ 인증대상 품목은 반드시 동 인증을 취득하여 인증마크를 부착해야만 중국 내 수입,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¹⁴⁰⁾.

136) 관세무역연구원, 중국관세무역신보, 2011년 12호, 2011.

137) 한국무역협회, 2011.

13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전개서, p.170.

139) 한국무역협회, “한·중 FTA 비관세장벽 분야 쟁점과 시사점”, Trade Focus, 제11권 제24호, 국제무역연구원, 2012, p.3.

140) 전군중, “한·중 FTA 협상의 주요 이슈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경

둘째, 자발적 인증제도이다. 2011년 상반기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인증기관 관리방법」을 공포하여 인증활동 및 인증기관을 종합적으로 규범화하여 중국 내 자발적 인증관련 규범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¹⁴¹⁾.

셋째, 전자정보제품 오염관리방지법(China RoHS¹⁴²⁾)이다. 유럽연합이 2006년 7월 1일부터 유럽연합에 출시되는 모든 전기 전자제품에 대하여 6대 유해물질¹⁴³⁾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정한¹⁴⁴⁾ EU의 RoHS를 모태로 중국에서 수입 및 생산하는 전자정보제품에 대하여 유해물질 사용 규제 및 폐기 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의 감소 및 통제를 위하여 China RoHS를 제정하였다. 이는 ‘오염방지과 예방우선’의 환경보호 원칙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넷째,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China REACH)이다. EU가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¹⁴⁵⁾)를 실시하여 환경기준을 강화하자 중국은 의견수렴 및 개정을 거쳐 2010년 1월 국무원에서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REACH)」를 통과시켰다.

(3)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독소, 오염물질, 사료 첨가제, 음료, 식품, 동식물 병해충 등으로부터 인간 위생을 위한 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무역에 대한 영향 관련 규제 규범을 총칭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정책 및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첫째, 중국의 SPS 정책이다. 중국은 「검역법」 및 「상품검사법」에 근거하여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AQSIQ)에서 안전규제 및 건강을 담당한다.

둘째, 식품 관련 규제이다. 특수영양식품 및 보건(기능)식품은 품목마다 국가식품약

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141) 정환우, 전개서, 2012.

142)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143)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6가크롬(Cr+6), 수은(Hg), 카드뮴(Cd), 납(Pb) 등.

144) KOTRA, 「국가정보(중국), 주요인증제도」, 2010.

145)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of Chemicals의 약어이다. 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조 및 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허가, 평가,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규정이다.

품감독관리국(SFDA)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의약품 관련 규제이다. 자국 의약품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SFDA가 우수약품 제조관리기준(GMP)의 판매유통 관리, 임상시험 기준, 강제 적용 강화 등의 규정을 제정 및 개정 공포하고 있다.

(4) 통관 관련 규제

중국은 다음과 같은 통관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첫째, 의약품 수입통관지 제한이다. 수입약품의 심사 및 허가 업무의 주요 관리규정인 ‘수입약품관리방법’에 따라 약품은 반드시 국무원이 약품수입을 허가한 항구를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다.

둘째, 수입신고 지체금 부과이다. 수출입화물의 개항지 도착 후 송수하인 또는 대리인이 해관통관에 필요한 규정된 통관기한을 초과하면 일정액의 체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셋째, 환급규정 수시 변경이다. 환급규정 및 절차에 관한 정보는 중국어로만 제공되며, 변경사항에 대한 별도의 통보가 없어 업체들의 혼란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입업체는 수시로 환급률의 변화를 체크하여야 한다.

넷째, 이중 세관검사이다. 발취 검사를 실시한 물품에 대하여 통관신고업체의 신고접수 후 수출입화물의 금액, 수량, 화물의 상태, 원산지, 성질 등의 신고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추후 전량검사를 재실시하는 이중세관 검사로 인해 비용 상승 및 납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¹⁴⁶⁾.

다섯째, 관세부과 기준가격 비공개이다. 일부 품목의 경우 덤핑 및 과소평가 방지를 위하여 「공식가격에 따른 수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에 공포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여 수출입 양측의 약정이 아닌 해관이 정한 공식가격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여섯째, 보세운송 불허이다. 일부 품목의 경우 보세운송 불허 및 도착 항구에서 통관을 강요하므로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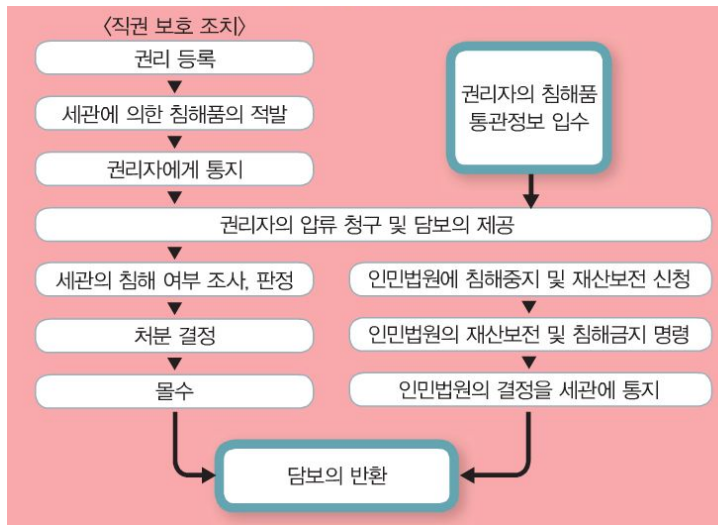
146) KOTRA, 「최신 중국 통관제도 해설」, 2002.

(5)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지식재산권은 식물신품종, 상표권 및 반도체 배치설계,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특허권 등의 새로운 지식기반 권리들을 포괄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¹⁴⁷⁾. 지식재산권 보호는 수출입화물과 관련되어 행정법규와 중국 법률에서 보호하는 저작권,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 및 특허권의 해관보호, 전용상표권을 말한다¹⁴⁸⁾.

2. 수출통관 관련제도

<그림 3-5>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보호의 흐름도



자료: 관세청, “해외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메뉴얼”, 관세행정안내, 2017.

가. AEO제도

(1) 중국의 AEO운영현황

147)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중국편」, 2009.

148)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보호조례」, 국무원령 제 572호, 제2조, 2010.

1) 기업분류관리제도(Measures for Enterprise Credit Management, MECM)

중국 해관은 국제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관세기구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입 무역의 안전 및 원활화를 보장하며 기업의 자율적인 준법정신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분류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기업분류관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세관에 등록된 가공기업, 세관에 등록된 통관기업, 세관에 등록된 수출입화물의 수발송인, 기타 세관총서가 인정한 기업 등이 있으며¹⁴⁹⁾, 세계관세기구(WCO)의 SAFE Workframe 도입을 위하여 중국의 기업들은 다음의 표와 같이 평가등급에 따라 다음의 <표 3-21>과 같이 그에 맞는 통관적용 조치를 받았다.

<표 3-21> 기준별 기업분류 및 통관적용 조치

구분	신용도	통관적용 조치
AA류 기업	신용이 매우 우수한 기업	상응한 통관편의
A류 기업	신용이 양호한 기업	
B류 기업	신용이 일반적인 기업	통상적인 관리
C류 기업	신용이 비교적 낮은 기업	엄격한 감시관리
D류 기업	신용이 매우 낮은 기업	

자료 : 외교통상부, 2012.

중국의 기업은 관리 등급이 다른 기업에 대해 차등적으로 관리 조치를 받으며, C류와 D류의 기업은 신용이 낮은 기업으로서 엄격한 관리감독이 실시되며, D류 기업은 실질적으로 가공무역을 할 수 없다. B류 기업은 신용이 일반적인 기업으로서 중국 해관법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수출입화물 검사는 정해진 장소와 시간 내에서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각종 수속을 진행하는 통상의 관리를 적용 받는다. A류 기업은 신용이 양호한 기업으로서 내륙지역의 기업은 항구검사허가¹⁵⁰⁾ 및 소재지신고와 같은 혜택이 부여되며, AA류 기업은 신용이 우수한 기업으로서 A류 기업의 혜택과 함께 기업이 직

149) 정형곤, 나승권, 노유연,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 방안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46.

150) 지역 간 빠른 통관을 목적으로 수입자 또는 통관대리인이 수입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기업이 소재한 내륙지 세관에 신고하여 항만에서는 단순검사 후 통과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면한 세관업무상 문제에 대하여 수출입화물의 개장검사 비진행, 세관 직원의 협력 제공 등의 우대조치를 받는다¹⁵¹⁾.

중국 기업분류관리제도의 인증 기준은 경영관리 및 무역안전요건과 일반요건으로 분류되며, 전자의 경우 대부분 WCO의 규정을 채택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⁵²⁾.

AEO업체는 AEO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통해 통관상의 혜택을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으며, 외국 세관당국의 거래업체 방문심사 면제, 거래선의 유지와 확보, 수출입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¹⁵³⁾.

(2) 중국 AEO 사후관리 현황

1) 자율공시제도(Voluntary Disclosure Program, VDP)

2014년 7월 상하이 세관에서 상하이 임시 FTA존(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PFTZ)에서 공표하였으며¹⁵⁴⁾, 상하이 임시 FTA 존에 등록된 모든 회사는 자율공시제도에 참가할 수 있다¹⁵⁵⁾.

자율공시제도에 참가하는 회사는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의 수출입, 수출거래와 관련된 모든 활동, 세관선언과 보세물류 및 판매되는 무관세 물품, 관세 면제대상의 물품, 가공무역 및 가공무역과 관련된 결합물품 등의 수출입, 세관의 감사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세관규정의 미 준수내용으로서 감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 위반사항이 아닌 내용 등¹⁵⁶⁾에 관련한 모든 세관규정 위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자율공시제도는 수출입 무역업자들에게 세관 규정 위반사항과 이에 따른 세관의 조사, 잠재적 위험에 대한 평가 등을 스스로 확인하는 내부준수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며, 이러한 사항을 문서화하도록 권고한다¹⁵⁷⁾.

151) 정형곤 외 2인, 진계서, pp.51-52.

152) 김종훈, “중국 AEO 제도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해양비즈니스』, 제21호, 2012, pp.65-94.

153) 관세청, 2013.

154) Deloitte Japan, “China Customs May Expand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Nationwide”, *Tax Newsflash*, 2015.

155) Deloitte Japan,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Introduced in China(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Tax Newsflash*, 2014.

156) Mondaq, “China: China Customs: pilot “Voluntary Disclosure” Programme”, 2016.

2) 세관관리(재심사)

중국해관은 등급별 AEO 공인기준 이행상태에 따라 해관총서령 제225호 제15조에 근거하여 인증 기업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고급 인증업체는 매 3년마다, 일반 인증업체는 비 정기적으로 공인 갱신심사를 할 수 있으며, 공인 등급의 기업이 1년간 신용이 불량한 상태가 되거나 신용이 불량한 기업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면 해관은 동 기업을 일반 신용상태의 기업으로 조정한다¹⁵⁸⁾.

중국 기업분류관리제도상 기업이 AEO 공인 AAFb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입과 관련된 비즈니스 서류(분기별), 감사보고서(매년), 비즈니스 공급 및 관리에 관한 평가 보고서(매년)를 중국 해관이 정한 일자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¹⁵⁹⁾.

3) 기업협조책임인

중국해관이 운영하는 기업협조책임인은 공식적인 명칭은 없지만 협조책임인을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선세관에서는 대내적으로는 연락원, 대외적으로 협조원이라고 부른다¹⁶⁰⁾.

기업협조원은 직속세관의 기업관리처 및 예속세관의 협조과에 소속되어 있으며, 아직 체계적으로 정착하지 않아 직속 세관별로 운영방식이 다소 차이는 있으나¹⁶¹⁾ 보관원의 등록 및 기업분류 등과 같은 기업 관리업무를 담당한다¹⁶²⁾.

나. 중국 해관의 새로운 기업평가 기준(Interim Measures for Enterprise Credit Management, IMECM)¹⁶³⁾

157) IFCBA, "China customs self-compliance pilot likely to extend into 2015."

158) 중국해관총서(GACC), "Legislations on Certified Enterprises/AEO:III, Bulletin No.81 of GACC, 2014," 2015, p.7.

159) Shao Weijian, "China AEO Program," <http://chn.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4419&seqno=100267>, 2016.

160) 성남길 외 4인, 전게서, pp.82-84.

161)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9250>

162) 성남길 외 4인, "상계서, pp.34-71.

163) 중국해관총서(GACC), op. cit, p.22.

중국해관은 이전의 기업분류관리제도를 대신해 2014년 12월 해관총서령 제225호로 사업체 신용 및 위해 요소관리를 위한 새로운 임시 대책을 도입하였다. 기업분류관리 제도의 도입 후 국제무역의 증가에 따라 중국해관은 WCO SAFE Framework, 미국의 C-PACT 및 수입자 자율심사제도, 기타 해외의 AEO 제도와 같은 국제 기준에 맞추어 조정하기로 하였다.

중국의 AEO 인증을 위한 기업의 평가기준은 내부 통제시스템, 입증된 재무 건전성, 세관 요건 준수의 적절한 기록, 적절한 보안 및 안전기준으로 구분되며, 이는 다른 국가에서 시행되는 AEO 제도와 유사하다.

AEO 상호인정약정(MRA)에 따라 AEO 인증기업은 해당 국가의 세관에 의하여 통관 편의 및 제세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신용 불량 기업은 행정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¹⁶⁴).

다. 원산지제도

중국의 원산지 규정을 관장하는 최상위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이며, 국무원이 구체적인 시행규정으로 제정한 것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 조례이다¹⁶⁵).

1개의 국가 및 지역에서 완전하게 취득한 화물은 그 국가(지역)를 원산지로 정하지만, 2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이 생산에 참여한 화물은 최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국가 및 지역을 원산지로 정한다¹⁶⁶). 최후 실질적인 변화의 확정 기준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상품분류변화를 기준으로 하고,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공 후 화물가치에서 부가가치 백분비 및 제조 또는 가공공정 절차¹⁶⁷)를 보충기준으로 한다¹⁶⁸).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는 수입하기 전 물품의 원산지 결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해관은 원산지 결정을 모든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한

164) 중국해관총서(GACC), "Legislations on Certified Enterprises," 2015, p.8.

165) 한국무역협회, "중국 비즈니스 실무가이드", 제5장 무역제도, 2011.

166)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 조례 제3조.

167)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중국", 2012.

168)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 조례 제6조.

후 대외에 공포한다. 수출화물을 통관할 때에는 화물을 해관에 신고해야 하며, 통관하기 최소 3일 전 원산지증명 발급 신청 후 서류 기재 후 제출해야 한다¹⁶⁹⁾.

라. 통관검역제도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검역 및 검사는 다음의 표와 같이 수출입 상품검사, 국경 위생 검역, 출입국 동식물 검역을 의미한다.

<표 3-22> 중국의 검험검역제도

구분	관련법규	관리대상	관리방법
수출입상품 검험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상품검험법 - 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 	수출입상품의 규격, 수량, 중량, 품질, 포장 및 안전, 건강, 위생, 사기방지, 환경 보호 등 요구의 부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검험 - 공정감정 - 계약검험 - 법정검험
국경위생 감독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법 - 국경위생검역법 - 식품안전법실시조례 - 국경위생검역법실시세칙 	출입국 교통공구,감정, 생산 설비에 대한 위생검사, 생활시설, 환경, 운송용기 및 항구 관할구역의 공공장소, 평가와 샘플링 검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검역 - 출입국위생감독 - 국경전염병검사
출입국동식물 검역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동식물검역법 - 출입국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출입국 동식물과 동식물제품의 생산, 저장, 가공과정에 대한 동식물 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계검역 - 출국검역 - 입국검역 - 출입국 운송수단 검역 - 출입국 휴대물과 우송물 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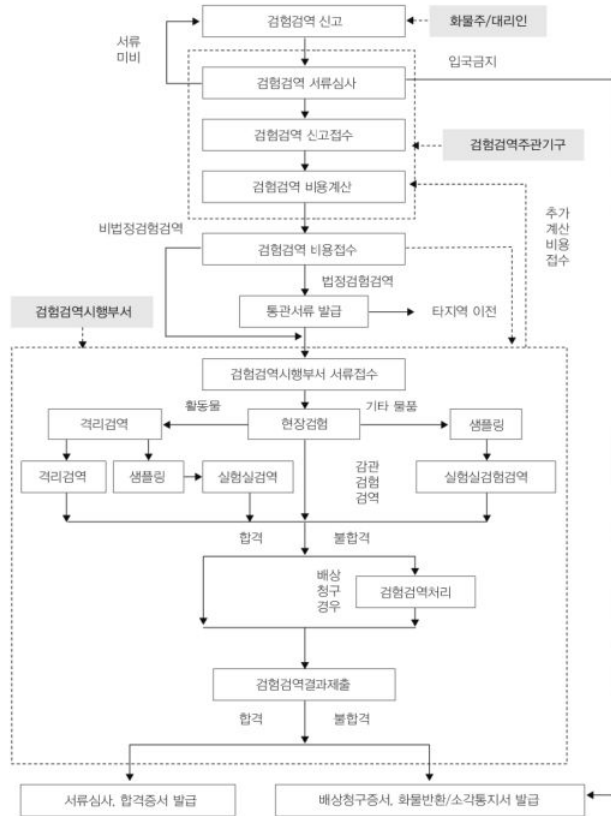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전계서, p.129.

국무원 직속기관인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은 검사·검역 업무를 총괄하고, 각 지방에 설립한 출입국검사검역국이 지역의 수출입 상품의 검사·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단일 행정체제로 이루어져 있으며¹⁷⁰⁾,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를 관리한다.

169) 한국무역협회, 2011.

170) 전형진, 전계서, 2012.

<그림 3-6> 수입화물 검험검역 절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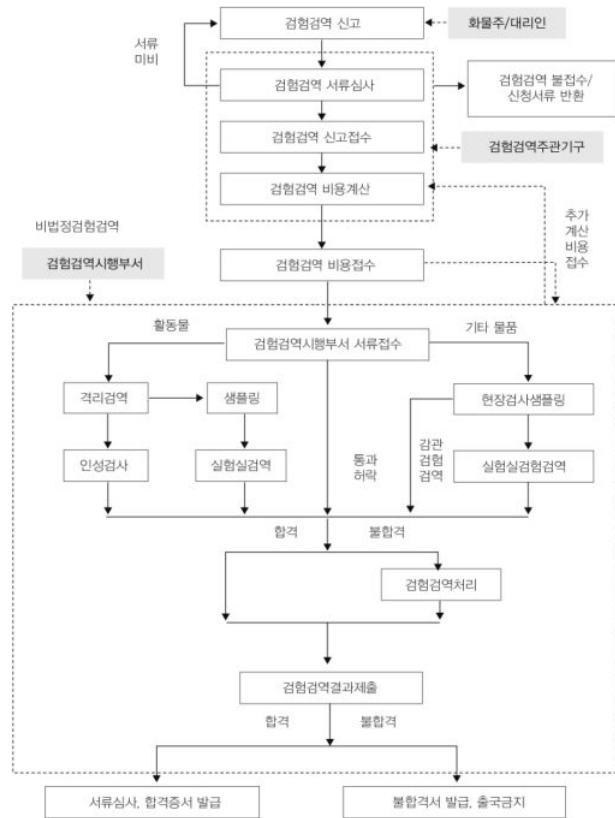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출입국검험검역기구가 검험검역을 실시하는 출입국 상품목록(법정검험목록)’을 조절 및 발표하며, 법정검험목록에 포함된 상품에 대해 강제성검험을 진행한다. 수출입식품생산기업에 대해 위생등록관리를 실시 후 위생등록을 취득한 기업에서 생산한 식품만이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으며¹⁷¹⁾, 수출입식품은 법정 검험검역 상품으로서 주로 자체 검험¹⁷²⁾을 위주로 하며 기타 수출입상품의 공동검험¹⁷³⁾, 인가검험¹⁷⁴⁾, 위탁검험 형식을 참조할 수 있다.

171)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수출입상품 검험법실시조례”, 국무원령 제447호, 제32조, 2005.

172)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자체 기술력을 이용하여 자체로 샘플 추출, 샘플 제작, 전체 항목의 검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173)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조직에 의하여 출입국검험검역기관과 수출 생산기업, 수입화물 인수부서, 관련 업체

<그림 3-7> 수출화물 검험검역 절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마. 라벨링제도

중국 내에서 상품 판매시 해당 제품에는 상품 정보에 대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판매시점에 합격증이 고객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수입품의 경우 생산품의 원산지 와 수입자 또는 중국 내 판매자의 이름 및 주소가 표시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중국 어로 생산품 등급, 세부규격, 주재료 및 혼합비율 등의 정보가 표시되어야 하며, 유효

가 규정한 표준과 방법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출입상품의 샘플 추출과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174)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이 일부 수출생산기업, 수입화물 인수기관의 검험기관, 검험인원에 대해 인가하여 인가를 받은 검험기관, 검험인원의 검험결과에 의해 통관 또는 상품검사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기간이 있는 상품의 경우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식품의 경우에는 포장에 반드시 라벨을 붙여야 하며, <표 3-16>과 같이 기본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표 3-16> 식품라벨 표기사항과 금지사항

구분	세부사항
표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명칭 - 식품원산지 - 생산업체가 적용하는 제품표준코드 - 식품의 성분 또는 배합원료 리스트 - 경고마크 또는 중문 경고설명 - 생산업체의 명칭, 주소, 연락방식 - 식품의 생산일자, 저장조건, 품질보증기간 - 순함량, 고형물 함량(정량포장 식품일 경우) - 식품의 품질등급, 가공기술(식품표준이 요구할 경우) - 식품생산허가증 번호 및 QS마크(생산허가증이 필요한 경우)
금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기, 국장, 인민폐 등으로 표기하는 내용 - 첨부한 제품설명이 그 근거를 증명할 수 없는 내용 - 오도하는 방식으로 식품을 설명하거나 소개하는 내용 - 질병 예방, 치료 역할이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 문자, 도안이 민족습관을 존중하지 않고 차별 설명하는 내용 - 건강식품이 아니지만 건강 역할이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 기타 법률, 법규와 표준에서 표기를 금지하는 내용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중국수입제도 및 수출 애로사항 조사”, 2010, pp.105-106.

중국 신식산업부는 모든 전자정보제품 중의 원소 또는 유해물질, 회수이용 가능 여부, 환경보호 사용기한, 포장재의 명칭 등에 관한 라벨링 방법을 규정하여 2006년 8월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라벨요구’ 기준을 제정하여 공시하였다.

바. 전자통관시스템

중국해관은 H883/EDI 통관시스템, 전자개항 시스템, 해관 H2000 통관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통관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전자개항은 크게 물류정보 플랫폼, 상무정보 플랫폼, 정부정보 플랫폼으로 구분되며, 국무원 주도하에 12개 부문에 설치되어 각 부서 간의 네트워크 검사 및 데이터 공유를 담당하고 있다¹⁷⁵⁾.

제4절 일본의 통관제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역은 한일 무역 역조 현상이며, 이는 1965년 외교관계수립 후 현재까지 매년 지속되어 대일 무역수지는 약 50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¹⁷⁶⁾. 그 이유는 한국의 산업구조상 한국의 주요 대외 수출품인 기계,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상당수의 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과적으로 한국의 전 세계 수출이 늘어날수록 일본에서의 수입량 또한 많아지는 추세이다¹⁷⁷⁾.

일본의 무역 협정은 주로 2개 이상의 지역 또는 국가 사이에서 FTA의 요소인 서비스 및 물품 무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분야 등을 포함하여 체결되는 포괄적인 협정인 EPA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 간 무역체제 내에서 무역자유화를 지지하던 일본은 최근 양국 간 통상정책을 주요 정책기조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도하였으며, 2002년 일본-싱가포르 EPA의 체결로 인해 기조 변화는 본격화되었다¹⁷⁸⁾.

또한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2006년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4개국 간에서 발효된 FTA가 TPP의 전신이며, 일본은 2013년에 협상에 참여하였다.

1. 통관제도

일본의 통관제도는 보세지역을 5개로 구분하여 운영, 통관시스템의 전산화 구축, 신속성 강조, 신고납세제 운영, 수입자신고, HS 분류제도 등을 채택하였다.

175) 진설, 김희철, 박정희, “중국 전자통관의 구축현황과 발전방안”, 「전자무역연구」, 제9권 제3호, 2011.

176) 일본은 1965년 12월 18일 우리나라와 외교관계수립 후 어업협정(1965), 무역협정(1966), 항공협정(1967), 이 중과세방지협정(1970), 과학기술협력협정(1985), 사증면제협정(1998), 범죄인인도조약(2002) 세관상호지원협정(2004), 형사사범공조협정(2006), 원자력협정(2010), 한·중·일 투자증진협정(2012) 등 다양한 주요협정을 체결하였다.

177) KOTRA, “일본·한국과의 교역 및 특징”,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국가정보, 2014.

178) 민경식, “일본의 EPA 추진과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6권 제2호, 한국무역연구원, 2010.

일본은 일본판 AEO제도 구축, 차세대 싱글윈도우 추진, 공항과 항만의 24시간 화에 대한 대응, 지속적인 전자화 추진, NACCS의 위상 제고 등 무역절차 개혁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가. 통관 행정조직

(1) 통관 행정 관련 조직

1) 재무성

재무성은 본성과 외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본성의 하위기관은 지방지분부국, 시설 등기관, 내부부국이며, 통관 행정과 관세를 주관하는 곳은 지방지분부국 산하 ‘세관’과 내부부국 산하 ‘관세국’이다.

2) 관세국

재무성의 하위기관 내부부국인 관세국은 다음의 <표 3-17>과 같이 총무과, 조사과, 업무과, 감시과, 관세과, 관리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산하에 세무 업무단위를 수행하는 곳이 있다.

<표 3-17> 관세국의 주요 기능

구분	기능
총무과	정책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 및 관세국·세관 정원, 예산에 관한 사무 담당
조사과	사후적인 범규단속을 담당하며, 수입화물의 가격, 보험료, 운임 등의 적정성 조사 또는 수출 화물을 조사, 검사, 관세범규 관련 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업무
업무과	수출입 신고의 위법 여부와 관세 등의 부과 및 징수 주관
감시과	공항 및 세관에서 국경 안전을 단속
관세과	관세 등에 관한 제도의 조사·기획·입안과 관세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사항의 조사 연구, 관세·외환 등 심의회와 관세 분과회의의 사무를 담당
관리과	세관 직원의 인사·교양 훈련지원관리를 수행하여 산하에 ‘세관관리실’에서 세관 사무의 운영, 직원의 복무 지원

저자 작성.

3) 세관

세관 행정은 최우선 과제를 불법 약물, 총기 등의 밀수방지로 하고, 테러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한 사회’의 실현, 통관을 가속화하는 ‘무역원활화’, ‘적정하고 공정한 관세 등의 징수’와 국제물류의 보안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통관 관련 법률

일본의 세법에 대하여 규정한 대표적인 법으로는 다음의 <표 3-18>과 같이 FTA 원산지증명법, FTA(EPA), 수정법¹⁷⁹⁾, 관세잠정조치법, 관세정률법 등이 있으며, 통관에 관하여 규정한 대표적인 법으로는 통관업법, 관세법, NACCS법¹⁸⁰⁾이 있다.

<표 3-18> 일본 관세의 관계법령

구분		내용
세금 관련 법령	관세정률법	- 장기적으로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본 및 간이세율, 감면, 환급, 평가, 특수관세 등의 규정
	관세잠정조치법	- 물가안정 또는 국내산업보호 등을 위한 잠정세율, 관세긴급조치, 특별긴급관세, 특혜관세, 감면 등의 규정
	수정법	- 수입품에 대한 각종 소비세의 부과, 면제, 납부 등의 규정
	FTA(EPA)	- 원산지 신고 및 검증, 원산지 결정기준, 관세율 규정
	FTA 원산지증명법	- 원산지증명 및 검증
통관 관련 법령	관세법	- 수입금지 품목, 수입신고 및 허가 절차, 보세제도, 관세부과 절차, 벌칙 등으로 구성
	통관업법	- 수입자를 대신하여 세관 통관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 및 운영
	NACCS법	- 경제산업성의 수출입허가 및 세관 통관절차 - 법무성의 출입국관리 및 국토교통성의 입출항 업무 처리를 위한 단일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 농림수산업성 및 후생노동성의 검역

자료: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pp.117-118.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179) ‘수입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180) ‘전자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나. 과세가격 결정과 세액 산정

(1) 과세가격

과세는 과세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종가세 제품,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종량세 제품, 가격과 수량 모두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종량세 제품으로 나뉘어진다. 일본은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인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물품의 수출원가에 수입항까지의 운송료 및 운송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¹⁸¹⁾.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은 매수인이 수입화물 거래를 위해 지불하거나 지불할 가격에 보험료, 포장 비용, 운임료 등의 가산요소 금액을 더하여 과세가격을 계산한다.

(2) 수입화물에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

수입화물에는 관세 및 내국소비세 또는 지방소비세가 과세되며, 내국 소비세 중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소비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일본 내 사업자가 판매하는 대부분의 제품 및 서비스와 수입되는 물품에 거래단계별로 부과된다.

통관 관련 수수료는 관세법상 세관 관계 수수료와 통관업자 수수료가 있다. 관세법에서는 보세장치장·보세전시장 허가 및 비개항 출입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세관에 납부¹⁸²⁾하여야 하며, 증명 서류의 교부 및 관련된 수수료 납부¹⁸³⁾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관 관계 수수료령」에서 수수료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통관업자에게 수출입 수속을 위한 통관 대리를 의뢰했다면 통관업자에게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 요금의 최고액은 채무 대신이 정한다.

18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통관제도 - 일본편-”, 2014, p.48.

182) 관세법 제100조.

183) 관세법 제102조.

다. 관세율 제도

(1) 개요

1) 관세율표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는 과학기술의 진보 및 무역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상품분류의 국제적인 통일 도모를 위해 1983년 HS협약¹⁸⁴⁾을 채택하였고, 일본도 관세율표 및 수출입 통계목적의 통계품목표를 전면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2) 관세의 부과 방법

관세는 관세정률법에 따라 부과되며, 종가세와 종량세 및 특수한 형태의 관세로 구분된다. 대부분이 채택하는 관세율로서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가 있으며, 이를 결합한 세율을 혼합세라고 한다. 특수한 형태의 관세는 다음의 <표 3-19>와 같다.

<표 3-19> 특수한 형태의 관세

종류	내용
차액관세	국내 생산자와 국내 수요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품의 가격이 높은 경우 무관세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가격이 낮은 경우 수입가격과 일정 수준의 가격과의 차액을 부과한다.
슬라이드관세	국내 생산자와 국내 수요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 시황의 변동인 심한 물품은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시 무관세를 적용하고, 하락시 적절한 관세를 부과한다.
계절관세	국산품의 보호 도모 및 소비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시기에 따라 적용 세율을 달리한다.
관세할당제도	국내 생산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량 이내의 수입품에 한하여 낮은 세율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여 수요자에게 저렴한 수입품의 공급을 확보하고, 일정 수량을 초과한 수입분은 높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한다.
특수관세	WTO 협정에서 인정된 것으로서 자국의 산업을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수입 급증 및 불공정 무역거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에 보복관세, 긴급관세, 상계관세, 덤핑방기관세, 할당관세 등을 추가적으로 부과한다.

자료: 저자 작성.

184) 정확한 수출입 통계 측정 및 신속한 통관을 통해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가 간에 품목의 분류를 통일한 국제 통일품목분류체계이다.

(2) 관세의 종류

1) 기본세율 및 간이세율

기본세율은 우선 적용되는 다른 세율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며, 관세정률법에 품목별로 규정되어 있다. 간이세율은 관세액의 산정절차를 간소하게 하기 위하여 소액 수입 화물 및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대하여 관세율을 간단하게 적용하는 제도이다.

2) 특수관세

국내 산업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제도로써 수입 급증 또는 불공정한 무역거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급업자, 생산자, 물품 등을 지정 후 일반 관세 이외에 할증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그 종류는 다음의 <표 3-20>과 같다.

<표 3-20> 특수관세의 종류

종류	내용
보복관세	상대국의 차별대우로 인해 자국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WTO 협정에 따라 분쟁해결기관이 승인하고, 상대국의 보조금으로 인해 자국에 손상을 미치는 경우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 의한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상계관세	수출국 정부에서 수출 또는 생산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자국의 동종화물 및 당해 물품에 손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덤핑방지관세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 판매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긴급관세	외국의 예상치 못한 사정의 변화에 따라 특정 종류의 물품 수입 증가로 인해 동종화물 등의 물품의 제조업계에 중대한 손해가 미치는 경우 국민 경제의 긴급한 필요에 따라 물품 및 4년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긴급관세조치를 취한다.
편익관세	관세에 대한 조약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편익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 생산되고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물품을 지정하여 이익의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에 대한 혜택을 부여한다.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통관제도 - 일본편-”, 2014, pp.71-73.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3) 잠정세율

단기적인 경제 사정 등의 이유로 특정 품목에 대하여 수입 촉진 또는 억제 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이며, 기본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관세잠정조치법에는 관세할당, 관세긴급조치, 특별긴급관세를 규정하고 있다.

4) 특혜관세

수입의 증가 또는 동종 물품 등을 생산하는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어 해당 산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역, 기간, 물품 등을 지정하여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5) WTO 협정관세

WTO 회원국에서 생산에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며, 기본세율과 WTO 협정세율이 같은 품목에 있는 경우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잠정세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¹⁸⁵⁾.

6) EPA 관세

FTA를 기준으로 무역뿐만 아니라 경제 거래, 협력 촉진, 경제 제도상의 조화, 투자의 활성화 등 상대국과의 물적, 인적, 자본의 교류 전반을 규율하는 협정에 따른 관세이다.

(3) 감면과 환급

일본의 국제 관행 및 정책적인 요청 등의 건지에 의해 수입화물이 특정 조건에 맞는 경우 관세의 환급, 면제, 경감을 받을 수 있다.

라. 수출입규제

(1) 수출입 금지

관세법 제69조의 2 에서 제71조에 열거된 품목은 수출입금지물품이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절차를 거치고, 해당되는 경우 수출입이 금지되며 주로 부정경쟁방지법 침해

185)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p.121.

물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위조화폐, 화약류, 폭발물, 총기, 마약류 등이 해당된다.

(2) 외위법에 의한 수출입규제

외위법은 외국환 거래의 관리 및 수출입 규제를 내용으로 하고,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관리과¹⁸⁶⁾와 안전보장무역심사과¹⁸⁷⁾에서 주관하고 있다¹⁸⁸⁾.

1) 수입할당제도

국내산업 또는 천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수입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이며¹⁸⁹⁾, 대상품목은 수입공표 2제1호에서 정한다. 수입할당신청서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하여 할당을 허용하는 경우 수입승인서 및 수입할당증명서를 교부받고,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다.

2) 수입승인제도

수입승인제도는 원칙적으로는 수입이 허용되지만 안전보장, 공공복리 증진,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특정 지역에서 선적한 물품이거나 특정국가에서 생산되는 경우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제와 원산지 및 국가를 불문하고 무조건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을 규제하는 것¹⁹⁰⁾으로 구분된다.

3) 사전확인제도

사전확인제도는 국내법의 실효성 확보, 국제조약의 이행, 수입할당제도의 보완 등을 위하여 수입 전 각 품목별 소관기관으로부터 용도 등을 확인받아 세관에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 수입하도록 하는 규제이다.

186)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index.html

187) <http://www.meti.go.jp/policy/anpo/index.html>

188) 제52조와 하위법령인 「수출무역관리령」, 「수입무역관리령」, 경제산업성 고시에 의해 규제대상 품목을 열거하고 있다.

189) 수입령 제4조 제1항 제1호.

190) 수입공표 제2호.

4) 예외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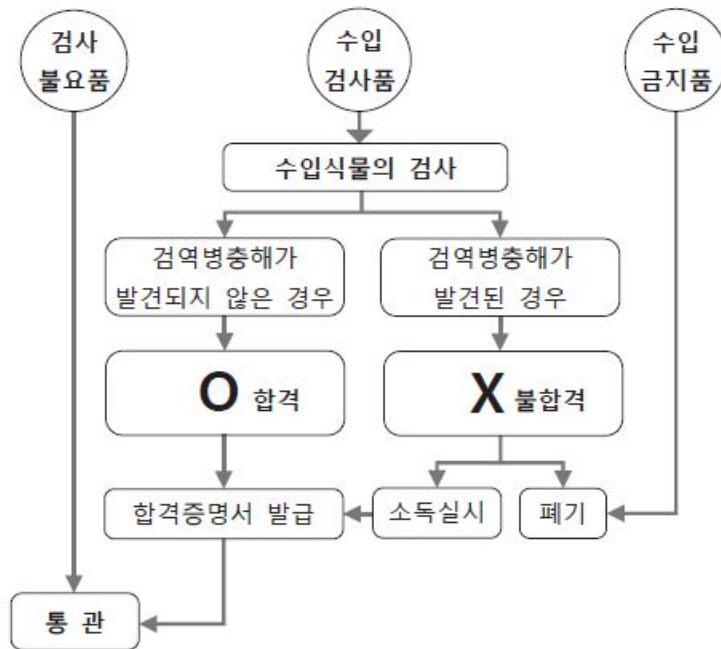
위의 수입규제물품에 해당하더라도 상업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아니라면 수입 승인이나 허가, 요건 확인 등의 절차는 면제된다.

(3) 기타 법령에 의한 수출입규제

1) 수입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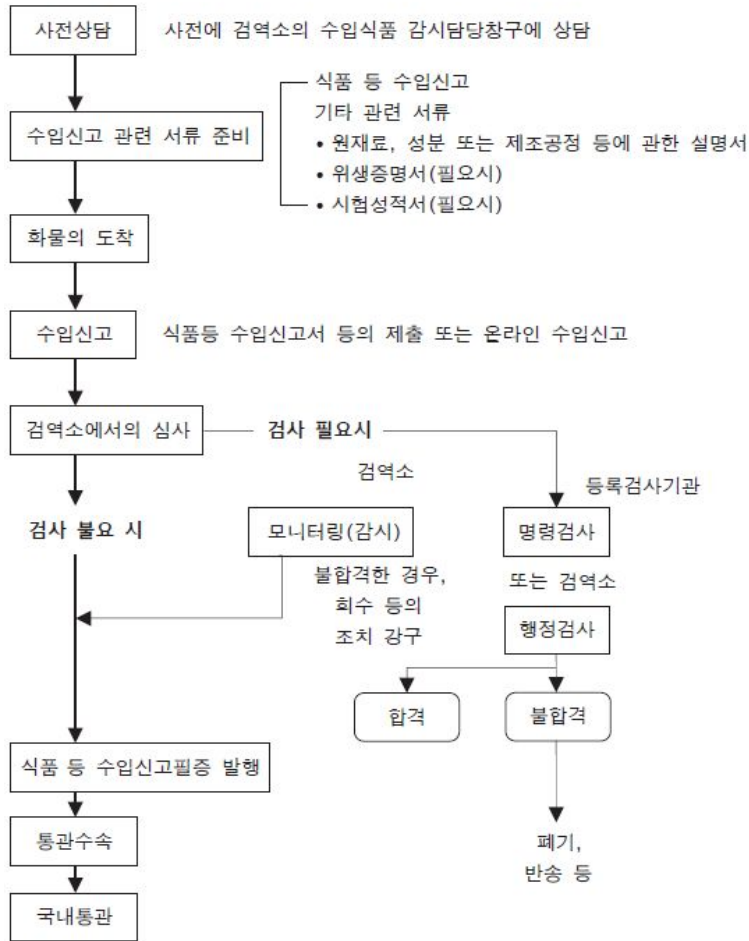
공안 풍속, 보건 위생, 경제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화물은 관계법령에 의거 관계당국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 수입신고 시 검사 또는 심사 시에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의 <그림 3-8>과 <그림 3-9>와 같다.

<그림 3-8> 식물검역절차



자료: 일본 식물검역소, <http://www.maff.go.jp/pps/j/introduction/import/ikensa/index.html>

<그림 3-9> 식품검역의 절차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1.mhlw.go.jp/topics/ysk_13/tp0419-1b.html

2) 수출규제

특정 화물의 수출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 3-21>과 같이 관세 관계법령 이외의 법령에 의해 승인 및 허가가 필요한 것이 있다.

<표 3-21> 수출 규제 이외의 법령 일람표

법령명	주요 품목	주관 부처
문화재 보호법	중요문화재 또는 중요미술품 천연기념물 중요 유형 민속문화재	문화청 문화 재부 전통문화과
조수보호 및 수렵 적정화에 관한 법률	새, 짐승 및 그 가공품, 조류의 알 등	환경성 자연환경국 야생생물과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향정신 성 의약품 원료 등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감시지도 마 약 대책과
대마단속법	대마초, 대마초 제품	
아편법	양귀비 열매의 껍질, 아편	
각성제 단속법	각성제 원료, 각성제	
광견병 예방법	개, 고양이, 스핑크, 여우, 너구리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우제류 동물, 햄, 소시지, 동물의 고 기, 꿀벌, 토끼, 닭, 말 등	
식물 방역법	현화(종자)식물, 선대류(이끼류) 또는 양치류에 속하는 식물, 유해동물(진 드기, 곤충 등), 유해식물(기생식물, 세균 등)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
도로운송차량법	중고 자동차	국토교통성 자동차국 자동차정보과

자료: 관세국(<http://www.customs.go.jp>)

(4) 원산지 및 품질 표시 관련 제도

1) 원산지표시

관세법 제71조에 의하여 수입화물에 화물이 실제로 생산 및 제조된 지역 또는 국가의 원산지가 잘 표기되어 있는지의 진위 여부를 규제한다. 만약 수입화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원산지 이외의 국가, 지역, 도시, 상표, 회사명 등의 오인을 야기시키는 표시를 한다면 관세법의 제재를 받는다.

또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경품의 허위 또는 과대 표시 등을 금지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나 민간부문에서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을 고시하고 있다.

2) 품목별 인증제도

소비자의 위생 및 안전 보호에 관련되는 물품 등은 다음과 같이 소관부처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품목별 유통규제 가운데 품목별로 품질을 표시하는 인증제도가 필요하다.

첫째, 농산물 품질표시법(JAS법)이다. 「농림 물자 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은 농림수산물의 규격화를 통한 생산 및 물류원활화를 도모하며, 품질표시의 적정화를 통하여 소비자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¹⁹¹⁾.

둘째, 가정용품 품질표시법이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정 가정용품의 수입에 대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으로서 규제대상물품의 판매업자, 제조업자 또는 위탁받아 표시하는 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크게 잡화공업품, 전기기계기구, 합성수지 가공품, 섬유제품 등으로 구분하여 소비자가 품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품질표시를 규제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사실 공표, 형사처벌,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보세제도

(1) 보세지역의 종류

1) 지정보세지역

국가, 지방 공공단체 또는 항만 시설 및 공항 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자 가운데 정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또는 건물 기타 시서로서 개항 또는 세관 공항에서 세관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화물의 하역 또는 운반을 하거나 이를 일시 장치하도록 재무 장관이 지정한 곳이다¹⁹²⁾.

2) 보세장치장

중계무역의 발전 및 거래의 원활화 도모를 위하여 외국화물의 운반 및 하역을 하거

191) 주일대한미국대사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p.164.

19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통관제도 - 일본편-”, 2014, p.117.

나 이를 장치하려는 목적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장소이다.

3) 보세공장

가공 무역의 진흥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가공 및 제조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작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 기간을 연장한 후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가공 및 제조할 수 있다.

4) 보세전시장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외국 제품 전시회 및 국제적인 규모로 열리는 박람회 등의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외국화물에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전시 및 사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이다.

5) 종합보세지역

대내 투자사업의 원활화 및 수입 촉진 등을 목적으로 외국화물의 전시, 제조, 가공, 장치 등 보세지역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관장을 허가를 받은 곳이다.

바. 벌칙

관세 범죄에 관한 형벌은 관세법 제10장 제208조의 4 내지 제118조, 처벌절차는 제11장에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은 형법총칙 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형법 총칙이 관세범죄에도 적용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⁹³⁾.

(1) 관세 형벌의 형태

1) 확정형 벌금제 및 형의 병과

일본은 ‘확정벌금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관세포탈죄 및 밀수품 취득제에 있어서는 범죄 관련 금액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수형 벌금제를 규정하

193) 정재호, 김수영, 노영예, 전게서, 2014.

고 있으며, 벌금형 및 징역형의 병과 규정은 일본의 관세법 내 다수의 처벌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¹⁹⁴⁾.

2) 양벌규정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만을 부과하며,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 및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의 종업원이 그 개인 또는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하여 밀수품 취득죄, 조세포탈죄, 금지품 수출입죄 등의 위반 행위의 처벌 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¹⁹⁵⁾.

3) 예비, 미수범 등의 처벌

관세법에서 범죄 행위별로 예비 또는 미수범에 대한 형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정범에 비하여 낮은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관세포탈죄의 정범에 대해서는 기수범에 준하는 처벌이 적용된다. 미수범에 대해서는 무허가 수출입죄, 수출입금지 물품의 수출입 행위와 관세의 포탈죄 등에 대해 기수범과 동일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2) 관세법상 벌칙 규정

1) 수출금지 물품의 수출(제108조의 4)

일본의 수출금지 화물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아동 음란물, 마약, 부정경쟁방지법상 특정 행위¹⁹⁶⁾를 조성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일본 관세법 제69조의 2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2) 수입금지 물품의 수입(제109조)

수입금지물품인 풍속을 해하는 서적·도화·조각물, 위조 화폐, 화약류, 폭발물, 총기류, 수출금지 품목 등은 일본 관세법 제69조의 11 제1항 1내지 10에 규정되어 있으며,

194) 법무법인 광장, “관세형법의 개선방안, 2009.

195) 관세법 제 117조 제1항.

196)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수입금지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제109조에 규정되어 있다.

3) 관세포탈죄(제110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화물을 위조 등의 부정행위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한 자, 위조 등의 부정행위로 관세를 면하거나 환급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00조에 규정되어 있다.

4) 무허가 수출입(제111조)

검사 또는 신고에 있어 위조한 신고 또는 증명을 하거나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 화물을 수출입한자,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물이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입한 자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11조에 규정되어 있다.

5) 밀수품 취득죄(제112조)

범죄와 관련되는 화물에 대해 알고서도 이를 운반, 보관 또는 유상 및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처분의 매개 및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12조에 규정되어 있다.

6) 몰수와 추징(제118조)

수출입금지화물 중 몰수 대상 수출금지 화물인 마약,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특정행위 조성 물품¹⁹⁷⁾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몰수하여 폐기할 수 있고,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환적을 명할 수 있다.

2. 수출통관 관련제도

가. AEO 공인제도

2006년 3월 AEO 제도를 도입하여 2008년 4월부터 화물이용 운송사업자, 항공회사, 선박회사, 통관업자 등으로 AEO 대상 민간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출자, 수입자, 제

197) 관세법 제69조의 제2 제1항 1호, 3호, 4호.

조업자, 운송업자, 통관업자, 창고업자 부문의 6개 당사자로 나누어 등급이 없이 공인 또는 비공인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¹⁹⁸⁾, 수출지원에 비중을 두고 있는 일본의 정책적 특성을 반영하여 수출업자의 비중이 크다¹⁹⁹⁾.

일본에서 AEO 업체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통관수속의 이행에 필요한 법규준수 체계가 구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관세관계법령의 위법여부 및 재무건전성, 통관절차에 관한 지식 및 경험 등 업무수행능력의 보유 여부를 평가하여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각 공인 부문별로 다음의 <표 3-22>와 같은 AEO 제도의 혜택을 제공 받으며, AEO 공인기업에 대한 특정 수출신고제도(Authorized Exporters' Program)²⁰⁰⁾는 보안 관리 및 규정 준수 체제를 정비하여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수출자가 보세구역에 화물을 반입하지 않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특정 수출자의 경우 수출화물이 공항이나 항구로 이동 중이거나 자사 공장 또는 창고에 있는 등 어디에 있더라도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표 3-22> AEO 공인혜택

공인부문	공인혜택	
수입자	특례수입신고제도	- 화물의 도착 전 신고 및 허가 - 물품 인수 후 납세신고, 월별 납세신고 - 물품검사 면제
수출자	특례수출신고제도	- 보세지역 외의 장소에서 수출신고, 수출허가 - 물품검사 면제
창고업자	특정보세승인제도	- 보세장치장 신설 신고 - 허가수수료 면제
통관업자	인정통관업자제도	- 화물의 도착 전 신고 및 허가 - 물품 인수 후 납세신고, 월별 납세신고
운송업자	특정보세운송제도	- 건별 보세운송 허가 생략 - 보세지역 반입 전 수출신고
제조사	인정제조사제도	- 보세지역 반입 전 수출신고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통관제도 - 일본편-”, 2014, p.137.

198) 관세청, “일본관세관 연구과제 보고서”, 2014.

199) 최준호, 한상현, “관세법령 개정에 따른 한-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MRA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한국 관사와 일본 통관업자를 중심으로”, 「e-비즈니스연구」, 제11권 제5호, 2010, p.405.

200) 관세법 제67조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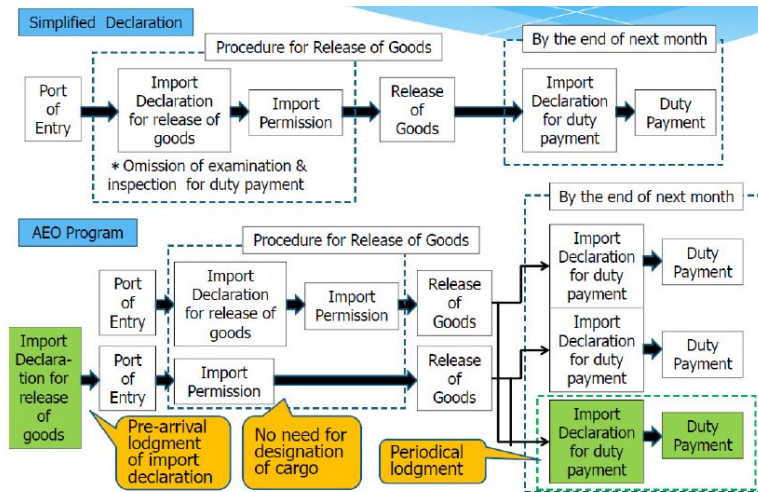
이는 세관의 검사 및 심사에서 수출업체의 규정 준수 및 보안 관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수출화물의 원활하고 신속한 선적, 물류비용 절감 및 소요시간 단축 등에 도움을 준다.

(1) 일본의 AEO 운영 현황 및 동향

일본은 원활화 양립의 도모 및 국제 물류의 보안 확보를 위해 WCO SAFE Framework 체계를 채택하고 2006년 AEO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AEO 공인업체들에게 기존의 시스템보다 확대된 신고서류 간소화, 물품검사 완화, 물품장치장에서의 신고수리 등의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AEO 공인업체들은 물품이 선적항에 도착하기 전에 약식신고대상 화물지정의무를 면제하고 수입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²⁰¹⁾.

<그림 3-10> AEO 운영 절차



자료: Japan customs, "ADB-WCO National Workshop on RKC Implementation", 2014.

일본은 AEO 공인기업들에게 신고지 세관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수출

201) Japan customs, "Japanese experience on implementing RKC requirement on Special Procedures for Authorized Persons and AEO," 2014.

입신고관서 자유화’ 정책을 2017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AEO 공인기업들에게 통관절차 정비 및 법규준수도 제고, 화물처리비용의 절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²⁰²⁾.

AEO 센터는 도쿄 세관에 두어 AEO 프로그램의 일관적인 이행을 관리하고 있으며²⁰³⁾, 9개 지역세관²⁰⁴⁾의 AEO 전문가가 공인신청 및 재공인심사를 담당한다.

(2) AEO 공인 절차 및 사후관리

AEO 공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공인을 받으면 전국 어느 세관에서도 AEO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정기적으로 최소 1년에 1회 이상의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세관에서는 현지실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개선조치를 이행한다. AEO 공인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공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후 시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3년마다 공인 연장을 위한 심사를 받는다²⁰⁵⁾.

일본에서는 AEO 제도의 자율관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공인당사자별로 ‘표준 법규준수규칙’, ‘업무적합성 체크시트’, ‘내부감사 체크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역세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²⁰⁶⁾.

나. 사전심사제도

(1) 관세가격 사전심사

수입 전에 물품의 수입예정자 및 관련 당사자가 물품의 관세 평가에 대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을 문서, 구두, 이메일 등으로 미리 세관에 요청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2) Ernst & Young Tax Co, "Impact of 2016 Japan tax reform on Customs Law," 2016.

203) 일본관세국, "AEO 인증승인에 관한 연락처",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aeo/list.htm>

204) 나가사키, 모지, 고베, 오사카, 나고야, 요코하마, 도쿄, 하코다테, 오키나와 지구.

205) <http://www.customs.go.jp/english/aeo/pamphlet.pdf>

206) 강성훈, 김미영, 김다량, 전계서, p.99.

(2) 품목분류 사전검사

수입 전에 물품의 수입예정자 및 관련 당사자가 물품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등에 대하여 세관에 문의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하는 과세가격 사전심사와 비슷하다.

(3) 원산지 사전검사

수입 전에 물품의 수입예정자 및 관련 당사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대하여 세관에 문의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하는 과세가격 사전심사와 비슷하다.

다. 기타 제도

(1) 특정 위탁 수출신고 제도²⁰⁷⁾

특정 보세 운송업자에 의한 화물 운송과 인정통관업자(認定通關業者)에 의한 통관 절차에 의해 적정한 화물 관리 등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세구역 등에 화물을 반입하지 않고 양자에 의해 화물이 취급될 것을 전제로 하여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출자가 지속적으로 특정 위탁 수출신고를 할 경우에는 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이 ‘특정 위탁 수출신고 포괄 신청서²⁰⁸⁾’를 작성하여 해당 세관 관서에 제출하며, 인정통관업자는 특정 위탁 수출신고에 따른 화물이 장치된 장소에서 화물 관리 체제가 확보되고 있는지 적어도 6개월에 한번은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세관 관서와 화물을 운송할 특정 보세운송업자에게 송부한다.

특정 보세 운송업자는 의뢰받은 특정 위탁 수출신고 화물의 검사 및 운송 중 사고 등의 대비를 위하여 인정통관업자와의 연락 체제를 구축하고, 신고 화물과 운송되는 화물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보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207) 일본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jp/hozei/index.htm>

208) 세관양식 C 제9160호.

(2) 컨테이너 취급 제도

수출신고가 보세구역 반입 전에 가능하므로 화물을 컨테이너에 포장하여 공장에서 수출신고를 하면 보세구역 반입시 즉시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다. 수출 화물의 포장 전에 '사전검사요청서' 및 '지정 지역 외 검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장 등에서 미리 검사를 받고 포장하여 수출신고를 하면 수출신고 후 검사 구분으로 지정되더라도 사전에 실시한 검사 기록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며, 지정 지역 외 검사는 5,000엔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출허가를 받지 못하는 화물이 컨테이너 내에 적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수출신고 후 발각될 경우에는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통관업자나 해상화물업자를 통해 컨테이너 준비를 포장 전달까지 의뢰하므로, 수출 실적이 없는 화물 등을 실을 때에는 통관업자나 해상화물업자에게 확인받는 것이 좋다.

(3) 서류 보존 의무

수출과 관련된 장부와 서류들은 원칙적으로 수출허가의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다.

(4) 수출 사후 조사

세관은 적정 신속한 수출 통관의 실현, 적정한 통관 처리 체제의 구축 및 수출 관리를 목적으로 수출신고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사후 조사 일로부터 과거 2년간에 대해 조사하지만 만약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등의 조사 상황에 따라 장기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수출통관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출과 관련하여 밀수출에 대한 규정은 관세법 제108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다. 마약을 수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 혹은 양자를 병과하여 처벌하며, 마약 외의 금지물품을 수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엔 이하의 벌금 혹은 이를 병과하여 처벌한다. 수출입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 혹은 양자를 병과하여 처벌한다²⁰⁹⁾.

209) 정재호, 김수영, 김미영, “주요국의 관세법 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관세연구, 14-01,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연구원, 2014, pp.56-57.

제5절 캐나다의 통관제도

양국 간 무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²¹⁰⁾를 보이다가 2011년 들어 감소하기 시작하여 다음의 <표 3-23>과 같이 처음으로 2013년 흑자와 함께 양국 간 무역규모가 감소하였다.

<표 3-23> 캐나다의 대(對)한국 무역 및 투자 현황

	무역현황		투자현황	
	수출(백만달러)	수입(백만달러)	신규법인 수	백만 달러
2010	3,576	5,957	?	?
2011	5,118	6,662	?	?
2012	4,828	5,247	25	777
2013	5,203	4,717	30	518
2014	4,917	5,443	24	1,04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참고로 저자 작성.

1. 통관제도

가. 통관행정조직

(1) 정부 조직 개관

캐나다는 198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법(British North American)의 제정으로 영국의 식민지에서 영연방 국가로 독립하여 1951년 정식 국명을 캐나다로 변경하였다. 정부체제는 입헌군주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내각책임제의 의회민주주의 연방공화국이며,

210)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1963년 1월 14일 외교관계수립 후 무역협정(1966), 이중과세방지협약(1980), 세관지원협정(1986), 범죄인인도조약(1995), 사회보장협정(1999), 군사비밀교환협정(1999), 통신장비조달협정(2001), 자유무역협정(2015), 항공운송협정(2015) 등 다양한 주요협정을 체결하였다.

행정권한은 정부, 입법은 의회, 사법은 법원에 부여하는 3권 분리 형태를 취하고 있다²¹¹⁾.

캐나다의 법체계는 지방의회와 연방의회에 의해 제정된 성문법과 그 외 각종 판례, 관습법으로 되어 있으며, 퀘벡 주만이 성문법 체계를 선택하고 있고 나머지는 관습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법원은 대법원, 연방법원, 주(지방)법원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캐나다의 연방을 구성하는 지방정부는 10개의 주정부, 3개의 특별지역 정부로 나뉘고, 연방제도는 지방분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연방헌법상의 의무를 각 주 의회가 거부할 수 있다²¹²⁾.

(2) 통관행정 관련 조직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 Agency, CBSA)은 관세청 업무를 비롯하여 국제우편 관리, 철도, 항만, 국경관리 및 식품검열 조사업무를 담당한다.

CBSA는 대규모 조직으로서 13개의 국제공항 및 119개 국경출입국을 관리하며, 주정부 조직 및 중앙부처를 대신하여 90여 개의 법령과 다양한 규정의 집행 및 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집행하고 있고, 금지품목 및 관리대상 품목의 불법적인 수출입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정부 부처 및 기관²¹³⁾과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²¹⁴⁾.

또한 중소기업과 신규 창업자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캐나다 기업 활동과 국세청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캐나다 비즈니스 네트워크(Canada Business Network), 외교통상부 장관이 수출입 허가법(Export and Import Permit Act)에 명시된 수출입 허가 물품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는 수출입통제 및 기술규제국(TCTBB: Trade Controls & Technical Barriers Bureau) 등이 있다.

211) <http://www.canada.gc.ca/aboutgov-ausujetgouv/structure/executive-executif-eng.html>

212) Authorised Economic Operator-Australian Position,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s, 2012.

213) 원자력안전위원회(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곡물위원회(Canadian Grain Commission), 우편국(Canada Post), 식품검사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보건당국(Health Canada), 외교통상부(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환경부(Environment Canada), 문화유산부(Canadian Heritage) 등이 있다.

214) 조미진, “주요국의 통관제도 -캐나다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3) 통관 관련 법률

통관 절차 관련 법령에는 관세의 부과 및 징수, 사람과 물건의 이동 관리 및 불공정 행위로부터의 캐나다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관세법(Customs Act)부터 관세율법(Customs Tariff), 특별수입규제법(Special Import Measure Act), 수출입허가법(Export and Import Permit Act), 소비세법(Excise Tax Act), 소비법(Excise Act), 캐나다가 칠레,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등과 체결한 FTA 이행법 등이 있다.

나. 과세가격 결정과 세액 산정

(1) 과세가격 결정 방법

캐나다 관세법 제3부 Section 48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가격 결정방법(transaction value method)은 거래가격 결정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기본적으로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품의 가격을 토대로 한다.

캐나다 관세법상 수입품 가격은 해당 품목의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한 금액의 총액 개념으로 정의하며, 수입품 가격을 기준으로 공제되거나 추가되는 등의 가격 조정으로 해당 품목의 ‘거래가격’이 결정된다.

만약 Section 48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Section 49~53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 등

HST의 운용은 기존의 GST의 규정을 흡수한 소비세법(Excise Tax Act)에 근거하며, 세율은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HST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은 중간재에 대하여 주정부가 과세해온 소매세의 폐지, 납세의무 이행비용 경감, 세율 인하 등의 혜택이 있지만 HST 도입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 관세율 제도

(1) HS 품목분류 체계

캐나다의 품목 분류는 HS 코드의 분류 체계를 따라 HS 코드 10단위 기준으로 세분화되어 분류되고 있으며, 관세 부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 분류는 캐나다 관세율법의 일부로 운용되고 있다.

(2) 관세율 체계

캐나다의 관세율은 최혜국대우를 부여받은 국가들에 부과되는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Tariff: MFN)관세, 개도국의 공업화 촉진 및 수출 증대를 목적으로 선진국이 개도국을 원산지로 하는 품목에 대하여 무관세나 일반 관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관세상의 특혜 제공에 따라 부과되는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Tariff: GPT), UN 경제이사회에 의해 선정된 최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이들 수출상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최빈국관세(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LDCT), 상기의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수입된 품목이나 관세율법상 제반 관세율대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품에 적용되는 일반관세(General Tariff: GT) 등이 있다.

또한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한 특혜세율이 있다.

라. 감면과 환급

(1) 관세 감면

캐나다의 관세감면프로그램(Duty Relief Program)은 캐나다로 수입되는 품목 또는 캐나다로 수입된 품목이 바로 수출될 경우 수입 당시의 관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²¹⁵⁾.

215) <http://www.cbsa-asfc.gc.ca/publications/dm-md/d7/d7-4-1-eng.html>

관세감면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90, Duties Relief Application을 작성한 후 CBSA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CBSA는 제출된 지원서를 토대로 관련 서류 및 해당 품목의 이동경로에 대한 검토 후 캐나다에 해당 수입품목이 있는 기간 동안에 업체를 방문하기도 한다.

사전에 CBSA에 허가받은 무역업자에게는 특정 허가번호(licence number)가 발행되며, 관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 해당 양식에 당 허가번호를 적시하면 되지만 허가번호를 발행 받기 전에 이루어진 수입 절차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²¹⁶⁾.

(2) 관세 환급

캐나다의 관세 환급 절차는 ‘Duty Drawback Program’에 의해 이루어지며,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업자, 수출업자, 화주, 생산자 등이 K32, Drawback Claim을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CBSA에 제출해야 한다. 관세환급 신청은 수입된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4년 이내이다.

마. 수출입규제

(1) 수입금지 품목²¹⁷⁾

1) 특정 저작권물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출판물 리스트를 별도로 규정하지만 캐나다 저작권법 28(3)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하다.

2) 위조화폐

‘위조화폐(counterfeit money)’로 정의된 품목들은 형법 제448조에 의거 수입을 금지

216) 조미진, 전게서, 2013.

217) Authorised Economic Operator-Australian Position, op. cit, 2012.

하고 있다.

3) 중고비행기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항공기, 군사적인 목적으로 국방부에서 수입한 항공기, 관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해 강제로 몰수된 항공기, HS 9803.00.00 또는 HS 9810.00.00으로 분류된 민간항공기 또는 국제운송과 연관된 항공기 등의 중고비행기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989년부터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중고항공기는 수입이 가능하다.

4) 죄수가 제조한 상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가 제조한 품목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캐나다 비거주자나 해외에서 귀국한 캐나다 거주자가 판매나 직업상의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하다.

5) 중고 매트리스 및 관련 재료

중고 매트리스 및 관련 재료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세척 및 소독이 되어 있거나 수출업자 또는 다른 세척 및 소독 등에 관련한 전문가에 의해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하다.

6) 상표권법상 수입이 금지된 품목 및 잘못된 원산지정보 기재 품목

상표권상 금지된 품목 및 잘못된 원산지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캐나다산 물품과 묶여진 라벨, 인장, 태그, 포장, 컨테이너 등은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캐나다 현지의 관계자 및 유통업자의 신분이나 주 영업장에 대한 정보 및 이와 관련한 라벨의 경우와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하다.

7) 백색 인광성 성냥

백색 인광성 성냥의 경우도 수입이 금지된다.

8) 중고자동차

모든 종류의 중고자동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NAFTA 조항에 의해 미국·멕시코로부터 수입된 경우, 미국에서 수입된 경우, 유산으로 남겨진 경우 등은 수입이 가능하다.

9) 음란물

음란물 제작의 혐의를 받는 물품과 관련되어 있는 HS 9899.00.00 품목과 관련하여 출판·영상·음성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캐나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보장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한다.

(2) 수출입 허가 품목

캐나다 수출입허가법(Export and Import Permits Act)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입 통제 및 허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며, 이를 규정하는 목적은 주로 의류 제품의 수입관련 보호, 국가 간 협정 등의 이행, 군사물자의 통제, 농업분야의 보호 등을 들 수 있다²¹⁸⁾.

(3) 수입쿼터

WTO 농업협정의 서명국으로서 주로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저율의 관세 부과 및 관세율 할당을 시행하며, 외교통상부에서 TRQ에 따른 수입허가를 관할하고 있다.

바. 기타

218) http://english.exportal.or.kr/nation/101002/stamp/101002_4002_12991.pdf

(1) 반덤핑·상계관세 제도²¹⁹⁾

캐나다는 외국물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 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덤핑(Anti-dumping) 관세조치와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물품과 수출업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해 해당 수입품에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부과하는 상계관세 등을 특별수입규제조치법(SIMA: Special Import Measure Act)에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무역구제기관은 덤핑수입 등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를 조사 및 판정하는 국제무역재판소와 덤핑 및 보조금 사실에 대해 조사하는 국세청으로 구분된다.

무역구제 운용 절차는 조사의 개시, 예비조사 및 판정, 최종조사 및 판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자가 CRA에 조사신청을 하면 관보에 조사개시의 결정이 게재되며, 국제무역재판소, 수출국 정부, 수입업자, 수출업자, 신청인에게 통보된 후 국제무역재판소가 보조금 및 덤핑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시행한다.

예비판정이 내려지면 국제무역재판소와 CRA에서 최종조사가 진행되며, 각각 90일과 120일 이내에 최종판정이 이루어진다.

(2)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²²⁰⁾

캐나다는 관세법 Section 43.1(1)과 각 개별 무역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수입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물품 반출과 관련하여 확실성을 제공하는 사전심사제도는

219) 조미진, 전게서, 2013, pp.77-80.

220) Authorised Economic op. cit, 2012.

각각의 개별 이슈 및 품목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사전심사의 신청은 대상별로 요구되는 정보가 다르므로 별도로 제시된 양식에 의해 모든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영어나 프랑스어로 작성한다. ‘주의: 사전심사 신청’이라는 문구를 신청서에 표시하여 수입이 주로 이루어질 지역에 위치한 CBSA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며, 또한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신청서는 직접 Origin and Valuation Division 본부로 보낸다.

2. 수출통관 관련제도

가. PIP(Partners in Program) 프로그램

AEO와 비슷한 제도로써 캐나다 관세청은 국가 안전 및 보건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 PI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PIP 업체는 캐나다와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싱가포르, 일본, 한국, 미국으로의 수출통관시 신뢰되는 업체로 간주되어 신속한 통관 등의 혜택을 얻게 된다.

나. FAST(Free and Secure Trade) 프로그램

국경 안보 강화 및 상품 공급망의 안전 확보와 함께 사전에 허가받은 품목과 무역업자가 보다 빠른 통관절차를 적용 받을수 있도록 하는 미국 관세청과 캐나다 간에 공동 계획이며, CBSA와 민간부문의 개인 혹은 기업간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다. 요약 신고서 프로그램(Export Summary Reporting Program)

사전 승인된 수출자는 해당되는 물품을 수출한 후에 요약신고서를 월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며,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수출품과 수출 통제를 받지 않는 수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라. 수출통관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1) 관세법 처벌

캐나다에서는 약식기소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경우 중 수출 물품의 거짓 보고 및 진술 등의 내용에 대하여 5만캐나다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 병과²²¹⁾, 밀수출의 경우 5만캐나다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 병과, 허위 수출입 신고의 경우 5만캐나다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 병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고의로 불법 마약사용을 위한 문헌 및 기구를 수출하였을 경우 초범은 1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 병과,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하여 처벌한다²²²⁾.

(2) AMPS(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System)

통관규정에 대한 법률 준수를 높이기 위해 수출 통관절차에 관련된 전 부문에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별도의 벌금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보세구역 운영자, CBSA로부터 4자리 운송인 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자, 회사의 수출입자, CRA에서 사업자번호를 받은 자 등은 모두 AMPS의 대상이 된다²²³⁾.

AMPS하에서 수출자가 관세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일정한 형식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데 만약 수출자가 이를 거부할 시에는 수출품은 세관에 억류되며, 우범자에 대한 정밀 검사 및 감시 조치가 강화되는 등 통관 절차상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21) 조미진, “주요국의 통관제도: 캐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222) 정재호, 김수영, 노영예, 전계서, 2014.

223) 조미진, 전계서, 2013.

제6절 호주의 통관제도

호주의 풍부하고 다양한 자연자원²²⁴⁾은 고르곤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비롯해 다양한 주요 프로젝트를 통해 높은 수준의 외국인 투자를 이끌고 있으며, 서비스 분야는 식품, 에너지, 천연자원 등의 중요한 수자료가 된다. 또한 개방 무역을 통해 농산물 및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다자간 무역협상의 도하라운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1990년대 이전에는 농가의 수입 및 시장의 신호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호주 농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규제가 엄격하였지만 농업분야의 규제 완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주장이 제기됨으로서 1989년에는 호주 국내 밀 시장, 1990년에는 계란 생산, 2000년에는 우유에 적용되는 가격통제권이 사라지는 등 정부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고, 주요 농산품에 대한 규제는 완화 또는 철폐되었다.

하지만 육류 및 가축의 수출에 대해서는 정부의 호주 검역서비스(Australian Quarantine Inspection Service, AQIS) 육류 검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호주의 교류대상 국가 육류에 대한 검사 및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정지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위해 육류 및 가축 수출에 대한 검역 규제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²²⁵⁾.

호주는 각종 광물자원²²⁶⁾의 주요 보유국 및 생산국이며, 우라늄, 납, 구리, 니켈, 흑탄, 철광석 등의 총생산량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수출량도 증가하였다.

호주의 제조업은 관세 인하 정책으로 인해 기계류 수출은 1980년대 중반부터 이후 20년 동안 7배가 증가하였으며, 운송기기의 수출액 역시 같은 기간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호주 제조업 발전주도 및 수출 지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천혜의 자연을 바탕으로 관광객은 미국, 동유럽,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들까지 늘어나는 추세이다.

여전히 불안한 세계경제 및 국내 소비 위축, 호주 달러의 강세 등은 호주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지만 호주가 자원 및 자원관련 프로젝트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강한 수요가 호주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자원의 세계

224) 재생에너지 자원, 우라늄, 천연가스, 석탄, 금, 구리, 철광석 등이 있다.

225) 김한성, “주요국의 통관제도 - 호주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226) 금, 은, 소금, 우라늄, 기름, 미네랄토양, 가스, 알루미늄, 다이아몬드, 알루미늄, 니켈, 보크사이트, 아연, 납, 철광석, 구리 등이 있다.

시장 가격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호주 수출량 성장세의 견고한 디딤돌이 되어주었다. 전통적으로 호주와의 교역은 교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자원부국인 호주가 우리나라의 유연탄, 철광석 등 전략자원의 핵심 조달국이라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²²⁷⁾.

1. 통관제도

가. 통관행정조직

(1) 정부조직 개관

호주는 정치적으로 영국과 같이 상원과 하원의 이원화된 의회 조직을 바탕으로 의회에서 총리와 장관을 임명하는 내각책임제로 운영되고, 성문법제도를 기본으로 한다.

호주는 지역적으로 6개 주²²⁸⁾와 2개 영역²²⁹⁾로 나뉘며, 영역(territory), 주(state), 영연방(commonwealth), 지방(local)으로 운영되고 있다.

(2) 통관행정 관련 조직

호주의 통관 절차에는 가장 직접적으로 호주 국경 관리 및 수출입 통관을 관장하는 기구는 법무부의 하위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유사한 권한과 역할을 지닌 호주 관세 및 국경보호서비스(Australia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ACBPS)와 농림수산물 산하의 호주 검역검사서비스(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AQIS) 등이 있다.

227) 김한성, 상계서, 2013.

228) 뉴사우스웨일즈, 타즈마니안, 퀸즐랜드, 서호주, 빅토리아, 남호주.

229) 노던테리토리, Australia Capital Territory(ACT).

(3) 통관 관련 법률

통관 과정에서 작용하는 관련 법률에는 수입식품통제법(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 통상법(Commerce(Trade Descriptions) Act 1905)²³⁰, 검역법(Quarantine Act 1908),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 금융거래보고법(Financial Transactions Report Act 1988), 상표법(Trade Marks Act 1995)²³¹, 신고 급자동차세법(A New Tax System(luxury Car Tax) Act, 1999), 신 부가가치조세법(A New Tax System(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 신와인균등세법 (A New System(Wine Equalisation Tax) Act 1999) 등이 있다²³².

그 외에 현재 Customs Amendment (Anti-dumping Improvements) Bill(No.2) 2011, Law Enforcement Integrity Bill 2012, Customs Amendment(Antidumping Improvements) Bill(No.2) 2012, Customs Tariff Amendment(Antidumping Improvement No.1) Bill 2012, Customs Amendment(Smuggled Tobacco) Bill 2012, Customs Amendment(Military End Use) Bill 2011 등의 수정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다²³³.

나. 과세가격 결정과 세액 산정

(1) 관세가격 결정방법

수입통관 과세가격의 기준은 수입물품이 선적되는 장소에서 수출을 위한 포장까지 완료한 상태의 가치이며, 수출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²³⁴.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불한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다.

230) 교역 내용 기재, 허위 표기 및 허위 기재에 대한 처벌, 몰수, 수출입 상품 검역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31) 상표, 단체상표, 증명 표장, 방어 상표 등에 대한 법규를 규정하고 등록된 상표를 보호한다.

232) Documentary Import Declaration Comprehensive Guide.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February 2012, p.61.

233) 김한성, 전게서, 2013, pp.40-41.

234) Customs Act 1901 제154항~161L항.

또한 거래가격 외에도 합리적 기준(fall-back)방식, 산정방식(computed), 연역방식(deductive), 유사상품(similar goods), 동일상품(identical goods)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²³⁵⁾.

만약 과세가격에 변동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다면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수입자는 이전가격 조정(TP Adjustment)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관당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²³⁶⁾.

(2) 납부세액의 계산

ACBPS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이외에도 호주 국세청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고급 자동차세, 와인균등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Customs Tariff Act 1995 및 관련 Regulation에 따라 관세가 결정되며, 수입품목이나 원산지 등에 따라 일반 혹은 특혜 관세가 부과된다. 모든 수입품목에는 물품이 수입되는 시점에 기본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가계 소비를 위해 반출 되는 시점까지 부가가치세 부과가 유예된다²³⁷⁾.

다. 관세율 제도

(1) HS 품목분류 체계

국제통일 상품 분류제도를 채택하여 운용하며, 표준수출상품 분류는 HS 6단위에 2단위를 더한 8단위를 사용한다.

현재는 2012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WCO의 품목분류 제4차 개정을 반영한 품목분류를 운용하고 있으며, Customs Tariff Act 1995와 8개 스케줄(Schedule)에 일반관세 및 특혜관세 적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호주 통계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에서 표준수출상품을 담당하고

²³⁵⁾ Customs Act 1901.

²³⁶⁾ 삼일회계법인, “관세가격 평과와 이전가격의 조화 방안 연구”.

²³⁷⁾ 김한성, “주요국의 통관제도 - 호주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p.44.

있으며, 호주 국제무역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1월, 7월에 업데이트하고 있다.

(2) 관세율 수준

1) 일반관세

호주는 개방형 국가로서 OECD 국가에서 최저 평균관세율을 부과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2) 자유무역협정(FTA) 특허관세

호주는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며, WTO나 APEC과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경제협력이나 무역자유화에 초점을 맞춰 왔다.

현재 칠레, 미국, 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ASEAN, 말레이시아와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한국, 일본, 인도 및 인도네시아, 중국과의 양자간 FTA가 진행되고 있다. RCEP을 비롯하여 GCC, PACER Plus, TPP 등 총 9개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동 협상이 모두 완료된다면 호주 총교역의 45%는 FTA 체결국과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3)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양허관세

남태평양 지역 선진국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남태평양지역 무역경제협력협정(SPARTECA)에 근거하고 국가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소위 'Forum Island' 국가인 총 13개의 대양주 도서국²³⁸⁾에 대해 관세 감면 또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저개발국 50개국에 대하여 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개도국에 대하여도 국가의 발전 정도 및 산업에 따라 DCT 관세율 적용국, DCS 관세율 적용국, DC 관세율 적용국 등으로 분류해 관세 감면 혜택을 준다.

(3) 반덤핑·상계관세제도 등 수입규제

238) 바누아투, 투발루, 통가, 솔로몬 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니우에, 나우루, 마셜아일랜드, 키리바티, 피지,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쿡아일랜드, 서사모아 등이다.

호주의 상계관세·반덤핑제도는 수입제품의 보조금 지급 및 덤핑으로부터 호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WTO 절차 및 규정에 준해 시행하며, 호주 세관은 덤핑 및 보조금 조사 신청,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 부과를 권고하며 조치 이행을 확인한다.

2013년 7월 발효된 신규 반덤핑제도 개선안은 WTO 협정 및 여타 국제무역 의무에 부합하며 개방경제에서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추구하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 감면과 환급

호주는 상업용, 개인용, 이사물품, 여행자 휴대품 등에도 일괄적으로 1천호주달러 이상의 품목이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에 법에서 정한 기타 관련 세금 및 관세를 부과한다. 호주의 관세 감면은 2013년 3월 1일 발효된 Customs Tariff Amendment Act 2012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1) 관세양허규칙(Tariff Concession Order, TCO)

호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입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생산되지 않고 있는 경우 관세를 면제해 주는 TCO 제도가 도입되었다. 의류, 승용차, 일부 가공식품은 동 조항의 혜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며, 수입자는 TCO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해당 수입품이 호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B443 신청서를 작성하여 호주 CBP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해 최종 결론에 도달한 시점에서부터 TCO 혜택이 발효되며, 이전의 수입에 대해서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임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호주는 호주로 반입되어 12개월 이내에 다시출되는 품목에 대하여 해당 세금 및 관세를 면제해 주는 관세감면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임시수입품에 대한 관세 감면은 카

르넷(Carnets)²³⁹,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Security) 등을 이용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재수출을 못한 경우 임시수입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련 세금 및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3) 부가가치세(GST) 면제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은 GST 부과 대상이지만 영사특혜면제법, 외교특혜면제법, 신세금제도법(GST법)²⁴⁰, 국제조직법 등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직법 등에 따라 외교관, 영사 본인 및 가족의 소비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GST를 면제해주고 있다.

(4) Paid Under Protest(PUP)

ACBPS가 부과한 관세에 대해 수입자 혹은 대행업자 입장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반덤핑관세를 적용받은 품목이 아니라면 ACBPS가 부과한 관세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제고를 요청하는 'Paid under Protest'로 상품의 유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PUP를 신청한 경우라도 수입품이 세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5) 관세 환급(Refunds of Customs Import Duty)

수입자는 Customs Regulations 127항과 128F항을 충족하면서 동법 제126(1), 126B, 126C 및 126D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과정에서 지불한 관세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수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GST, 고급자동차세(Luxury Car Tax, LCT), 와인균등세(Wine Equalisation Tax, WET) 등도 환급을 해주고 있지만 1만호주달러를 넘어서는 GST 환급에 대해서는 호주 국세청(Australia Tax Office)이

239) 각국의 상의나 자동차협회 등이 발행한 '물품에 대한 여권'에 해당하는 증명서로서 이들 기관이 추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관련 세금 및 관세를 납부하겠다는 증명서이다.

240) 의료기기 및 기타 의료용품, 특정 음식 및 음료, 현금 등 GST 면제 대상품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호주 국내 주둔 외교관이나 기증품, 재수입 물품, 장애재활군인을 위한 차량 수입 등 폭 넓은 품목을 명시하면서 이에 대한 GST 면제를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²⁴¹⁾.

(6) 수출 지원을 위한 관세감면제도

1) 수출관세 환급제도(Export Concession Duty Drawback)

수입 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수출하는 상품이나 수입한 제품이 호주에서 사용되지 않고 수출용 상품을 제작하는 것에 사용되는 제품은 수출상품에 대하여 수입된 원재료에 부과했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수출관세 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출관세 환급 청구는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 없이 'Claim for Drawback (B807)'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관세청 또는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모든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이 가능하도록 모든 서류의 보관 의무는 5년이다.

2) AusIndustry-Tradex Scheme

기업이 세금 납부부터 환급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AusIndustry가 주관하는 'Tradex scheme' 제도를 통하여 수출용으로 수입되는 수입품목에 대해 수입 단계에서 GST 및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usIndustry-Tradex Scheme은 관세뿐만 아니라 GST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관세 환급제도보다 혜택의 폭이 더 넓은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마. 수출입 요건과 승인

(1) 표준 및 인증제도

1) 검역

국민의 건강 및 안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제품과 현지 생산되는 모든 식품은 호주의 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검역 대상은 동식물,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241) 김한성, 전게서, pp.61-62.

검역 관련 부처(AQIS)에서는 수입 허가 신청 품목에 대하여 Risk Analysis Management를 실시하며, 그 특정 품목의 결과가 성공적으로 검토된 경우에는 수입이 허용된다.

호주 검역당국 검사관은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위원회의 요구 조건에 대해 라벨링 일치 및 관련된 모든 검사를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육안 검사를 실시한다.

호주뉴질랜드식품표준청(FSANZ)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식품을 위험 식품 카테고리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검사에 실패한 위험 식품 화물은 폐기 처분 또는 재수출된다.

2) 표준 및 라벨링 규정

호주와 뉴질랜드의 식품 표준에 관한 책임기관인 FSANZ는 식품표준코드(ANZFSC)에 대한 운영 및 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호주는 식품의 라벨링에서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소매용 식품포장이나 케이터링 목적의 음식 포장은 제품명을 표기해야 하며, 호주나 뉴질랜드 공급업체의 이름, 회사 주소, ANZFSC 다른 위치에서 지정된 권고문, 필수 경고 권고문 선언 표준 1.2.3에 지정된 다른 경고, 필수 경고 권고문 선언 표준 1.2.3에 지정된 다른 경고, 영양 정보, 날짜, 재료 목록, 특징 성분과 구성요소에 대한 백분율 라벨링도 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⁴²⁾.

(2) 수출입 금지 제한 품목

1) 수입 금지 및 제한 품목

ACBPS에 따르면 지정된 기관이 정한 절차에 의해 수입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수입 제한 품목으로는 총 47개 품목군이 지정되었으며, 수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는 5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2) 수출 금지 및 제한 품목

242) 김한성, 상계서, pp.72-73.

수출 금지 또는 제한 품목의 여부는 최종적으로 관련 기관 또는 ACBPS의 결정에 따르며, 현재 호주가 수출 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품목은 총 25개 품목군으로 나뉜다.

수출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호주 와인법인법 1980, 호주 화단법인법 1987, 상법 1905, 수출관리법 1982 등에 두고 있으며, 각각의 법 및 규제조항은 담당 기관에 의해 조정 및 검토된다.

바. FTA 특혜관세 관련 법률 및 절차

관세에 대한 일반적 사항과 관세 양허표를 규정하는 Customs Tariff Act 1995와 FTA를 체결국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 규정하는 Customs Act 1901의 두 법이 FTA와 관련하여 관세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FTA 체결 시 동법의 관련 부분을 개정하는 FTA 이행법률을 제정하며, 특혜 원산지 검증 및 증명은 FTA 협정을 준용하고 있다.

2. 수출통관 관련제도

가. AEO제도

호주 세관은 2005년 SAFE Framework에 서명하고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에게 SAFE Framework의 주요 항목인 사전 전자 정보 요구, 항공 화물 및 국제 우편 검사 프로그램, 컨테이너 검사, 지식 기반 위험관리 기법 도입 등을 시행해 왔다.

수출업자, 수입업자, 공급망에 있는 여타 당사자들에 대한 보안인증 신청과 평가 절차를 시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07년까지 AEO pilot 프로젝트를 시행해 통합 화물 시스템 이행 및 WCO SAFE Framework 적용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조사하였다.

이후 2008년 기업 의견 조사를 통하여 호주의 AEO제도 도입을 평가한 결과 AEO제도 도입을 위한 비용이 혜택을 초과한다는 결론이 나왔고, 2011년 AEO제도에 대한 기업의 의견에 변화가 있는지 재차 조사를 실시하여 외국 세관 또는 호주 세관이 무역

장벽이 되는가의 여부와 화물 처리에 있어 상업적인 관계 및 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2008년과 2011년의 조사 결과와 동일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AEO제도 도입 비용이 여전히 부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AEO제도가 계속해서 개선되어가고 있음을 강조하며, 운송보안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화물 통제 및 처리 절차 개선을 통하여 공급망의 취약점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²⁴³⁾.

나. 사전심사제도

호주는 품목분류가 확실하지 않은 품목이나 관세양허규칙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적 심사인 품목분류 및 관세양허규칙, 수입하는 상품에 관한 가치 평가에 대해 사전 심사를 통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수입가치, 그리고 원산지 등 크게 3가지 분야에 대하여 사전심사제도를 실시한다.

다. 수출통관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호주는 수출 금지 물품의 수출 및 밀수출 위반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거 양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또는 7,500penalty units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한다.

호주의 관세법에서는 위험 물질을 tier1²⁴⁴⁾과 tier2²⁴⁵⁾로 나누어 수출시 징역 및 벌금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입의 내용이나 수량을 거짓 보고 및 누락하는 경우 60penalty units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43) Authorised Economic, op. cit, 2012.

244) 특정한 마약 촉진 활동 및 약물, 그 밖의 금지 물품 등

245) 사람의 체액, 핵 및 방사능 물질, 화학혼합물, 아동 포르노물, 전투복, 무기, 그 밖의 위조 카드 등

제4장 주요 국가의 통관제도 비교 및 활성화방안

제1절 주요 국가의 통관관련제도 비교분석

1. CFS 운영 및 CS 관리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 화물장치장)는 컨테이너 수송을 위한 시설로서 용기에 수출화물을 적화시키기 위해 화물을 수집하거나 분배하는 장소이다. 컨테이너 하나를 가득 채우기에는 부족한 LCL(Less than Carload Lot)화물을 모아 컨테이너 하나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짐인 FCL(Full Container Load)화물로 만드는 LCL화물 정거장을 의미한다.

CFS가 터미널 내에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지만, 작업의 편리성 때문에 대부분의 대형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들은 그 터미널 내에 CFS를 설치하고 있다²⁴⁶⁾.

C/S(Cargo Selectivity system; 화물선별검사)는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일괄심사대상, 서류제출대상, 현품검사대상을 구별하여 품목별 검사지침을 운용하고, 검사 및 심사결과를 등록하고 처리하는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을 말한다.

수출입 되는 물품에 대하여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해서 검사대상을 선별하고, 전산에 사전 등록된 기준에 의해 우범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화물을 골라 집중적으로 검사함으로써 검사의 효율을 높이는 검사 관리기법이다.

2. 통관관련제도 비교분석

주요 국가별 통관제도 현황을 다음과 같이 비교분석하여 나열하였으며, 비교에서 빠진 국가는 관련 내용이 없거나 저자가 찾지 못한 국가들이다.

WTO 관세협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포함할지에 관하

246) 이선민, “Network DEA를 이용한 컨테이너터미널의 효율성분석”, 2013.

여 각 계약국의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CIF주의를 채택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해 수입항까지의 물품 운송과 관련비용 전부를 관세가격에 포함하고 있지만 호주는 FOB주의를 채택하여 수출항까지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수출제도는 <표4-1>과 같이 우리나라만이 수출단계 중 적재지에서 수출검사를 이행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나머지 다른 국가들은 모두 물품검사를 신고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가들은 보세구역 반입 전에만 수출신고를 허용하고 있지만 일본은 보세구역 반입 전과 후 모두 허용하고 있다. 수출통제제도를 마련하여 관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며, 단지 미국만이 EIS 및 ATS-AT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위험 물품을 파악 및 감시하고 있다.

<표 4-1> 주요 국가의 수출제도 비교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허용 여부	신고지 검사 유무	수출통제제도 유무
한국	×	× (적재지)	○
미국	×	○	× (EIS 및 ATS-AT 프로그램)
일본	○ (전,후 모두 허용)	○	×
캐나다	×	○	×
중국	×	○	×
호주	×	○	×

저자 작성.

관세법 처벌의 주요 근거 법령은 <표 4-2>와 같이 우리나라 및 일본, 캐나다의 경우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관세법에서 형법의 총칙 규정이 배제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우선적으로 관세법상 규정이 적용되지만 주요 조사국가에서는 형법 총칙 배제 규정은 따로 없다.

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특가법 규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주요 조사국의 경우 일본만 처벌 조항에 가중처벌 내용이 함께 존재할 뿐 특가법에 해당하는 가중처벌 법령은 따로 없다.

<표 4-2> 주요 국가의 관세법 처벌의 근거 법령 비교

	관세법 처벌의 주요 근거법령	형법 총칙 배제 여부	가중처벌법 존재 여부
한국	관세법	○	○
미국	형법	×	×
일본	관세법	×	×
캐나다	관세법	×	×

저자 작성.

관세법 처벌 규정은 <표 4-3>과 같이 캐나다 및 호주의 처벌 수위의 기준은 법원 기소 여부이며, 특히 호주는 밀수출의 경우 법원 기소 여부 뿐만 아니라 물품 범주 및 행위를 tier1, tier2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처벌한다.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밀수출의 행위를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여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하여 미국이나 호주는 최대 10년까지의 징역이 부과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대 4년의 징역이 부과된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시 물품 검사 등에 제한을 주요 조사국보다 많이 두는 편이지만 밀수출의 제재 수위는 조사국 중 가장 낮다.

허위신고죄는 수출인 신고 시 가격, 수량, 품명 등의 사항을 허위로 신고 한 자 등이 해당되며, 미국, 일본, 캐나다의 경우 최대 5년 까지 징역이 부과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단지 벌금으로 그쳐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하고 있다.

금지품 수출입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최대 7년 까지 징역이 부과되는데 반해 미국 및 캐나다의 처벌 규정은 관세법상 조항보다는 관련 개별법에 산재되어 보다 세분화시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 비교는 힘들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 조사국 중에서 대부분인 미국, 일본, 캐나다는 형의 병과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가마다 형의 병과 규정은 다르다.

<표 4-3> 주요 국가의 관세법 처벌 규정 비교

	밀수출	허위신고	금지품 수출입
한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몰품원가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몰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미국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또는 양자 병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또는 양자 병과	개별법
일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캐나다	- 약식기소: CAD 5만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 기소범죄: CAD 50만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과		개별법
호주	특정물품은 tier1, tier2로 나누어 처벌	60penalty units 이하의 벌금 부과	- 물품가치 산정 가능 시 가치의 3배 이하, 1000 penalty units 이하 중 큰 금액의 벌금 - 물품가치에 해당하는 관세 산정 불가시 1000penalty units 벌금부과

자료: 정재호, 김수영, 김미영, 전개서, 2014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조사 국가간 소액물품의 특례기준은 <표 4-4>와 같이 소액 면세에 대한 기준금액은 각 국가의 제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특례제도로서 특송 물품의 경우 간이 통관 및 목록통관 제도를 운영하며, 우편물인 경우 간이신고 및 현장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는 대부분 특송물품, 우편물, 전자상거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이나 관련규정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소액면세기준을 일반수입, 특송물품, 우편물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세법 외에 하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간이신고와 소액범위의 기준이 상이하므로 그 기준을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4-4> 소액물품 특례기준 비교

	관세당국	소액면세 (관세 및 부가가치세)	소액면세 근거법령	통관 특례제도 근거법령
한국	관세청	15만원	부가세법 제12조 제2항, 관세법 제94조 제4호	관세법, 우편물 통관고시, 특송통관, 수입통관
미국	CBP	USD 200	19 CFR §10.151-153 19 USC §1321	19 CFR §145 19 CFR §143-21~28, 19 USC §1498, 19CFR §128.0~128.25
일본	재무성 관세국	1만엔	관세정률법 14조 18호	관세정률법 3조의 3, 관세정률법 3조의 3
캐나다	CBSA	20CAD	Memorandum D8-2-16, Memorandum D5-1-1	Memorandum D17-4-0
중국	-	-	-	-
호주	ACBPS	AUD 1,000	부가세법 Division 38, 부가세법 s42-5, 관세법 규정 31AC, 관세율법 Schedule 432A and 32B	관세법 규정 31AB and 31AC, 호주관세법S68(1)

자료: 정재호, 김수영, 김미영,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관세연구, 12-01,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연구원, 2012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다음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비교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6월 27일에 중국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AEO MRA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출입자 중 한쪽이 AEO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중국의 수입업체에게 자사의 AEO 공인번호 조하번호를 알려준 후 중국 내 수입신고 시 이를 기재하면, 수입서류 심사 간소화, 수입 검사율 축소, 세관연락관 지정, 우선 통관조치, 비상시 우선조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²⁴⁷⁾.

우리나라의 AEO 제도와 중국 기업분류관리제도를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 4-5>와 같다.

적용범위는 우리나라는 9개 당사자이며, 중국은 4개 당사자로서 우리나라가 더 광범위하다. 목적은 우리나라는 기업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법규 준수도를 높이기

247) 관세청, “AEO MRA 설명자료”, 2013.

위함이며, 중국은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 촉진 및 해관관리의 효과적인 시행과 수출입화물의 안전과 편리이다. 평가 등급은 우리나라는 3등급이며, 중국은 5등급으로서 중국의 등급이 더 세부적이다. 심사내용은 우리나라는 법규 준수도, 재무건전성 및 안정성, 내부통제시스템 등이며, 중국은 법규준수현황, 통관실적, 경영관리상황, 하위 등급 1년 경과 여부 등이다. 유효기간은 우리나라는 3년 후 갱신 검사이며, 중국은 매 1년 경과시 상위등급으로 신청할 수 있다.

<표 4-5> 우리나라 AEO제도와 중국 기업분류관리제도의 비교

구분	우리나라 AEO제도	중국 기업분류관리제도
적용범위	수출업체, 수입업체,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항공사, 선사, 하역업자 등 총 9개 당사자	수출업체, 수입업체, 가공무역기업, 관세사(통관대행기업) 등 총 4개 당사자
목적	사전에 기업의 의무와 관련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법규 준수도를 높이기 위함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촉진하고, 해관관리의 효과적인 시행과 수출입화물의 안전과 편리를 목적으로 함
평가등급	3등급(AAA, AA, A)	5등급(AA, A, B, C, D)
심사내용	법규 준수도, 재무건전성 및 안정성, 내부통제시스템	법규준수현황, 통관실적, 경영관리상황, 하위 등급 1년 경과 여부 등
유효기간	3년 후 갱신 검사	최초 신청업체는 C, D 등급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면 B등급으로 분류하고, 매 1년 경과시 상위등급 신청가능(만약 법규위반 적발시 바로 하위 등급으로 변경)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전개서, p.117.

우리나라와 중국의 FTA 원산지 검증을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 4-6>과 같다.

검증방법, 검증기관, 요청 회신기한, 검증결과 통지기한은 두 나라 모두 같으며, 사후 검증은 우리나라는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중국은 통관일로부터 3년 이내로서 우리나라가 더 길다. 벌칙은 우리나라는 2천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중국은 5천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으로 우리나라의 벌금이 더 세다.

<표 4-6> 우리나라와 중국의 FTA 원산지 검증 비교

구분	한국	중국
검증방법	직접검증, 간접검증	직접검증, 간접검증
검증기관	세관	세관
사후검증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	통관일로부터 3년 이내
요청 회신기한	계약당사국별로 상이함	계약당사국별로 상이함
검증결과 통지기한	- 검증대상자: 검증완료일로부터 30일 - 계약국 관세당국: 계약당사국별로 상이함	계약당사국별로 상이함
벌칙	2천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천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

자료: 정재호, 김미영, 류태현, “무역원활화를 위한 중국의 FTA 통관규정 연구”, 관세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조세연구원, 2012, p.165.

중국의 REACH는 다음의 <표 4-7>과 같이 EU의 REACH와 유사하다.

<표 4-7> 중국의 REACH와 EU의 REACH 비교

구분	중국 REACH	EU REACH
시행일	- 2010년 10월 15일	- 2007년 6월 1일
대상물질	- 신규 화학물질	- 기존 화학물질, 신규 화학물질
의무자	- 수입자, 제조자	- 역내 수입자, 제조자, 유일 대리인
시험기관	- 국외의 경우 GLP 인증기관 - 환경보호부 지정 중국 내 시험기관	- 국제공인분석기관 자료 인정
분류톤 수	- 1톤 이상, 1톤 미만, 100kg 미만	- 1, 10, 100, 1000톤 이상
위해성 대책관리	- 1톤 이상 등록자, 사용자, 가공자는 등록 중 규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의 위해성관리대책 수립 의무	- 10톤 이상 등록 시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 (CSR) 제출
벌금 및 제재	-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 벌금 부과- 신고 및 등록되지 않으면 중국 역내에서 수입, 제조, 사용, 가공 금지	- 등록되지 않으면 EU 역내에서 제조 또는 시장 출시 불가
기타	- 위험신규, 일반신규, 중점환경관리 위험 신규화학물질로 구분 - 취급량 1톤 미만인 경우 간이신고, 특별간 이신고 가능 - 공동신고 가능	-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양에 따라 등록, 허가, 평가, 제한으로 구분

자료: 정환우, 2012를 참고로 저자 제작성.

중국은 대통관을 통하여 중국 해관 통관효율을 향상시키는 개혁으로써 많은 주목을 불러일으켰지만 통관구조, 통관절차, 통관수속의 영역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대통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고, 전자플랫폼 구축에 있어서 거래, 통관, 물류, 결제의 연계기능의 구축이 아직 완벽하지 않으며 주관부문 및 절차가 많고 수속이 복잡하다. 또한 검사검역국과 해관 현장 전자신고시스템간의 연계시스템 부족으로 각각의 시스템상에서 별도로 통관검사 및 정보를 등록함에 따라 정보의 중복등록 현상이 나타나며, 해당 부서 업무담당자의 교육수준과 업무능력은 아직까지 대통관 개혁발전과정 중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관제도는 다른 주요 조사국가보다 교역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지만 불법수출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관세법 처벌 규정을 비교하면 주요국에 비해 불법수출 행위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으나 국가별로 법적, 문화적 체계가 다르다. 불법수출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진흥정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처벌 수위의 조정보다는 현장의 감독 및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요 조사국들에 비하여 잘 정립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 및 제도적 장치를 유지함과 동시에 불법수출 유형에 관한 관련 정보를 구축하여 제도의 실효성 강화, 위험관리 강화, 현장의 감독 및 감시 강화 등을 방법을 사용하여 불법수출 행위를 통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AEO 제도 비교분석

관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AEO 제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공급자 당사자들과의 자발적 파트너십을 통해 통관, 심사, 조사 등 관세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 및 법규준수도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주요 조사국에서는 물류의 안전을 위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어 운영 및 정책방향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직후 수입공급망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 AEO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하였으며, C-TPAT인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T1, T2, T3 3단계

로 구분해 등급별로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수출기업의 지원을 목표로 2007년 AEO 제도를 시행하여 수출입부문의 원활화 및 안전 분야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1991년부터 A, B, C, D 4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 관리를 하다가 정확한 수입 화물의 신고 및 안전의 향상, 수출기업지원의 목표로 인해 2008년부터 기존의 4등급을 5등급 기업분류제도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및 일본은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 현황을 공인기업 스스로 평가하고 적어도 연 1회 공인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체평가 접수, 가이드라인 기준별 관리현황 및 변동사항 등 공인기준 이행여부를 중심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공인심사 때와 다른 변동사항을 위주로 보고하며, 미국 및 일본은 기업의 위험관리까지 포함하여 보고 한다²⁴⁸⁾.

AEO 제도에서 내부통제는 자율적 위험관리에서 가장 핵심으로서 관세행정 관련 업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통제프로세스이며²⁴⁹⁾, AEO 공인업체는 이를 통해 관세관련 위험을 스스로 식별 및 해결하여 사전에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구조적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²⁵⁰⁾.

<표 4-8> 주요 국가의 기업의 자율관리 비교 분석

	정기자체평가	보고내용	내부통제시스템
한국	연 1회	변동사항	내부통제시스템
미국	연 1회	변동사항, 기업의 위험관리	수입자자율심사제도(ISA)
일본	연 1회	변동사항, 기업의 위험관리	법규준수규칙(CP)
중국	-	-	-

저자 작성.

우리나라는 AEO 공인 후 갱신 심사 때 통관적법성 및 화물안전관리기준 적법성을 심사함으로써 행정비용 감축 및 정해진 행정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요

248) 강성훈, 김미영, 김다량, “AEO 공인기업 사후관리제도 국제비교”, 관세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102.

249) 김재일, “한국 관세청의 위험관리 고도화를 위한 AEO 제도 효율화 방안”, 관세청, 2014, p.103.

250) 관세무역개발원, “AEO 심사기법과 확산방안 연구용역”, 2009, p.258.

조사국의 경우 AEO 제도와 별도로 운영되며, 미국은 수입자 자율심사제도(ISA)에 의하여 심사하므로 공인기간 동안 기업의 무역법령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세액추징의 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중국은 수입자자율공시제도(VDP)가 운영된다.

일본은 세관의 관세조사를 통해 통관적법성을 확인하며, 심사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에 기반해 공인 등급의 유효기간 및 공인 재심사 제도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5년에 1번씩 AEO의 종합심사를 하며, 미국은 4년에 1번 이상 C-TPAT의 공인기준을 재심사하고, 중국은 3년에 1번씩 MCME 공인기준을 재심사하고, 일본은 별도 유효기간은 아니지만 인증 후 2년 이내에 자가심사결과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AEO 공인기준을 심사 할 수 있다²⁵¹⁾.

<표 4-9> 주요 국가의 AEO 및 통관적법성 심사 비교분석

	AEO 유효기간	AEO 기준 심사방법	통관적법성 심사방법	효과
한국	5년에 1번	AEO 종합심사	AEO	행정비용 감축 및 정해진 행정인원 효율적 활용
미국	4년에 1번 이상	C-TPAT 공인 재심사	수입자자율심사제 도(ISA)	세액추징 확률 감소
일본	2년 이내 재심사 가능	AEO 이행여부 재심사	관세조사	공인 기업에 대한 믿음
중국	3년에 1번	MCME 공인 재심사	수입자자율공시제도 (VDP) 및 관세조사	-

저자작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EO 제도의 효과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제적인 효과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6월 WCO에 국제표준규범 도입약속을 이행할 것을 전 세계 164개국에 WCO Framework 이행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AEO 제도 활용을 통해 제출에 대하여 약속을 실시한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 둘째, 정부 입장의 효과이다. 非AEO 업체에 대해 보안에 집중할 수 있어 국민 건강,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의 반입을 미리 차단하므로 더 효율적인 행정을 운영할 수 있다. 셋째, 기업 입

251) 강성훈, 김미영, 김다량, “AEO 공인기업 사후관리제도 국제비교”, 관세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p.105-107.

장의 효과이다. 안전관리, 내부통제, 재무건전성, 법규준수 분야에서 정부로부터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음으로 인해 대외 이미지가 좋아지므로 거래선 유지 및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며, 물류관련 비용절감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넷째, 국민 관점의 효과이다. 불법물품의 반입이 차단되므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성실기업의 확대로 인해 무역거래 및 물품에 대하여 신뢰성이 향상 될 것이다²⁵²⁾.

나. 사전심사제도 비교 분석

WTO 회원국들은 발리패키지의 채택으로 인해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의무적으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전심사제도는 호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관세법에 제도화 되어 있으며, 대부분 원산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효기간 및 처리기간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다소 상이하지만 큰 틀은 APEC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부분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표 4-10> 주요 국가의 사전심사제도 비교

	소관부서	근거규정	사전심사 요청 사항
한국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법, FTA 관세특례법	관세감면, 원산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미국	CBP, OR&R, NCSD	관세법	원산지 및 원산지표기, 과세가격, 품목분류, 지적재산권, 운송수단, FTA, 수입절차, 환급 등
일본	재무성관세국	관세법	원산지, 과세가격, 품목분류, 타법령의 요건 등
캐나다	CBSA	관세법	원산지 및 원산지표기, 과세가격, 품목분류, 수입금지물품, 수입규제품목 등
중국	해관총서	관세법	원산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호주	ACBPS	행정지침, FTA 협정문	과세가격, 품목분류, 특혜 원산지 등

자료: 이상엽, 김미영, 이민선,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비교 연구”, 관세연구, 14-03, 한국조세연구원, 2014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252) 장다영, 전계서, 2015.

사전심사 대상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이 포함되지만 대부분의 주요국에서는 수입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사전심사는 대부분 수입업체 및 관련 당사자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심사 처리수수료는 주요국의 모든 국가에서 무료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전심사의 처리 기간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표 4-11> 주요 국가의 사전심사 신청절차 비교

	대상 화물	신청인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수수료	처리 기간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한국	수입물품, 수출물품	- 과세가격:납세신고자 - 품목분류:수출업자 - 원산지:수입업자, 수출업자, 생산자	분석수수료, FTA품목	-과세가격: 30일 -품목분류: 일반 30일, FTA 90일 -원산지: 사전확인 60일, FTA 사전심사 90일
미국	수입물품	-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 수출업자, 수입업자, 당사자, 대리인 - 원산지: 수입업자, 수출업자, 생산자	없음	-과세가격: 90일 -품목분류: 30일 -원산지: 30일
일본	수입물품	수입업자, 관련당사자	없음	-과세가격: 90일 -품목분류: 30일 -원산지: 30일
캐나다	수입물품	수입업자, 수출업자, 생산자, 통관대리인	없음	-과세가격: 120일 -품목분류: 120일 -원산지: 120일
중국	수입물품, 수출물품	- 과세가격: 기업분류기준 A류, AA류 수입업체 - 품목분류: 해관에 등록된 수입업체, 수출업체, 대리인 - 원산지: 수입업자, 수입과 직접 관련된자	없음	-과세가격: 15일 -품목분류: 명확 15일, 불명확90일 -원산지: 150일
호주	수입예정 물품	- 과세가격: 수출업자 - 품목분류: 수입업자 - 원산지: 수입업자, 수출업자, 생산자	분석수수료	30일

자료: 이상엽, 김미영, 이민선,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비교 연구”, 관세연구, 14-03, 한국조세연구원, 2014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사전심사 결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우리나라는 정해두지 않았지만 다른 주요국들은 별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사전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요국 모두 일정 기간 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심사 결정서의 적용 대상은 일반적으로 사전심사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정서와 동일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표 4-12> 주요 국가의 사전심사 결정 및 재심사

	유효기간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적용대상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재심사 신청 기간
한국	없음	-과세가격: 신청당사자, 동일 거래의 동일한 수입물품 -품목분류: 동일한 수입물품 -원산지: 동일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품목분류: 규정 미비 -원산지: 30일 이내
미국	-과세가격, 품목분류: 수정 또는 철회되지 않는 유효 -원산지: 3년(FTA는 변경 또는 철회되지 않는 유효)	-과세가격: 동일 거래의 동일한 수입물품 -품목분류, 원산지: 동일한 수입물품	30일 이내
일본	3년	동일한 거래의 동일한 수입물품	60일 이내
캐나다	수정 또는 철회하거나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는 한 유효	수입업자가 수입하거나 수출업자로부터 수입하는 동일 물품	90일 이내
중국	-과세가격: 1년 -품목분류, 원산지: 3년	신청당사자의 동일 물품	60일 이내
호주	5년	동일한 수입물품	30일 이내

자료: 이상엽, 김미영, 이민선,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비교 연구”, 관세연구, 14-03, 한국조세연구원, 2014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제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수출통관제도에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통관관련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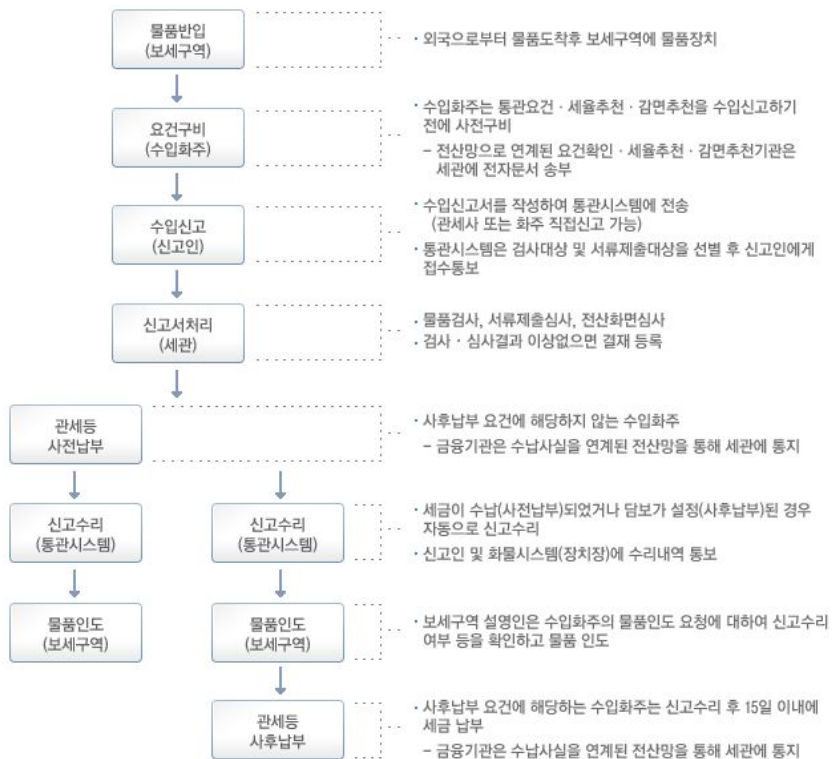
1. 주요 국가의 수출입 통관절차의 비교 및 시사점

가. 한국의 수출입 통관절차

(1) 수입 통관 절차

수입 통관 절차는 다음의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한국의 수입통관 절차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 수입통관제도(<http://www.customs.go.kr>).

1) 물품반입

우리나라에 수입물품이 도착하면 효율적인 수입신고 및 화물관리를 위하여 관할지세관의 관리 하에 있는 보세판매장, 보세전시장, 보세창고, 세관검사장, 세관지정장치장, 컨테이너 야드 등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반입하며, 그 내용의 다음의 <표 4-13>와 같다.

<표 4-13> 우리나라의 보세구역

구분	개념	종류	설치목적	특징
지정보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자체·공항(항만)시설 관리 법인의 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건물 기타의 시설을 지정 - 지정권자 : 세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장치장 - 세관검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편의, 일시장치 및 검사목적 - 행정상 공공의 목적 	소극적
특허보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인 토지, 건물 중 신청 - 특허권자 : 세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창고 - 보세공장 - 보세건설장 - 보세전시장 - 보세판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치, 제조, 전시, 건설 및 판매목적 - 사인의 이익추구 	적극적
종합보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지역 중 지정 - 지정권자 : 관세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보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및 물류촉진 - 개인 및 공공이익 (투자촉진 등 조화) 	적극적

자료: 관세청, 관세행정안내, 보세구역, 2017.

2) 요건구비

관세법, 대외무역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한 수입요건을 요구하는 수입물품인 경우 수입신고 전에 관련 서류 및 관계기관장의 확인을 미리 구비하여야 한다.

3) 수입신고 및 신고서 처리

관세청의 UNI-PASS를 이용하여 다음의 <표 4-14>와 같이 수입신고서상에 신고세관, 요건내용, 중량, 수량, 금액 등의 수입신고내역을 수입신고할 수 있다. 세관에서는 수입물품과 수입신고 사항이 일치하는지의 신고내용을 확인 및 심사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결재처리를 하고, 이상이 있거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자에게 그

에 대한 내용을 통지한다. 하지만 심사결과 수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을 명령한다.

<표 4-14> 우리나라의 수입신고

구분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신고시기	우리나라 입항 5일전 (항공기는 1일전)으로 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적재항 출항전	우리나라 입항 5일전 (항공기의 경우 1일전)으로 선박(항공기) 출항후 입항(하선[기]신고)전	입항후 당해 물품이 반입될 보세구역 도착 전	당해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대상 물품	-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 일본·중국·대만·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신고세관	입항예정지 세관	입항예정지세관	도착예정보세구역 관할세관	장치물품보세구역 관할세관
검사대상 여부 통보시기	선박(항공기)이 출항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출항신고서 및 적하목록)하는 시점	수입신고일	수입신고일	수입신고일
신고수리시기	검사생략	적하목록 제출후	보세구역 도착 보고후	수입신고후
	검사대상	물품검사 종료후	물품검사 종료 후	물품검사 종료 후

자료: 관세청, 관세행정안내, 수입통관 절차, 2017.

4) 관세 등의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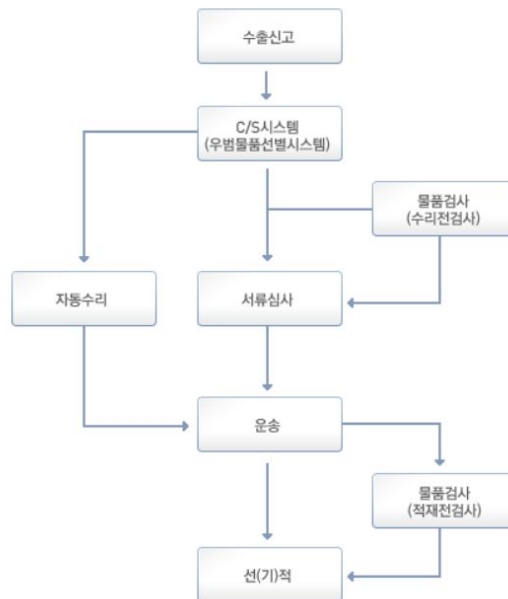
관세,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은 대부분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사전에 납부하면 통관시스템 상에 수입신고수리가 통보되며,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다. 만약 일정 기간 동안 반출하지 않는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과태료가 발생된다.

(2) 수출 통관 절차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신속 수출통관체제를 구축하고 수출신고면허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 보세운송제도 폐지, 보세구역 장치의무 폐지 등 본격적인 수출통관제도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관세제도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²⁵³⁾.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수출통관 절차는 다음의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한국의 수출통관 절차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 수출통관 절차 및 흐름도, 2017.

1) 수출신고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출통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수출자동 수리제를 실시하지만 검사대상 선별 기준에 따라 현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세관장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물품을 실제로 검사한 후 수출

253) 강성훈, 김미영, 노영예, “교역안전 제고를 위한 국제 수출통관제도의 동향 및 시사점”, 관세연구, 제14권 제5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p.7.

신고서를 수리한다.

2) 신고서의 처리 및 수출물품 검사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실시하며, 세관에서는 수출신고서를 수리한 때에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품을 해당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며, 수출화주는 수출신고필증,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등을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표 4-15> 우리나라 수출통관제도의 변천사

연도	주요 변경 내용	개정 목적
1949년	- 「신관세법」 공포 -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현품검사 실시	
1978년	- 수출물품검사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	수출통관시간 단축
1981년	- 물품검사 임의화 - 세관검사장 검사와 나누어 시행	수출통관시간 단축
1987년	- 「수출통관사무처리규정」 제정 - 검사생략 원칙	수출통관시간 단축
1994년	- 원칙적으로 서류제출 생략 - 전자문서 시행	수출통관시간 단축
1995년	- 수출 EDI 시행	수출통관시간 단축
1996년	- 수출면허제 폐지, 수출신고 수리제 도입 - 수출물품 보세구역 장치의무 폐지 - 수출물품 타소 장치제도 폐지	수출통관시간 간소화
1997년	- 보세구역 반입의무 폐지	수출통관시간 간소화
2000년	- 수출자동수리제를 95%로 확대 - C/S 기준에 따라 선별된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선별	신속통관체제 구축
2004년	- 적재 전 검사 도입	수출검사의 효율성 및 민원인 편의 도모
2009년	- 'Two-track' 통관심사제도 구축	심사와 검사 프로세스 비효율 개선
2011년	- 신고수리 후 적재 전 검사 원칙으로 전환	수출검사 대기시간 단축 및

		불법수출 차단
2012년	- 적하목록 제출 후 수출검사대상 통보	불법수출 차단하기 위한 제반 규정 정비
2014년	- 직접신고 확대 - 잠정가격신고 도입 - 서류제출대상 완화	전반적인 간소화

자료: 강성훈, 김미영, 노영예, 전계서, p.16.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3) 수출입 통관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수출입 통관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입물류비를 절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효율적인 수출입환경 제공을 위해 규제 완화 및 통관절차를 추진한 결과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기업환경)’ 평가 중 통관분야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출입 비용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수출입물류비의 대부분은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민간 물류구조의 개선이 없이는 비용절감이 어렵지만 수출입물품 검사 관련 비용 등은 정부의 개입에 의해 발생하므로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수출입물품 검사를 효율적으로 하여야 한다.

동 제품을 수입할 때에도 수입 시마다 검사 및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물품검사 제도와 관리대상화물 관리제도의 주관부서 및 목적이 달라 중복검사 등의 문제와 함께 검사 비용의 부담이 있다. 통관 단계에서 다양한 종류의 상품 표시를 모두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특송물품 증가에 따른 불법통관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특송업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등의 간소화된 통관절차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허위 신고에 따른 불법 통관의 가능성 또한 높아지면서 관세 탈루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송화물 및 특송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나. 미국의 수출입 통관절차

(1) 수입 통관 절차

1) 수입통관절차의 특징

미국의 수입통관제도는 관세의 납부시점에 따라서 일반 수입통관, 임시통관, 보세통관으로 나누어지며 일반수입통관은 수입통관단계와 사후심사단계로 이루어지며, 관계기관은 다음의 <표 4-16>과 같다.

<표 4-16> 미국 수입통관의 관계

관계 기관		관할 품목
식품의약청	FDA	식품, 의약, 의료장비, 화장품, 사료 등 수입규제
농무부	USDA	농축수산물 수입규제
소비자보호안전위원회	CPSC	완구, 유아용품, 라이터, 납페인트 등 수입규제
환경청	EPA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수입규제
통신위원회	FCC	핸드폰, 블루투스, 무선연결기기 등
수산업생동물청	FWS	야생동물, 어패류, 식물 및 그 가공품 수입규제

자료: 김석오, “미국의 수입통관장벽과 시사점”, 계간 관세사, 통권 173호, 한국관세사회, 2014, p.23.

수입통관단계는 세관이 통계자료 수집, 세액결정, 타 법령과의 합치 여부 등을 판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통계목적 및 관세산정의 Entry Summary(납세신고)와 수입물품의 반출을 위한 Entry(화물반입신고)로 구분된다.

미 세관에서는 수입신고를 위해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및 ABI(Automated Brokers Interface) 시스템을 병용한다. ACE는 우리나라의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처럼 미 세관의 인터넷망을 통하여 화주들이 직접 수입신고를 하는 시스템이며, ABI는 우리나라의 EDI처럼 화주를 대신하여 관세사들이 수입신고를 할 때 사용되는 관세사 전용 수입신고 프로그램이다.

사후심사단계는 사후세액심사(Post Entry Review)와 정산(Liquidation)으로 구분된다.

수입신고서류는 일반적으로 분리 제출을 하며, Entry 제출로 물품을 반출한 후 10일 이내에 관세와 함께 Entry Summary를 제출한다. 또한 주로 쿼터품목에 적용되는 방

식으로서 수입하는 때 납세신고를 하는 결합제출의 경우에는 Entry와 Entry Summary를 제출한 후 이를 검토 받아 관세를 납부하며, 필요한 경우 물품검사를 거쳐 반출 한다²⁵⁴⁾.

<표 4-17> 미국의 운송수단에 따른 적하목록 제출시기

운송 수단	미국 세관 통보시한
해상(컨테이너 화물)	선적 24시간 전
해상(벌크 화물)	도착항 도착 24시간 전
해상(항해가 24시간 미만인 경우)	선적항에서 출항 전
항공(일반적인 경우)	도착항 도착 4시간 전
철도	국경 도착 2시간 전
육로	국경 도착 1시간 전

a. 적하목록 사전 제출

미국은 2001년 9·11 테러발생 이후 공급망의 보안강화를 목적으로 사전에 적하목록을 검토하여 화물에 대한 위험성 판단 및 대처를 위해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였다.

운송인은 미국에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화물, 운송수단, 항해, 송하인 및 수하인의 인적정보가 담긴 적하목록을 전자적 방법(AMS:Automated Manifest System)²⁵⁵⁾을 통하여 CBP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적하목록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국 통관항에서 양하금지 조치가 되며, 최초위반시에는 벌금 5,000달러, 그 이후부터는 위반시 벌금 1만달러가 부과된다.

또한 식품 등 FDA 소관 물품인 경우에는 수출하기 전 미국 FDA에 식품제조시설과 제품 등록을 해야 하며, 각 물품의 종류에 따라 Import Permit 등 사전 절차도 밟아야 한다²⁵⁶⁾.

254) 정재호·김미영·이민선, “주요국의 수출입신고서식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p.29.

255) 선사가 미국 지역을 기항하기 위해 작성 및 신고하는 시스템

256) 김석오, “미국의 수입통관장법과 시사점”, 「관세사」, 통권 173호, 한국관세사회, 2014, p.25.

b. 화물반입신고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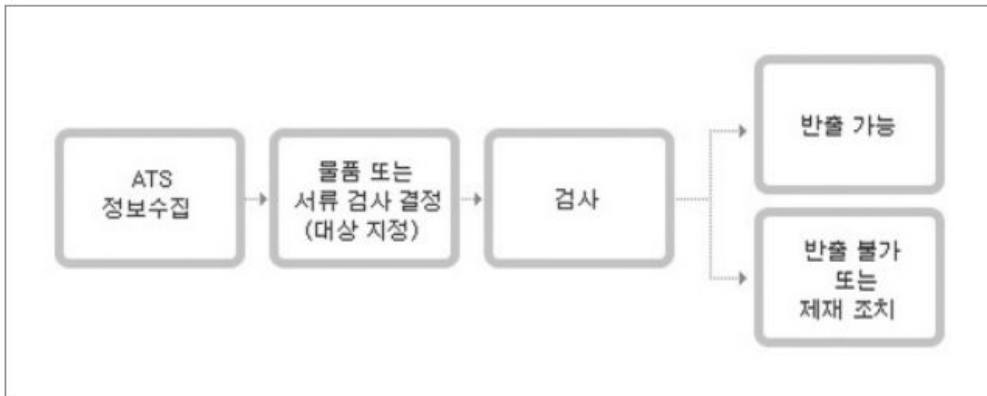
미국에 물품이 도착하면 수입자는 15일 이내에 세관양식 CBP form 3461을 작성하여 통관항 세관에 화물반입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화물반입신고가 15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세관장 명령을 발동하여 화물을 세관창고로 강제로 옮긴 후 폐기 및 매각될 수 있다. 신고유형은 2,500달러를 기준으로 일반신고 및 간이신고로 구분되며, 관세사 전용 인터페이스(ABI:Automated Broker Interface) 또는 AMS를 통해 전송하는 방식과 서면 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이 있다. 수입신고인은 통관대행업자 또는 화주이며 대부분 통관대행업자가 위임을 받아 신고한다.

c. 물품 검사 및 반출

Entry 신고된 화물은 반출 허가가 되기 전 미국 세관 ATS(Automated Targeting System)의 사전정보 분석 결과에 따라 검사 없이 즉시 반출 또는 검사 대상 물품으로 선별되어 검사를 받으며, 그 결과에 따라 통관보류 또는 반송될 수 있다.

Entry 기재내용을 근거로 저위험 및 고위험 물품으로 선별하며, 저위험 물품은 서류 검사만 실시하지만 고위험 물품은 집중 현물검사를 실시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선별된 물품은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선적검사, 수량부족 여부 등 법규위반의 여부가 있는지를 검사한다.

<그림 4-3> 미국의 수입통관 검사절차



자료 :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 내비, 국가별 시장정보

검사 후에는 세관직원이 Entry에 서명함으로써 반출이 허가된다. 반출허가조건으로 제공하는 담보금액은 제 수수료 및 관세의 예상 납부금액으로서 세관장이 결정하고 동의하며, 통상적으로 관세법인이 Customs Bond를 발행하여 세관에 제공한다.

d. 납세신고 및 예정 관세액 납부

수입자 또는 통관 대리인은 수입물품 반출 후 10일 이내에 세관양식 CBP Form 7501, Form7502 등을 사용하여 세관에 납세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번분류, 관세액,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추정된 관세를 납부한다.

납세신고는 ABI를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자동무역 유통 시스템인 ACE(Automated Commercial)가 도입되어 납세신고에 이용되고 있다.

e. 사후세액심사

통관 후 사후심사를 통해 통관적법성의 준수 여부 및 납부세액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며, 세관은 Entry Summary를 심사하여 통계작성, 세액확정, 기타 쿼터 등의 제반 규제법령 등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f. 정산

세액의 정산 및 최종 확정을 위하여 수입자가 계산하여 납부한 관세액과 심사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 부분에 대하여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절차이다.

Liquidation은 원칙적으로 Entry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만 세관에서 정산기간을 자체적으로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CBP Form 4333A를 통하여 수입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반덤핑관세 부과품목의 정산기간은 최장 10년까지이다²⁵⁷⁾.

만약 수입자가 적용된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미국 세관의 정산 이전에 인지했다면 사전에 정정신고를 하여 관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2) 세관의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257) 김석오, 전게서, p.26.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²⁵⁸)는 필수적이며, 물품검사는 부패하기 쉬운 물품 또는 농산품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입자의 반출 수행 전 반출 신청을 한다. 수입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세관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항구 내 검사장 또는 수입자의 사업장에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입물품의 중량 및 수량의 과부족을 발견시에는 관세부과 또는 공제될 수 있다.

a. EIS(Export Information System)

미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의 통관을 위한 추적, 통제를 위해 필요한 전자적 및 문서의 기록 유지, 수집, 사용을 위해 개발된 수출정보시스템은 CBP가 수집한 문서와 형식에 대한 모든 정보, AES와 AES Direct를 통한 수출신고 정보를 수집하며, 이를 토대로 화물 및 문서를 검사한다. EIS는 CBP의 ATS-AT와 연결되어 ESI의 정보를 기준으로 ATS-AT는 수출되는 고위험 화물을 표적화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b. ATS-AT(Automated Targeting System-Outbound)

ATS는 안보 강화를 위해 교통수단, 승객, 화물 등 표적화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서 CBP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개발한 자동표적화 프로그램이다.

ATS는 ATS-N²⁵⁹), ATS-AT(Anti-Terrorism)²⁶⁰), ATS-TF(Targeting Framework), ATS-P(Passenger)²⁶¹), ATS-L(Land)²⁶²)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3) 기타

a. 보세운송

수입자가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수입 통관하기 위해 해당 지역까지 수입 물품의 추

258) 관세 부과 목적의 적절한 관세부과, 수입물품 가격, 특별한 표기 및 라벨, 원산지 표시, 수입금지물품, 불법 화물, 송장의 정확한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한다.
 259) 수입화물과 항공, 선박, 트럭, 기차 등 교통수단에 대해 표적화 하고 있다.
 260) 수출화물과 항공, 선박, 트럭, 기차 등 교통수단에 대해 표적화 하고 있다.
 261) 승객과 항공, 선박, 기차 등 차량에 대해 표적화 하고 있다.
 262) 국내로 반입되는 개인용 차량에 대해 표적화 하고 있다.

가 운송이 필요한 경우 도착항에서 목적 지역까지 수입물품은 관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보세상태로 운송되어야 한다.

보세운송절차는 즉시운송 절차에 따라 CBP Form 7512²⁶³⁾에 의해 진행되며, 수입물품은 목적지까지 운송담보하에 보세운송 되며, 목적지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정식 통관이 이루어진다.

<표 4-18> 미국 보세운송의 종류

종류	내용
즉시 운송 (IT; Immediate Transport)	수입화물을 보세운송으로 미국 내 다른 세관 관할지역으로 운송
보세창고 인출 및 운송 (Wd&T; Warehouse Withdrawal & Transport)	보세창고에 있는 화물을 다른 세관 관할지역으로 보세운송
운송 및 수출 (T&E; Transport & Export)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미국 내 다른 세관 관할지역으로 운송한 후 수출
보세창고 인출 및 수출 (Wd&Ex; Warehouse Withdrawal & Export)	보세창고에 있는 화물을 제3국으로 수출

자료: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국가정보, 미국의 통관절차 및 운송, 2013.

b. 미통관 물품

보세화물의 목적지항 또는 수입물품의 통관항에 도착 후 15일 이내에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화물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창고에 수입자의 비용 및 위험으로 강제 운송되어 보관하며, 이것이 제너럴 오더(General Order, GO)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보세운송비, 선박 또는 항공 운송비, 항만체재비용 등 모든 경비는 수입자가 통관할 때 추후 지불해야 한다. 만약 물품을 수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통관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폐기 또는 공매처분하며, 폭발위험이 있는 물품, 감가상각이 큰 물품, 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은 더 빨리 처리될 수 있다.

263) Transportation Entry and Manifest of Goods Subject to CBP Inspection and Permit.

c. 이의신청

물품에 관한 정보 오류로 인하여 관세 부과가 수입자의 신고대로 될 수 없는 경우 미세관이 심사를 하게 되며, 수정된 정보를 기초로 관세의 과부족에 대하여 환급 또는 부과될 수 있다.

수입자는 관세납부 후이라도 이의신청서를 사용하여 환급 또는 정정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미국 법원에 소환을 180일 이내에 제출하여 해당 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관 소송의 과정은 법원의 규칙, 국제 무역, 기타 관련 판례와 법령에 의거 결정된다.

(2) 수출 통관 절차

미국 관세청은 수출화물에 관련된 수출 제재 및 허가에 대한 제반 법규 준수여부 확인, 수출에 관한 통계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²⁶⁴⁾ 2008년 7월 2일부터 모든 화물의 수출 정보를 자동수출신고시스템(AES: Automated Export System)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²⁶⁵⁾, AES는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24시간 어느 때라도 신고할 수 있다.

AES에서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절차를 생략한 내용심사만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통과된 것에만 하나의 수출허가증으로 간주되고 있는 내부업무처리 번호인 ITN (International Transaction Number)이 발행되므로 ITN을 취득하지 않는 한 수출은 불가능하다²⁶⁶⁾. 또한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군수물자나 물품 등 역시 AES에서 철저히 관리 및 심사된다²⁶⁷⁾.

AES를 통하여 전자수출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당사자는 미국 수출자, 미국의 수출자로부터 위임 받은 대리인, 외국의 수입자로부터 위임 받은 미국 내 대리인이다²⁶⁸⁾.

AES는 수출관련 법령의 집행과 대외무역법 시행규칙(FTR: Foreign Trade Regulation)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으며, 미국 국무부 산하 군수거래통제국, 상무

264) 정재호·마정화·정경화, “미국의 수출통관제도 조사”, 관세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원, 2010, p.23.
 265) 한상현·최준호, “수출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미국의 자동수출신고시스템(AES)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 연구」, 11권 제2호, 2010, p.451.
 266) 성한경, 이민선, 김수영, “주요국의 통관제도: 미국”, 2014.
 267) 정재호·김미영·이민선, 전게서, pp.41-42.
 268) 한상현·최준호, 전게서, p.33.

부 산하 산업보안국, CBP와 통계청 산하 국제무역국, 기타 관계기관에 의하여 공동으로 개발된 수출신고시스템이다²⁶⁹⁾.

AES는 미국 내 모든 공항, 항만, 국경을 경유하는 모든 수출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가적인 시스템이며, 관세청에 전자적으로 수출선적 자료가 신고되어 EDI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연방정부의 중앙시스템이다.

1) 수출통관 절차의 특징

a. 수출신고 대상 화물 및 신고가격

인터넷 주문 화물을 포함하여 2,500달러 이상의 모든 수출화물은 수출신고가 이루어지며, 허가대상 물품²⁷⁰⁾인 경우에는 가격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고가격은 수출자가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물품가격과 미국 선적항까지의 내륙 운임, 보험, 기타 제수수료를 더한 가격이다.

b. 수출신고방법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AES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구입하거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경유의 AESDirect를 사용할 수 있다.

AE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ES에 참가신청서 제출 또는 AESDirect의 온라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상무성 통계국은 테스트에 합격한 신청자에게 AES의 경우 증명서를 발송하고 AESDirect의 경우 통지서를 발송한다.

c. 수출신고방식

첫째, 출발 전 신고이다. 대외무역법 시행규칙 FTR에 의거 수출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수출허가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화물 건에 대하여만 운송수단별 화물정보의 제출기한이 적용되며, 반면에 수출허가가 필요한 화물은 화물정보의 사전제출요건을 규정한 다른 법령에 의해 출발 전에 화물자료를 제출해야 한다²⁷¹⁾.

269) 정재호·마정화·정경화, 전게서, p.24.

270) 목적지가 특정 국가인 물품, 상약품관리청(DEA)의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 국무성 및 상무성 그리고 기타 연방정부기관에 의해 라이선스가 필요한 물품 등

둘째, 출발 후 신고이다. 예외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은 수출자만이 출발 후 수출신고가 가능하며, 출발 후 10일 이내 전자적으로 법령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발 후 신고의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은 위임대리인은 불가능하며, 수출자만이 가능하다²⁷²⁾.

셋째, 신고의 증명이다. 수출신고사실은 수출정보가 송신된 대로 수리되었다는 증거가 되므로 수출자는 항공화물운송장이나 선하증권, 수출선적지시서 등의 기타 선적서류의 첫 페이지에 수출신고면제대상 또는 수출신고사실이라는 증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수출운송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운송인은 출항적하목록에 수출자로부터 제공받은 수출신고면제증명 또는 수출신고증명을 기재하여 수출항의 세관에 제출하며, 만약 이러한 증명자료를 제공받지 않았다면 화물을 적재할 수 없다²⁷³⁾.

d. 운송인의 적하목록 제출

운송인은 적하목록과 함께 필요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며, 미 세관이 위험도가 높다고 선별하여 통보한 물품이 있다면 해당 화물의 검사를 위해 그 화물을 세관에 인도한다. 만약 해당 화물이 이미 해외로 반출되었다면 세관은 국제운송인담보 조건에 따라 화물을 세관에 회송시켜 인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²⁷⁴⁾.

e. 수출에 필요한 서류

미국의 수출신고는 AES에의 전자신고로 이루어지며, AES에 송신하는 전자수출정보(EEI: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다.

첫째, 미국 수출자와 ID, 최종수하인, 수출년월일, 운송수단, 최종목적국 등 모든 신고에 필요한 필수적 항목이다. 둘째, 위임대리인과 ID,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수출라이선스번호 등 조건부 항목이다. 셋째, 운송장비번호(컨테이너번호 등), 봉인번호(Seal Number) 등 임의신고 항목이다.

271) 정재호·김미영·이민선, 전게서, pp.41-42.

272) 한상현·최준호, 전게서, pp.448-449.

273) 정재호·김미영·이민선, 전게서, p.42.

274) 정재호·마정화·정경화, 전게서, 2010, p.30.

이러한 미국의 수출신고를 위해서 상업송장, 견적송장, 영사송장, 수출포장명세서 등 공통으로 사용되는 서류들이 있지만, 수출물품과 수출대상국에 따라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f. 미국의 수출통제

미국은 수출관리법과 수출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미국의 공급부족, 외교정책,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미국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품목의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은 미 상무부의 산업안보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자국의 대외정책, 국가안보,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제한 없는 수출²⁷⁵⁾이 초래하는 악영향, 대량파괴무기(WMD) 및 미사일의 확산방지 등의 이유로 이중용도²⁷⁶⁾품목(dual-use items)의 수출과 재수출을 통제한다. EAR은 수출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술의 경우 미국에서 외국인에게 기술의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도 수출로 간주되고, 또한 외국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제3국의 외국인에게 미국산 기술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술이 당해 외국인의 모국으로 재수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를 통제한다²⁷⁷⁾.

미국의 수출통제 권한은 일부 대상국이나 품목이 부처 간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상국, 대상품목, 통제목적 등에 따라 상무부의 산업안보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 국무부의 방위무역통제국,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여러 정부부처에 분할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표 4-19>와 같다.

275) 지식경제부, “대외무역법 법령 해설 및 유권해석 사례집”, 무역정책관, 2014, p.278.

276) 상무부 외의 수출통제 정부기관의 통제품목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며, 일반적으로는 군사적·전략적 용도 및 상업적 용도의 이중으로 사용가능한 품목을 국무부 관할의 무기 및 기타 군사적 용도의 통제품목, 에너지부와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관할의 핵 관련 통제품목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277) 전략물자관리원,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자세히 알아보기”, 전략물자 관리제도, 2011.

<표 4-19> 미국의 수출규제 담당기관

소속	담당기관	통제내용
상무부	산업보안국	수출행정시행규칙의 집행
	특허청 내 허가 및 심사	외국으로 보내지는 특허신청 자료를 감독
국무부	군수거래통제국	방위 서비스 및 방위 물자에 대한 허가
재무부	국외자산통제사무소	국제적인 마약거래, 테러를 후원하는 단체, 표적대상인 외국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인 제재와 무역제재를 집행
핵규제위원회(독립기관) 내 국제프로그램사무소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한 허가
에너지부	무기통제 및 비확산사무소 내 수출통제부서	핵기술 및 핵에너지 및 특수 핵물질에 대한 기술적 정보에 대한 허가
	연료프로그램사무소	전력 및 천연가스에 대한 허가
국방부	방위기술보안청	국방부의 방위 관련 기술·서비스·물품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기술보안정책 개발과 집행을 담당
내무부	미국 어류 및 야생 생물 서비스	야생 생물, 위기에 처하고 멸종위기에 직면한 종의 수출입
법무부	마약단속국 내 전환통제사무소의 수출입부문	규제물질의 수출과 규제물질점에 의한 규제물질의 생산에 사용되는 열거된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대한 감독
보건복지부	식품의약국 내 준수사무소	미승인 의약기구의 수출
	식품의약국 내 수출입부문	약에 대한 허가
환경보호청(독립기관) 내 고형폐기물사무소의 국제운송부문		유해폐기물 수출에 대한 규제

자료: 정재호, 마정화, 정경화, 전계서, p.40.

미국의 수출통제 목록은 상무부가 관리하는 통제목록(CCL)과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수품 목록(USML)으로 나뉘어진다. 수출 및 재수출 예정품목에 위 목록들에 포함된 경우 허가예외(LE)가 아니라면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신청서는 외국주재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또는 미 상무부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및 제출한다. 수출허가가 난 후에 수출이 이행될 수 있으며, 수출통제 위반에 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면허발행당국에서 사전적인 점검 및 사후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수출 후 최소 5년간 허가신청서, 허가서, 성명서, 증명서, 거래계약서, 통관 관련 서류 등 관련서류를 보관해 두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외교정책 및 국가 안보를 위해 민감한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장비가 해

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수출통제시스템(Export Control System: ECS)을 통해 특정 제품의 수출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ECS에서 감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행정부인 상무부, 국무부, 재무부가 수출면허를 발급하여 처리하고 있다. ECS는 수출면허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과 면허신청을 조율하는 미국 정부가 단일면허부서(Single Licensing Agency: SLA)를 통해 원스톱(one-stop) 제공으로 인해 예측가능하고 투명하면서 적시에 면허발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²⁷⁸⁾.

(3) 수출입 통관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수출입 통관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부과금을 절감하여야 한다. 미국은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 이외에도 항만유지비 및 물품취급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인 일본 및 EU 등은 수입품에 대하여 미국이 항만유지비를 항만유지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의 이상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인해 수입부과금은 철폐된 상태이다.

둘째, 모든 세관의 통관 절차를 통일시켜야 한다. 미국의 국경보호국 및 세관은 수출입에 관련된 일원화된 창구를 도입하였으나 세관별로 세부 절차를 일부 상이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야 한다. 미국은 무역구제조치로서 상계관세 및 반덤핑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들을 부과함에 있어서 소급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출물량에 대하여 이들이 부과되는 경우 원심예비판정, 원심 최종판정, 연례 재심 등을 거치는 등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정확한 부과액을 알기까지 2~3년이 걸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인해 수출품에 대하여 반덤핑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278) <http://www.export.gov>

다. 중국의 수출입 통관절차

(1) 수출입 통관 절차

중국의 수입 통관절차는 <그림 4-4>와 같다.

<그림 4-4> 중국의 수입 통관절차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 수산물 수입 통관제도”, Global Seafood Market Trends, Vol.1-3, 2015.

1) 수입신고

중국해관에서 실시하는 통관신고방식은 서면신고, 구두신고, EDI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자료 신고는 인터넷 신고방식, 직접 EDI 방식, 위탁 EDI 방식, 단말기 신고방식 등의 종류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 내용을 해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자료 신고서가 생성된다²⁷⁹⁾.

2) 화물검사

통관신고업체의 신고접수 후 수출입화물의 금액, 성질, 수량, 화물의 상태, 원산지 등의 신고내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한다²⁸⁰⁾. 해관은 실제 경험 및 현장감독에 소요되는 장소, 인력, 물자 등 조건에 근거하여 외형검사, 추출검사, 전수조사 등의 검사방식을 채택하며²⁸¹⁾, 포장되어 있는 화물의 개봉은 반드시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의 협장 입회하에 통관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²⁸²⁾.

검사종료 후 해관담당자는 검사장소, 시간, 화물의 명칭, 상태, 수량, 품질, 원산지, 규격 등의 검사결과를 기재하는 「해관수출입화물 검사기록」을 작성한다²⁸³⁾. 만약 검

279) 중국관세무역연구회, 「중국관세무역신보」, 2011-14호, 2011, pp.25-26.

280) KOTRA 베이징 무역관, 「KOTRA 국가정보-중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4.

281) KOTRA, 「국가정보(중국)」, 2010.

282) 해관총서, 「수출입화물 검사관리방법」, 해관총서령 제138호, 제7조, 2005.

사과정에서 수출입화물의 손해가 발생된다면 반드시 검사해관은 실제손실을 배상해야 한다(284).

3) 관세징수(품목분류, 과세가격 및 관세 납부)

수출입화물의 품목분류는 송수하인 또는 대리인이 해관에 신고한 화물의 실제 상태에 의해 확정되며, 사전신고방식 수출입화물의 경우 상품분류는 화물이 해관감독관리 장소에 도착한 당시의 실제 상태에 의거해 확정한다(285).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해관이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심사결정하며, 과세가격에는 중국 내 수입지점까지 화물을 운송 후 하역 전까지의 운임과 운송관련 비용, 보험료를 포함하고, 거래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관은 관련 상황을 고려하고 납세의무자와의 협의를 거쳐 과세가격을 심사결정한다(286).

4) 통관 및 반출입(통관종료 및 환급)

해관감독화물의 실제 수입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로서 화물의 소유자 또는 그 통관원의 요청에 의하여 통관수속 종료 후 「수출입화물 증명서」를 발행한다(287).

(2) 수출입 통관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수출입 통관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류심사를 간소화시켜야 한다. 서류심사는 중복으로 인해 기업 및 해관 모두에게 부담을 주며, 신고서는 컴퓨터에 입력 및 서면수기날인 이라는 2번의 업무 조작을 통하며, 자원낭비를 조성한다.

둘째, 화물검사에 대한 외부비용을 줄여야 한다.

세관에서 물품검사의 통관업무 시간은 비검사 화물은 15분이 소요되지만, 검사화물

283) 「수출입화물 검사관리방법」, 제10조.

284) 「해관법」 제94조.

285) 해관총서, 「해관수출입화물 상품분류관리규정」, 제5조, 해관총서령 제158호, 2007.

286) 해관총서, 「해관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제5-6조, 해관총서령 제148호, 2006.

287) KOTRA, 2013.

인 경우 약 2시간에서 2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통관 절차의 재설계를 통해 최적화 및 효율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라. 일본의 수출입 통관절차

(1) 수입 통관 절차

1) 사전 절차

a. 일본 수출입자 표준코드 및 세관발급코드 신청

일본 수출입자 표준코드(Japan Shippers & Consignees Standard Code)는 수출입 업무의 당사자를 식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로서 일반적으로 표준코드, JASTPRO, NACCS 코드, 수출입자코드 등으로 불리며, 관련 절차는 JASTPRO²⁸⁸⁾에서 실시하고 있다. 표준코드가 의무는 아니지만 표준코드를 사용하면 관세법 제 67조의 3에 의거 수출신고의 특례에 관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신속한 통관 심사 및 편리한 통관제도의 이용이 가능해진다²⁸⁹⁾.

세관발급코드는 2008년부터 세관에서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며, 이미 표준코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세관발급코드를 따로 취득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두 가지 모두 취득했다면 표준코드를 세관발급코드로 전환하여 사용하면 된다. 세관발급코드 역시 의무는 아니지만 세관발급코드를 사용하면 수출입 신고 사항의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 절약 및 각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²⁹⁰⁾.

b. 수입신고 절차

수입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되면 당해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 관서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특정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기 전 또는 선박에 물품을 적재한 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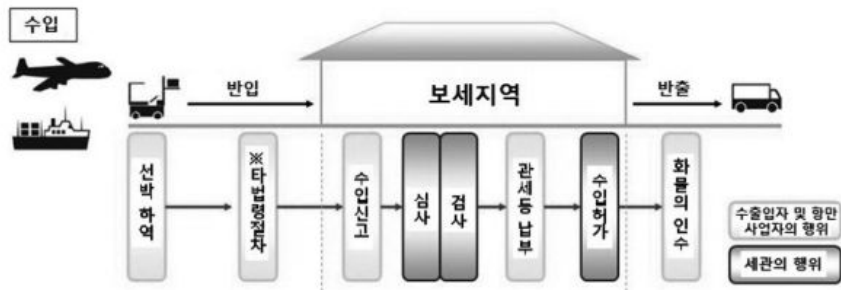
288) 일본무역관계절차간소화협회; Japan Association for Simplification of International Trade Procedures.

289) <http://www.jastpro.org>

290) www.customs.go.jp/zeikan/seido/zeikancode.htm

일본에서는 대부분 NACCS 시스템을 통하여 수입신고 및 전자 통관이 이루어지며, 세관의 검사 및 심사를 통과한 수입화물은 세금 납부 후 수입 허가를 받아 화물을 반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의 <그림 4-5>와 같다.

<그림 4-5> 일본의 수입통관 절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통관제도 - 일본편-”, 2014, p.151.

일본에서는 약 98%가 NACCS(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를 이용해 수출입 신고 및 관세 납부를 전자문서로 처리하고 있다²⁹¹⁾.

NACCS은 입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수출입되는 화물에 대하여 세관 기타 관계 행정 기관에 대한 절차 및 관련 민간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며, Air-NACCS와 Sea-NACCS를 통합하고, JETRAS와 항만 EDI 시스템 등 관련 부처 시스템에 대해하여도 NACCS에 통합하였다.

NACCS에 입력된 정보는 세관의 CIS²⁹²⁾를 통해 리스크가 높은 화물과 낮은 화물을 선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는데 사용하며²⁹³⁾, NACCS는 수입화물이 공항 또는 선박 도착 후 국내에 인수까지의 세관 수속 및 민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출항 전 보고는 당해 선적항을 출항하기 전에 일본에 입항하려는 선박에 적재하는 해상 컨테이너 화물과 관련된 적하정보를 전자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²⁹⁴⁾.

291) KOTRA 도쿄 무역관, 국가정보, 통관 및 운송제도, 2014.

292) Customs Intelligence Data Base System; 통관 정보 종합관정 시스템

293) KOTRA 도쿄 무역관, “KOTRA 국가정보-일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4.

294) 관세청, “일본관세관 연구과제 보고서”, 2014.

수입신고 제출서류는 수입신고서와 함께 포장명세서, 운임명세서, 보험료명세서, 해상화물 운송장 또는 선하증권, 송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의 종류에 따라 타 법령의 승인 또는 허가증, 감면세 명세서, 특허 원산지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수입신고는 보세구역 반입 후에만 수행할 수 있으나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것이 곤란한 화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관 지정 보세구역 외에 다른 장소에 반입해 수입통관을 하며, 필요하다면 지정 구역 외 검사 신청을 할 수도 있다.

NACCS를 통한 수입신고 시 심사는 다음의 <표 4-20>과 같이 간이심사, 서류심사, 화물검사 중 하나로 선정되어 전송된다.

<표 4-20> 일본의 수입신고 후 심사의 구분

구분	심사 종류	심사 내용
구분1	간이심사	-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서 및 첨부 서류 제출 면제 - 무세 또는 면세, 관세의 납부기한 연장제도나 계좌이체 방식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납세)신고 후 즉시 수입허가 - 단,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세관에 서류 제출해야 함
구분2	서류심사	- 세관에 통관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구분3	화물검사	- 세관원에 의한 화물 검사를 받아야 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통관제도 - 일본편-”, 2014, p.159.

관세 납부에 대한 신고는 수입신고서에 해당 화물에 대한 과세표준 기타 사항 외에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신고에 의해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신고 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 부과, 20만엔 이하의 우편물, 입국하는 자의 별송품 및 휴대품 등의 경우에는 부과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²⁹⁵⁾.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운용 절차의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일반 수입자 및 특례 수입자는 수입 거래와 관련된 서류 및 장부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295) 관세법 제6조의 2.

수입화물에 관한 수입신고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치 못한 신고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고 신고 지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출입 통관 이후 세관 직원이 수출입자의 사업소 등을 방문하여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의 확인을 한다.

조사를 통하여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은폐 또는 거짓 신고의 경우 증가산세가 부과된다.

사후 조사를 위해 법인세 및 소비세 확정 신고서, 회계 관계 장표, 통관 서류, 관세 관계 장부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2) 기타 수입통관 제도

a. AEO 공인기업에 대한 특례 수입신고 제도

통관 수속의 신속화와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AEO 공인기업에 대하여 납세신고와 수입신고를 분리하여 납세신고 전에 화물을 인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b. 예비심사제도

신속 통관을 위하여 일본에 화물이 도착하기 전 또는 수입 관련 절차의 종료 전이라도 수입신고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세관 심사 및 검사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사전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c. 소액물품 간이통관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가격이 20만엔 이하의 소액 화물에 대하여 간단한 통관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만약 신고자가 간이통관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절차에 의해 수입통관을 한다.

d. 개인물품의 통관

일본으로 개인 물품을 수입통관하는 방법으로는 일반 수입통관 외에 여행자 휴대품의 통관, 특송통관, 우편 통관 등이 있다

e. 소액물품 면세 제도

기타 내국 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의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소비세 및 관세가 면제된다²⁹⁶⁾. 하지만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의 물품이라도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및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특별히 정해진 물품에 대하여는 면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f. 항공화물 운송장 등에 의한 수입신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당 과세가격이 20만엔 이하인 경우의 수입신고 내용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덧붙여 그 송장 등을 일반 수입신고서를 대신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²⁹⁷⁾.

g. 창구 전자 신고(수출입)

일본의 일부 세관 관서 창구에 창구 전자신고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 NACCS를 이용하여 수입 및 납세 신고에 관한 절차, 신고 첨부 서류의 등록과 관련된 업무, 화물 정보 등록, 수출신고 및 반송신고 관련 절차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2) 수출 통관 절차

1) 수출신고

a. 수출신고와 물품의 장치

일본은 무역 원활화를 위해 모든 수출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도 수출 신고를 하게 되었지만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세 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화물의 보완관리와 사내 규정 준수 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화물을 세관장이 보세 지역 외부에 둘 수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 보세 지역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화물, 모양 및 성질에 따라 지정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것이 어려

296) 관세정률법 제14조 제18호.

297) 관세법 기본통달 6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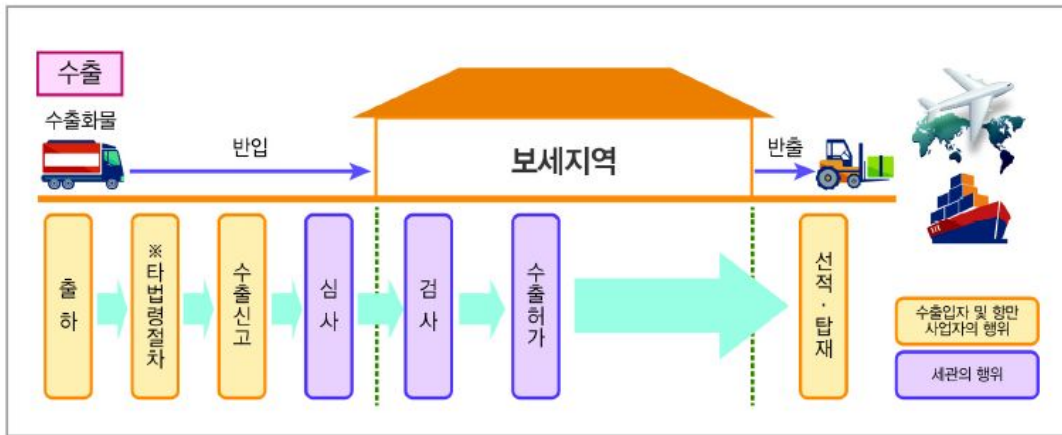
운 화물 등은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수출신고는 기본적으로 수출신고서와 송장 또는 송장을 대신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신고와 관련된 화물을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지역 등의 장소에 반입한 후에 화물을 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출신고는 전자통관시스템인 NACCS를 통하거나 창구에 단말기가 설치된 세관 관서에서 창구 전자신고를 통해 할 수 있다.

항공 화물은 수출 화물의 운송 인수에서부터 항공기 적재까지, 선박은 수출화물의 보세구역 반입에서부터 선박 출항까지의 전반적인 세관 수속을 처리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입 시 관세율표를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일본은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통계품목표(실행관세율표) 상의 품목번호를 사용하고, 수출 시에는 일본 관세국에서 별도로 고시하고 있는 수출통계품목표²⁹⁸⁾상의 번호를 기재한다.

<그림 4-6> 일본의 수출통관 절차



자료: 강성훈, 김미영, 노영예, 전계서, p.47.

b. 세관의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

NACCS를 통해 수출신고 시 간이 심사, 서류 심사, 화물 검사 중 하나가 선정되어 통보되며, 간이 심사의 경우에는 전산상의 정보로 수출허가 여부가 결정되므로 서류의 제출이 불필요하다. 서류 심사를 위해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허가 여부

298) <http://www.customs.go.jp/yusyutu/index.htm>

를 심사 받아야 하며, 화물 검사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화물의 성질 또는 수량에 따라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를 받고자 한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c. 소비세 수출 면세

내국 소비세인 소비세는 외국에서 소비되는 것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일본 내에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이 판매가 수출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세가 면제되며, 수출 면세를 받기 위한 증명 서류는 다음의 <표 4-21>과 같다.

<표 4-21> 일본의 수출 면세 증명 서류

수출형태	증명 서류	
일반 수출	- 수출허가서 - 세관의 수출 증명서 또는 적재 승인서 - 탁송 또는 휴대의 경우 수출 탁송품 허가서	
우편 수출	20만엔 초과	세관의 수출증명서 또는 수출증명서
	20만엔 이하	그 사실을 기재한 장부 또는 우편물 수령증

자료: 관세국(www.customs.go.jp)

마. 캐나다의 수출입 통관절차

(1) 수입 통관 절차

1) 수입업자의 사업자등록

캐나다에서는 통관서류 제출 및 세관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므로 물품을 수입하기 이전에 Business Registration Online(BRO)에 사업자등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²⁹⁹⁾.

299) <http://www.cra-arc.gc.ca/tx/bsnss/tpcs/bn-ne/bro-ide/menu-eng.html>

2) 수입신고 및 관련 서류

a. 수입신고

캐나다 관세법 Section 12에 의해 수입되는 모든 상업용 제품은 캐나다 세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운송 방식에 따라 수입신고 방식이 다르며, Advance Commercial Information(ACI 프로그램300)에 따라 항공 및 선박의 경우 외국공항 및 항구에서 물품을 적재하기 24시간 전에 관련 데이터를 CBSA에 전자송부 해야 한다301).

또한 철로를 이용하는 경우 캐나다로 도착하기 이전에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의 화물통제서류(Cargo Control Document, CCD)를 가지고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며, 만약 물품을 소지한 사람이 캐나다에 도착한 경우에는 구두신고(orally reporting)가 가능하다302).

b. 관련 서류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캐나다 세관 물품분류양식(Canada Customs Coding Form, Form B3), 화물통제서류(CCD) 외 기타 관련 서류 등이 CBSA에 제출되어야 한다303).

수입물품의 최초 도착기록인 화물통제서류는 운송인이 CBSA에 화물을 신고할 때 사용하며, 반드시 바코드 방식의 화물통제번호(Cargo Control Number: CCN)가 있어야 한다304).

3) 물품의 반출

캐나다에서는 일반적인 통관절차인 일반서류통관제도(Release on Full Documentation;

300) 캐나다의 보건, 국가안전 및 보안 측면에서 화물 및 운송수단이 캐나다로 도착하기 이전에 위협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위험관리 절차 및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301) <http://www.cbsa-asfc.gc.ca/prog/aci-ipecc/menu-eng.html>

302) '수입물품의 신고규정(Reporting of Imported Goods Regulations)'의 Section 4. Manner of Reporting.

303) CBSA, "Importing Commercial Goods into Canada".

304) 캐나다 관세청(http://www.cbsa-asfc.gc.ca/import/acc-resp-eng.html#P266_22757)

RFD), 최소의 서류로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관세 납부 이전에 물품을 통관하는 최소서류통관제도(Release on Minimum Documentation; RMD), 전자통관(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시스템 및 물품의 신속한 반출을 위한 약식통관(line release)제도를 운영하고 있다³⁰⁵⁾.

최소서류통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년도 월평균 관세 납부액에 해당하는 수준의 보증금(최소 250캐나다달러, 최대 1천만캐나다달러)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하고, 둘째, 통관 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하며, 셋째, 해당 시점 및 향후에도 통관 관련 위반사항이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전자통관시스템에는 첫째, 통관 결정사항을 시스템 참여자에게 적기에 효과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구현된 Releases Notification System, 둘째, 수입업자와 통관중개인이 반출 및 송장과 관련한 정보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Accelerated Commercial Release Operations Support System(ACROSS), 셋째, 수입업자와 중개업자들이 이미 반출된 제품에 대해서 CBSA에 각종 통관양식을 전자통신 형태로 송부할 수 있게 해주는 Customs Automated Data Exchange System(CADEX), 넷째, CADEX와 동일한 기능이지만 UN/EDIFACT(United Nations/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다섯째, Commerce and Transport)라는 국제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여 관련 정보가 CBSA에 제출되는 Customs Declaration(CUSDEC)가 있다³⁰⁶⁾.

약식통관제도에는 첫째, 개인이나 소량의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상업용 수입품의 자가통관 제도인 현금지급 시 통관제도(Commercial Cash Entry Processing System: CCEPS), 둘째, 수입업자 또는 중개인이 통관 정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외교통상부가 ACROSS를 통해 허가 정보를 전자송부하면 세관에서 양측의 정보가 상호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 후 해당 품목을 통관시키는 외통부/세관의 자동 허가제도(Foreign Affairs/Customs Automated Permit System: EXCAPS), 셋째, 수입품에 대한 내국세 및 관세 산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후 CBSA에서 사전에 승인된 수입업자에게 간소화된 수입 통관 절차를 적용하는 관세 자율사정프로그램(Customs Self-Assessment program; CSA), 넷째, 물품이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업자나

305) http://www.cbsa-asfc.gc.ca/import/services-eng.html#opt_04

306) CBSA, "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s", <http://www.cbsa-asfc.gc.ca/eservices/overviewssommaire-eng.html>

통관증개인이 사전검토 및 절차 진행을 위해 RMD 관련 정보를 CBSA에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착전 검토시스템(Pre-arrival Review System; PARS), 다섯째, 검사를 요하는 식품의 통관은 지정된 장소의 검역소에서 전자통관이 진행될 수 있는 세관·식품검사국의 연계(Customs·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Interface)가 있다³⁰⁷⁾.

4) 물품검사

물품검사는 관세법 Section 99에 근거하여 통관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정부 부처에서 제시한 요건의 충족 여부, 금지 또는 제한된 품목이나 밀수품 등의 탐색을 위한 목적으로 수입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³⁰⁸⁾.

일반적으로 상업화물에 대한 검사는 입항지에서 이루어지며, 위험수준에 따라 검사 시간이나 강도가 달라진다. 검사 과정에서 안전하고 빠른 위험화물 및 밀수품의 확인을 위한 주요 검사 시스템으로는 gamma-ray 판독, X-ray 판독, 휴대용 전자 방사선량계, 차량형 탐지 시스템, 방사선 측정, 밀수 탐지 장치를 갖춘 트럭, 소형·휴대용 이온 이동형 분석기 등이 있다³⁰⁹⁾.

5) 물품의 보관 및 처분

a. 보세창고

캐나다의 보세창고는 최대 40일까지의 단기보관 및 수입품 검사 목적으로 이용되는 Sufferance warehouse와 위탁수입 시, 재고 보관 시 또는 수출용으로 최대 4년까지 물품 보관이 가능한 Bonded warehouse가 있다.

Sufferance warehouse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세창고의 특성에 따라 E400, E400B, E400C로 나누어진 보세창고 운영허가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창고가 위치한 지역 관할의 세관에 총 3부를 제출해야 한다. Bonded warehouse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창고 위치와 가까운 세관사무소에 보세창고 운영을 위한 신청서(E401)와 함께 관련 승인서 및 면허를 제출해야 한다.

307) 조미진, 전게서, 2013.

308) CBSA, "Examining your shipment", <http://www.cbsa-asfc.gc.ca/import/ex-eng.html>

309) CBSA, "CBSA Commercial Examination Processes and Detection Technology", 2009.

b. 물품의 처분

수입신고 이후 특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관에 남겨진 물품은 관세법, 물품보관 규정 및 단기간의 물품보관 규정에 의해 일반 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 후 40일,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4일 이후 세관에 남겨진 물품은 관세법의 Subsection37(1)에 규정된 안전장소(safe-keeping)³¹⁰⁾에서 보관되며, 담배, 무기류, 화기류 등의 경우 14일, 술은 21일이 지나면 압류된다.

6) 기타

a. 사후심사(Post-Release Verification)

사후심사는 심사대상의 선정방식에 따라 CBSA가 과거 통관기록을 바탕으로 임의로 조사대상 수입업자를 선택하여 캐나다 통관법 및 기타 관련부처 규정예의 일치성 여부 등에 대해서 심사하는 임의사후심사(Random Post-Release Verification)와 우선심사대상품목 리스트가 미리 결정되어 고시되며, 위험요인 분석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어 매년 2회 발표되는 타깃사후심사(Target Post-Release Verification)가 있다³¹¹⁾.

b. 벌금제도(AMPS)

캐나다는 통관서류 작성오류에 대한 벌금제도(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System: AMPS)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세법, 관세표, 기타 이와 관련한 규정의 위반이나 라이선싱 협정 및 합의관련 조건의 위반 등에 대하여 CBSA가 통관 입법·규제·프로그램 요구조건의 비준수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수출 통관 절차

1) 수출신고 및 관련 서류

310) 보세창고, highway frontier examining warehouse 등을 말한다.

311) CBSA, "Memorandum D11-6-8 : Verification of Origin, Tariff Classification, and Value for Duty of Imported Goods".

a. 수출신고

수출신고는 관세법 Section 95, 수출품 신고규정(Reporting of Exported Goods Regulations)의 Section 2, MEMORANDUM D20-1-1에서 다루고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BN)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인 수출업자, 유효한(valid) 운송인등록번호(carrier code)가 있는 운송인, 통관 중개인이나 화물 포워더 등과 같은 통관서비스 제공자만이 할 수 있다.

수출신고는 G7 EDI 및 수출신고서 양식 Form B13A를 제출하는 서면방식과 사전인증을 통한 인터넷 수출통관방식이 있으며,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b. 필요서류 및 수출신고 대상 품목

해당 수출품의 도착지 및 품목의 특징에 따라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 및 수출신고가 필요한 품목은 차이가 있다.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와 미국 간 체결한 수입데이터 정보교환 양해각서(MOU)에 따라 일반 물품은 수출신고에서 면제되지만 수출입 관리대상 품목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가치에 상관없이 수출신고 대상이 되며, 수출품 신고규정의 Section 8에 근거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합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세관 직원이 서면으로 수출신고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2천캐나다달러 이상의 특정한 비상업용 물품, 수리 및 추가 제조과정이 이루어진 경우, 보세창고에서 수출되는 품목, 캐나다를 출발하여 미국을 통과하여 제3국으로 운송되는 품목, 수출 통제 품목, 2천캐나다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수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출신고서, 수출허가서, 면허 및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물품검사

세관은 관세법의 Subsection 99(1)(c)에서 수출품에 대한 물품검사에 대한 규정에 따라 물품이 CBSA에 신고된 이후 캐나다에서 떠나는 시점까지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물품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MEMORANDUM D20-1-1에 따른 물품검사는 출항예정인 항구나 CBSA가 지정하는 세관에서 이루어진다.

3) 기타

a. 벌금제도

캐나다 세관은 통관 절차상의 법규 준수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출 통관 절차에 관련된 전 부문에 걸친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벌금을 부과한다.

b. 기록보관

캐나다 거주인 수출자의 경우 캐나다 관세법 Subsection 97.2(1)에 따라 캐나다 내 사업장이나 정부가 지정한 여타 장소에 해당 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캐나다 비거주인 수출자의 경우 수출자 및 생산자의 기록보관 규정(Exporters' and Producers' Records Regulations)에 따라 개인마다 서류 보관을 위한 지정장소가 정해진다.

만약 이 수출자 대신 통관서비스 제공자가 대신 수출 통관을 진행할 경우 해당 사무실에 보관하며³¹²⁾, 만약 해당 서류가 적절하게 보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벌금(AMP)이 부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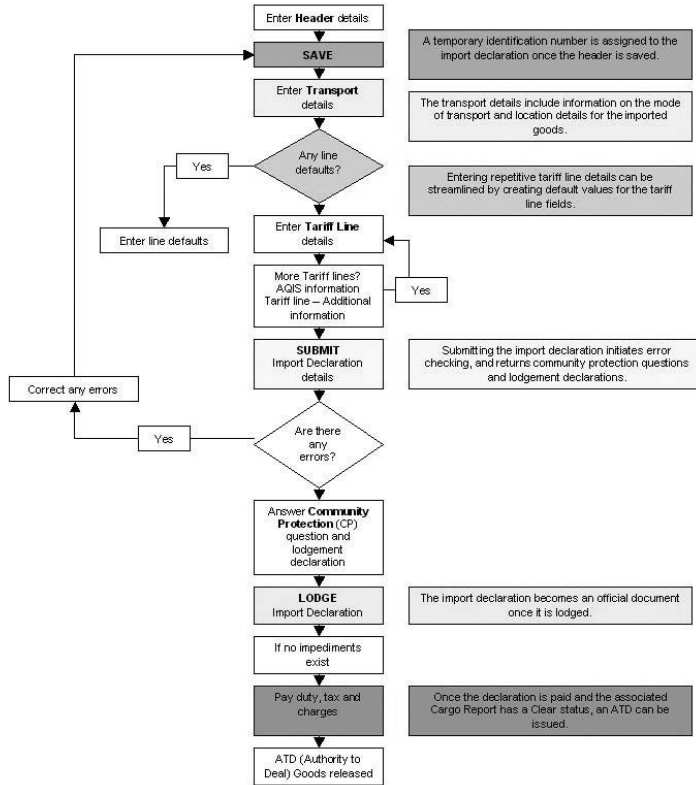
바. 호주의 수출입 통관절차

(1) 수입 통관 절차

호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평균관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청정지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지키고 해외로부터 질병이나 병충해 도입을 막기 위해 일부 농수산물 등의 엄격한 검역,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농림수산부(Department of Agricultural, Fisheries and Forestry Biosecurity, DAFF)의 역할 및 기능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12) <http://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97-71/index.html>

<그림 4-7> 호주의 수입신고 절차



자료: Import Declarations Overview, Australian Customs Service, 2005, p.60.

기본적으로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관세 등의 부과, 징수의 책임기관인 호주 세관 및 국경관리 서비스(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ACBPS)의 수입신고 절차는 수입업체에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지만 동시에 의무 및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1) 수입신고 방식 및 절차

a. 일반품목

호주의 수입통관신고는 방식에 따라 수입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세관의 관리하에 있는 품목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통관을 하는 완전수출신고(Full

Import Declarations, FIDs), 해상이나 항공화물을 통해 수입되는 수입품목의 가치가 1천호주달러 이하일 경우에 해당되는 비동반개인자산(Unaccompanied Personal Effects, UPEs), 간이수입신고(Self Assessed Clearance, SAC) 방식 등으로 나누어진다.

수입신고는 호주 통합화물관리시스템인 ICS를 이용하여 수입신고서 저장, 수입신고서 제출, 수입신고서 신고처리의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수동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ICBPS가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입력한다. 수입업자는 내국세 및 관세 등을 납부한 후 수입신고 수리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된 물품을 반출한다.

b. 식품 수입

호주의 식품 수입 절차 역시 수입업자가 ICS를 통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입 품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하지만 강력한 검역 및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라벨링, 안정성 검사,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 등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과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련부처인 호주 검역검사국(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AQIS)에서 수입대상품목에 대한 RMA(Risk Management Analysis)³¹³⁾를 실시하고, 승인이 완료되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해 방출허가가 이루어지며, 이를 ACBPS에 통보함으로써 세관에서의 작업이 완료되게 된다³¹⁴⁾.

<표 4-22> 한국-호주의 농수산물 수입 추이

	중량(kg)	금액(\$)	전년대비 금액(%)
2013	5,131,356	2,448,934	-15.2
2014	4,967,040	2,553,469	4.3
2015	5,202,838	2,493,151	-2.4
2016	5,505,825	2,650,683	6.3

자료: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kati), 2017.

313) AQIS가 수입예상 품목에 대하여 심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 특정품목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는 1주일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새로운 품목에 대한 조사일 경우에는 12개월에서 15개월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AQIS의 담당 연구원은 해당 국가(품목의 원산지 등)를 방문할 수 있으며, 방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출국가에서 부담한다.

314) 김한성, 전게서, 2013.

c. 우편을 통한 수입

주류 및 담배 품목이거나 수입액이 1천호주달러 미만인 물품이 우편을 통해 호주로 들어오는 경우 AQIS와 ACBPS에 일반 수입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우편이 호주에 도착하면 AQIS와 ACBPS가 수입액과 내용물에 대한 판단 후, 해당 기관의 관련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수입물품을 호주 우체국에 보내 배달을 의뢰한다.

반면 주류 및 담배 품목이 아니거나 수입액이 1천호주달러 이상인 물품이 우편을 통해 호주로 들어오는 경우는 호주 우체국이 ACBPS를 대행해 관련 세금의 징수 및 물품 인도를 담당한다. 호주 우체국은 수입업자 또는 수취인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안내장(Notice to Importer)’을 통지하며, 안내장을 받은 수입업자 또는 수취인은 수입신고서를 작성 및 저장하고 제출한 후 일반적인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d. 주류 및 담배 수입

수입액에 상관없이 주류 및 담배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관세 및 WET, GST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수입신고 절차는 수입방식과 관세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먼저 우편으로 수입되면서 주류 또는 담배 제품의 관세가격이 1천호주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간이수입신고(SAC)을 하지 않도록 면제해주고, 우체국이 아닌 ACBPS가 직접 관리하여 관련 세금 납부안내서와 함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도착 사실을 보내 모든 세금 및 관련 비용의 납부가 완료되면 해당 물품을 호주 우체국으로 보내 배달을 한다.

하지만 수입되는 주류 또는 담배 제품의 관세가격이 1천호주달러 이하일지라도 우편이 아닌 해상이나 항공을 통해 수입되는 경우에는 간이수입신고(SAC)를 해야 한다.

2) 관세와 관련 세금 및 기타 비용의 부과

a. 관세 및 기타 세금 부과

신고처리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정보에 따라 해당 수입품목에 대해서 부과되는 관

세의 경우 원산지 충족 여부, 수출국, 수입 품목 등에 의거하여 Customs Tariff Act 1995에 따라 일반관세 또는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호주 국세청을 대신하여 ACBPS는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GST, 고급자동차세, 와인균등세 등을 수입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b. 수입처리비용

호주는 해상, 항공, 국제우편 등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수입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수입처리요금(Import Processing Charge)이라는 명목으로 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수입처리요금 부과 대상이 되는 수입은 관세가격을 기준으로 1천호주달러이다³¹⁵⁾.

(2) 수출 통관 절차

1) 수출신고 방식 및 절차

a. 일반품목의 수출신고 절차

호주는 자국에서 수출되는 품목 중 2천호주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품목을 수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출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화물관리시스템인 ICS(Integrated Cargo System)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식, Form B957a(Export Declaration Supplementary Page)를 이용하는 방식, Form B957(수출신고서)를 작성하는 서면신고 방식을 통해 일정한 수출신고 절차를 요구한다. 하지만 2천호주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품목이라도 군용선박이나 항공을 이용해 운반되는 군용 물자, 개인적 자산, 호주 우편물 또는 외교관 물품, 관세법 제162A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카르넷(Carnets), 애완동물 등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수출 시점에서 6개월 이전부터 수출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며, 수출신고 정보는 호주 통계국(ABS)의 호주 교역데이터 작성의 기초자료이며, 이는 연방정부, 지방정부,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반영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방식으로 수출신고

315) Import Processing Charges Regulations 2006.

를 하더라도 수출품이 선적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호주에서 출발하는 모든 선박 및 항공기는 호주 관세법 제231조의 신고자 보고의무에 따라 주요 적하목록을 출발 3일 전까지 ACBPS에 신고처리하면 ACBPS는 각각의 수출신고서에 대하여 수출신고번호(Export Declaration Number, EDN)를 부여하며, 만약 수출 예정일의 30일이 지나도록 수정도 없이 수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출신고서에 대한 허가는 자동 취소되며 EDN 또한 상실된다. 따라서 해당 물품을 다시 수출하게 되는 경우 수출업자는 수출신고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

b. 기타 특수 품목의 수출신고

첫째, ACBPS는 인터넷을 통하여 소프트웨어가 거래되는 경우에는 신고의 의무를 부가하지 않지만 데이터가 Regulation 3 of the Customs(Prohibited Exports) Regulations 1958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수출을 금지할 수 있으며, 국방·전략 상품목록에 해당되는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의무적으로 접촉하여야 한다.

둘째, 1만호주달러 이상의 현금(여행자수표나 여타 지불수단은 미포함)이 수출되거나 개인소유의 현금을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호주거래보고분석센터(Australian Transaction Analysis Centre, AUSTRAC)의 권고를 받아야 한다.

셋째, 호주 주변을 항해하던 소형 선박이나 항공기 등이 호주를 떠나 영구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출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물품검사

호주는 국경 보호 및 마약 단속을 위해 CEFs(Container Cargo Examination Facilities)를 통해 모든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고 있으며, 2013년 CEFs에 대한 이해도 강화 및 운영을 위한 업무준칙을 제안하는 등 CEFs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수출물품 검사에 대한 주체, 수출 신고, 수리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수출통제법에서 다루지 않는 검사장소 통지, 수출 예정보고, 표시가 잘못된 수출품, 통제물품 수출 등에 대해서는 상업법에서 다루고 있다. 물품 검사 시 세관원은 상업법에 의거 어떤 장소라도 모두 출입하여 검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³¹⁶).

(3) 수출입 통관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수출입 통관 절차의 문제점 개선방안으로는 과도한 검사 및 검역을 자제해야 한다.

호주의 농수산부는 수입식품 검역규정에 따라 식품 검사 및 검역을 하며, 1년에 2번 씩 통계를 발표한다. 하지만 2016년 전반기 통계에 따르면 추가 검역을 요구 받은 98.9%의 식품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다.

2. 통관관련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무역원활화 및 국경안정 강화를 위한 통관제도의 개선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에 물품 반출시 지적재산권, 상표권 보호 규정마련, 소량, 소액의 우편물 통과절차 마련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수출입 및 항만·공항관련 수속에 관련하여 세관을 시작으로 각각의 기관에 대해서 필요한 수속이 실시되지만 그 중 유사한 입력항목의 수속이 있으므로 국내 관계 부처 및 정부간의 제휴를 통하여 수속의 간소화 및 전자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싱글윈도우 체계를 고도화 하여 신고서식의 통합을 추진하고 중복되지 않게 한 번의 신고로 수출입신고 및 요건확인신청이 가능하여야 한다.

점점 지능적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통관 범죄유형의 대처를 위한 기술적 장치 등의 개발 및 위험관리를 위한 제도와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관세법 편장을 주요 국가의 관세법 편장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재정비 및 분법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법 조문수는 362개에 달하며, 관세행정의 개방화·국제화·현대화에 따라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재조정 및 분법하여야 한다³¹⁷⁾.

또한 신속한 통관을 위한 통관협정제도 도입 협력, 수입허가제 및 규제 완화 노력, 미 통관 화물의 국제상거래 관례 준수 협력, 고관세율 적용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협

316) 강성훈, 김미영, 노영예, 전계서, p.42.

317) 김태인, “한국과 미국의 관세법 및 통관제도 비교 연구”, 무역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무역연구원, 2015, p.522.

력, 화물검사의 간소화 협력, 수출입 통관 서비스에 관련한 무역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 과세가격 산정 시 합리화 방안 구축 협력, 무역원활화와 국경안전 강화를 위한 관세협력, 교류협력 법제를 개선하여 제한 승인 품목의 축소 및 전략물자 반출입 절차 개선, 위험관리기법 도입을 통한 반출입 절차의 간소화 등 많은 제도의 도입 및 노력이 필요하다.

가. AEO 도입 활성화

통관관련제도에서는 AEO제도와 사전심사제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AEO 제도는 인증을 받은 업체들에는 혜택을 부여하지만 AEO 제도에 대해 모르거나 공인기준이 까다롭거나 비용이 부담스러워 공인을 받지 못한 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무역에 관련된 업체들이 국내·외에서 혜택을 받기 위하여 AEO 제도를 이해하고, AEO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관리자들이 AEO 제도를 잘 이해하여 AEO 공인 인증을 받고자 하도록 하는 노력을 북돋아 줘야 한다. FTA 확대에 맞춰 관세청에서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의 무료 발급 및 무료컨설팅 등을 통하여 지원한 결과 우리나라는 조기에 FTA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졌다.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아지는 AEO 제도는 국내기업들이 국내 및 국외에서 통관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명회 또는 컨설팅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AEO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AEO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심사 2개월 및 현장심사 2개월의 시간이 걸리며,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공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AEO 공인을 받더라도 유효기간이 3년(종합심사시 5년) 이어서 기업에서는 등급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영세 업체들은 AEO 공인 인증을 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는 다방면의 측면에서 AEO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은 중국 내수시장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통관제도와 달리 관행, 환경, 적용법규 등이 매우 복잡하고 전체적으

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많은 기술적 자문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통관 진행과정의 정확한 이해 및 통관절차에 대한 자체관리 능력을 높이고, 관세제도의 제정 및 개정사항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관련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³¹⁸⁾.

나. 사전심사제도

우리나라의 사전심사제도는 주요국 및 APEC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과 대부분 유사하지만 몇 가지 개선 및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에 대한 재심사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산지 사전심사 외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므로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행정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재심사제도가 마련되면 납세자의 권리보호 뿐만 아니라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분쟁에 대한 행정부담 완화 및 제도의 공정성 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사전심사 결정내용을 수입신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서상에 사전심사 결정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이 서류심사 단계에서 사전심사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다시 입증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그러므로 캐나다, 호주, 중국처럼 통관 전에 사전심사를 받은 대상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양식에 사전심사 번호를 통지 및 신고하여야 한다.

셋째, 사전심사의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은 검토되어야 한다. 다른 주요국들은 사전검사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아직 이 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니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결정하여 나아가야 한다.

318) 주중대사관 관세관, “중국의 수출입·관세동향과 통관관리”, 통관제도발표 설명자료, 2014, pp.53-54.

제5장 결 론

제1절 논문의 요약

국제무역의 흐름 및 이슈는 거래절차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상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무역의 안전 및 원활화’이다.

세계 각국들은 국제적인 상품이동과 관련하여 복잡하거나 불필요한 통관절차가 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통관절차를 자동화하고 간소화함으로써 무역원활화 실현 및 교역을 확대를 위한 노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01년 미국의 9.11 테러를 기점으로 국제적으로 무역원활화의 촉진 및 국경안전을 위한 수출입화물의 보안확보가 강화됨에 따라 국제적 물류보안체제 구축에 대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SAFE Framework’를 채택하여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무역의 흐름에 따라 무역원활화를 위한 방법으로 신속한 통관과 리드타임의 단축 등에 대하여 우수업체로 인증 받은 기업만이 향유할 수 있는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 우수업체) 제도가 도입 및 활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통관제도 현황과 해외 선진통관 국가들인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의 통관제도 현황을 조사 및 비교하여 통관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통해 무역 흐름에 맞춰 통관제도 선진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세계 무역 규모는 FTA의 확대에 의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관과 관련하여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절차가 원활한 무역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제기구 및 기관들은 통관절차에 따른 부담 및 무역에 의한 거래비용을 최소화시켜 무역 원활화를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관세기구(WCO)는

세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개정교토협약을 비준하고, WCO SAFE Framework라는 화물보안 의정서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WCO SAFE Framework에 동참하기 위하여 2009년 AEO제도를 도입하였다. AEO 제도는 안전하고 성실한 수출입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세관당국에서 인증을 받을 때 불필요한 통제 및 검사 등의 비관세장벽을 최소화 하자는 제도이다. 또한 사전심사제도는 최근 국제 무역사회에서 통관절차의 신속, 투명성, 표준화의 강화를 위하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무역원활화의 이행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주요 조사국 가운데 우리나라만이 수출단계 중 적재지에서 수출검사를 이행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나머지 다른 국가들은 모두 물품검사를 신고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수출통제제도를 마련하여 관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며, 단지 미국만이 EIS 및 ATS-AT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위험 물품을 파악 및 감시하고 있다. 이렇듯 제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수출통관제도에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관세법 처벌의 주요 근거 법령은 우리나라 및 일본, 캐나다의 경우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특가법 규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주요 조사국의 경우 일본만 처벌 조항에 가중처벌 내용이 함께 존재할 뿐 특가법에 해당하는 가중처벌 법령은 따로 없다.

넷째, 소액 면세에 대한 기준금액은 각 국가의 제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특례제도로써 특송 물품의 경우 간이통관 및 목록통관 제도를 운영하며, 우편물인 경우 간이신고 및 현장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는 대부분 특송물품, 우편물, 전자상거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이나 관련규정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소액면세기준을 일반수입, 특송물품, 우편물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세법 외에 하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간이신고와 소액범위의 기준이 상이하므로 그 기준을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관세법 처벌 규정은 캐나다 및 호주의 처벌 수위의 기준은 법원 기소 여부이며,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밀수출의 행위를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여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시 물품 검사 등에 제한을 주요 조사국보다 많이 두는 편이지만 밀수출의 제재 수위는 조사국 중 가장 낮다. 허위신고죄는 미국, 일본, 캐나다의 경우 징역이 부과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단지 벌금으로 그쳐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하고 있다. 금지품 수출입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징역이 부과되는데 반해 미국 및 캐나다의 처벌 규정은 관세법상 조항보다는 관련 개별법에 산재되어 산재되어 세분화시켜 처벌하므로 처벌에 따른 강도 비교는 힘들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 조사국 중에서 대부분인 미국, 일본, 캐나다는 형의 병과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가마다 형의 병과 규정은 다르다.

여섯째, 관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AEO 제도는 모든 공급자들과의 자발적 파트너십을 기본으로 하여 조사, 심사, 통관 등 관세행정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 및 법규준수도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주요 조사국에서는 물류의 안전을 위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어 운영 및 정책방향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AEO 공인 후 갱신 심사 때 통관적법성 및 화물 안전관리기준 적법성을 심사함으로써 행정비용 감축 및 정해진 행정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요 조사국의 경우 AEO 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일곱째, 사전심사제도는 호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관세법에 제도화 되어 있으며, 대부분 원산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효기간 및 처리기간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다소 상이하지만 큰 틀은 APEC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부분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관제도는 다른 주요 조사국보다 교역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지만 불법수출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관세법 처벌 규정을 비교하면 주요국에 비해 불법수출 행위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으나 국가별로 법적, 문화적 체계가 다르다. 불법수출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진흥정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처벌 수위의 조정보다는 현장의 감독 및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요 조사국들에 비하여 잘 정립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 및 제도적 장치를 유지함과 동시에 불법수출 유형에 관한 관련 정보를 구축하여 제도의

실효성 강화, 위험관리 강화, 현장의 감독 및 감시 강화 등을 방법을 사용하여 불법수출 행위를 통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통관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 방안으로는 통관제도와 통관관련제도로 구분하였다.

통관제도에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장치를 마련, 국내 관계부처 및 국외 정부간의 제휴, 제도와 법률 제정, 관세법 편장의 재조정 및 분법 외 다수의 방안이 있다.

통관관련제도에서는 AEO제도와 사전심사제도로 구분하였다.

통관관련제도에서는 AEO제도와 사전심사제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AEO 제도는 인증을 받은 업체들에는 혜택을 부여하지만 AEO 제도에 대해 모르거나 공인기준이 까다거나 비용이 부담스러워 공인을 받지 못한 업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무역에 관련된 업체들이 국내·외에서 혜택을 받기 위하여 AEO 제도를 이해하고, AEO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AEO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전심사제도는 주요국 및 APEC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과 대부분 유사하지만 몇 가지 개선 및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사전심사 결정내용을 수입신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전심사의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은 검토되어야 한다.

제2절 논문의 한계 및 향후과제

본 논문은 통관제도 분석을 통한 무역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연구논문 및 유관기관의 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요 국가의 통관제도 및 통관관련제도를 분석하여 통관제도 선진화방안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로써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대안 제시는 부족하고, 외국의 경우 주로 민간 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공식적인 자료들이 많지 않아 활용하지 못한 점은 본 논문의 한계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통관환경이 개선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KOTRA 도쿄 무역관, “KOTRA 국가정보-일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4.
- KOTRA 베이징 무역관, 「KOTRA 국가정보-중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4.
- KOTRA, “미국의 관세제도“, 국가정보, 미국.
- _____, “미국 국가정보 주요산업동향”.
- _____, “일본·한국과의 교역 및 특징”,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국가정보, 2014.
- _____, 「국가정보(중국), 주요인증제도」, 2010.
- WTO, “2015 세계 무역보고서”, 2015.
- 강성훈, 김미영, 김다량, “AEO 공인기업 사후관리제도 국제비교”, 관세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강성훈, 김미영, 노영예, “교역안전 제고를 위한 국제 수출통관제도의 동향 및 시사점”, 관세연구, 제14권 제5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 : 무역비용의 잠정적 효과”, 2015.
- 곽병근, 송희영,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0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09
- 관세무역개발원, “AEO 심사기법과 확산방안 연구용역”, 2009.
- 관세무역연구원, 중국관세무역신보, 2011-12호, 2011.
- 관세무역연구회, “중국의 관세 및 통관환경”, 「중국관세무역신보」, 2012년 1월호, 2012.
- 관세청, “2011년 수출기업 해외통관업무 협의회 발표자료”, 2011.
- _____, “2012년 관세관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설명자료”, 2012.
- _____, “관세연감 2014”, 2015.
- _____, “일본관세관 연구과제 보고서”, 2014.
- _____, “해외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매뉴얼”, 관세행정안내, 2017.
- 관세청·관세무역개발원, “외국 관세청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 연구: 중국”, 2012.
- 국제상의(ICC)·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세계무역의제의 영향”, 2013.

-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4.
- 김경호, “AEO제도의 실질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EO에 대한 사무관리 절차 개정을 중심으로”, 2013.
- 김석민, “WTO 무역원활화 논의에 따른 중국의 통관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 논총, 제43집, 한국동북아학회, 2007.
- 김석오, “C-TPAT 활용을 통한 대미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3.
- _____, “미국의 수입통관장법과 시사점”, 「관세사」, 한국관세사회, 2014.
- _____, “미국의 수입통관장법과 시사점”, 계간 관세사, 통권 173호, 한국관세사회, 2014.
- 김원석, “중국의 관세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2009.
- 김재일, “한국 관세청의 위험관리 고도화를 위한 AEO 제도 효율화 방안”, 관세청, 2014.
- 김종성, “일본의 통관제도 연구”, 유통정보학회지, 제11권 제4호, 한국유통정보학회, 2008.
- 김중훈, “WTO 무역원활화에 따른 중국의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 13권 제3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2.
- _____, “중국 AEO 제도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해양비즈니스」, 제21호, 2012.
- 김태인, “한국과 미국의 관세법 및 통관제도 비교 연구”, 무역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 무역연구원, 2015.
- 김한성, “주요국의 통관제도 - 호주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남풍우, 최준호, “무역원활화와 교역안전을 위한 일본세관행정의 u-Customs 구현 전략”, e-비즈니스연구, 제7권 제5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6.
- 농수산물유통공사, “중국수입제도 및 수출 애로사항 조사”, 2010.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중국”, 2012.
- 라공우, 강진욱, 김형철, “한일 세관행정 변화와 전략적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 라공우, 강진욱, 이선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1.
- 라공우, 민태홍, 김형철, “러시아 관세제도와 통관애로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12.
- 민경식, “일본의 EPA 추진과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6권 제2호,

- 한국무역연구원, 2010.
- 백승래, 유성진, “물류촉진형 통관제도 구축방안”,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2권 제8호, 한국항해항만학회, 2008.
- 법무법인 광장, “관세형법의 개선방안, 2009.
-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 2.22 발효 -WTO 회원국의 통관 절차 효율화로 우리기업의 수출여건 개선 기대 -”, 보도참고자료, 2017.
- _____,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중 9번째로 무역원활화협정 수락서 기탁”, 보도자료, 2015.
- 삼일회계법인, “관세가격 평과와 이전가격의 조화 방안 연구”.
- 서오관, “수입통관 제비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5.
- 성남길 외 4인,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제도의 해외 사례조사 및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9.
- 성남길, “戰略的 提携를 통한 通關業體의 競爭力 強化 方案에 관한 實證研究”,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9.
- 성한경, 이민선, 김수영, “주요국의 통관제도: 미국”, 2014
- 송선옥, “미국 관세심사의 기업내부통제시스템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4권 제3호, 2009.
- 안암, “중국 전자통관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전자통관시스템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13.
- 양준석, “WTO의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논의와 정책적 함의”, 무역학회지, 제29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4.
- 엄광열, “한국과 극동러시아간 교역증진을 위한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강원도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9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08.
- 오현길, “WTO 발리패키지 무역원활화협정 즉시 이행”, 아시아경제, 2014.
-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중국)」, 2010.
- 우리은행 외환센터, 수출입통관·관세상담서비스.
- 이남구,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정책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06.

- 이상엽, 김미영, 이민선,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비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이선민, “Network DEA를 이용한 컨테이너터미널의 효율성분석”, 2013.
- 이양기, “관세평가의 전자적 적용을 위한 통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1.
- 이유나, “中國의 重裝備 機械 통관제도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2011.
- 일본 관세국·일본 재무성, “AEO program”.
- 장건위, “중국통관제도의 현황 및 발전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1.
- 장다영, “FTA확대에 따른 AEO 제도 활성화 방안 -부산세관 수입통관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진군중, “한·중 FTA 협상의 주요 이슈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전략물자관리원,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자세히 알아보기”, 전략물자 관리제도, 2011.
- 전형진, “중국의 농산물 무역정책과 수출입제도”, 「해외농업시리즈9: 중국농업2」,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2012.
- 정재호, 김미영, 류태현, “무역원활화를 위한 중국의 FTA 통관규정 연구”, 관세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조세연구원, 2012
- 정재호, 김수영, 노영예, “주요국의 관세범 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정재호, 마정화, 정경화, “미국의 수출통관제도 조사”, 관세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원, 2010.
- 정재호, 마정화, 정경화,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조항 조사”, 세법연구, 09-03,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정재호, 박지우, 양지영, “주요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제도 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정재호, 김미영, 이민선, “주요국의 수출입신고서식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정형곤, 나승권, 노유연,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정환우, “한·중 FTA 비관세장벽 분야 쟁점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지역연구실, 2012.
- 조룡, “한·중 통관절차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2011.
- 조미진, “주요국의 통관제도 -캐나다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조일림, “중국의 관세 및 수입통관제도의 문제점과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6.
-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 2012.
- 주중대사관 관세관, “중국의 수출입·관세동향과 통관관리”, 통관제도발표 설명자료, 2014.
- 중국관세무역연구회, “중국관세무역신보”, 제2011-14호, 2011.
- _____, “중국관세무역신보”, 제2011-1호, 2011.
- 중국해관총서(GACC), “Legislations on Certified Enterprises/AEO:III, Bulletin No.81 of GACC, 2014,” 2015.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수출입상품 검험법실시조례”, 국무원령 제447호, 제32조, 2005.
- _____,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보호조례」, 국무원령 제 572호, 제2조, 2010.
- 지식경제부, “대외무역법 법령 해설 및 유권해석 사례집”, 무역정책관, 2014
- 진설, 김희철, 박정희, “중국 전자통관의 구축현황과 발전방안”, 「전자무역연구」, 제9권 제3호, 2011.
- 천홍욱, “한국 수출입기업의 AEO제도 도입요인이 활용수준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최장우,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0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09.
- 최준호, “인도의 수출입통관제도를 이용한 한·인도 CEPA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무역연구원, 2015.
- 최준호, 한상현, “관세법령 개정에 따른 한-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MRA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한국 관사와 일본 통관업자를 중심으로”, 「e-비즈니스연구」, 제11권 제5호, 2010.
-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중국편」, 2009.
- 팻다오후영위앵사완, “한국 통관시스템 기반의 라오스 통관절차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 청주대학교 대학원, 2013.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AEO 심사기법과 확산방안 연구용역”, 관세청, 2009.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중국”, 2013.
- _____,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중국”, 2012.
- 한국무역협회, “WTO 무역원활화 협정(TFA) 공식 개정의정서 채택과 기대효과”,
Trade Brief, 국제무역연구원, 2014.
- _____, “중국 비즈니스 실무가이드”, 제5장 무역제도, 2011.
- _____, “한·중 FTA 비관세장벽 분야 쟁점과 시사점”, Trade Focus, 제11권 제24호,
국제무역연구원, 2012.
- 한국수출입은행, “국가개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세법연구센터, 2013.
- _____, “주요국의 통관제도 - 일본편-”, 2014.
- _____, “주요국의 통관제도 - 미국편-”, 2014.
-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중국 수산물 수입 통관제도”, Global Seafood Market Trends,
Vol.1-3, 2015.
- 한상현, 최준호, “WCO표준(Standards)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보완조치 강화방안”,
한국관세학회, 2007.
- _____, “수출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미국의 자동수출신고시스템(AES)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 연구」, 11권 제2호, 2010.
- 한상훈, “해외직접구매와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3권 제1호, 중앙
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5.
- 한상훈, 김태환,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제도와 SaudiEDI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5권 제1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4.
- 해관총서, 「수출입화물 검사관리방법」, 해관총서령 제138호, 제7조, 2005.
- _____, 「해관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제5-6조, 해관총서령 제148호, 2006.
- _____, 「해관수출입화물 상품분류관리규정」, 제5조, 해관총서령 제158호. 2007.
- 홍미선, “통관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활성화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5.

【국외 문헌】

- Aleksandar Erceg, “The New Computerized Transit System And E-Customs Influence On Savings In Transit Time And Costs”, *Business Logistics in Modern Management*, Vol.13, 2013, pp.143-152.
- APEC, “Benefits of TILF in APEC,” 2001.
- _____, “2010 CTI Annual Report to Ministers,” Appendix 6: APEC Guidelines for Advance Rulings, 2010.
- Assanie, Nizar. Michel Hardy and Mariette Maillet, “Facilitating Asia’s Trade :A Rol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Discussion Paper,”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2000.
- Authorised Economic, “Operator-Australian Position,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s”, 2012.
- CBP, “C-TPAT Validation process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16.
- _____, “C-TPAT’s Five Step Risk Assessment Process,” 2014.
- _____, “Supply Chain Annual Security Profile Review(Formerly Self Assessment)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10.
- CBSA, “CBSA Commercial Examination Processes and Detection Technology”, 2009.
- _____,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s”.
- _____, “Examining your shipment”.
- _____, “Importing Commercial Goods into Canada”.
- _____, “Memorandum D11-6-8 : Verification of Origin, Tariff Classification, and Value for Duty of Imported Goods”.
- Deloitte Japan, “China Customs May Expand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Nationwide”, *Tax Newsflash*, 2015.
- _____,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Introduced in China(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Tax Newsflash*, 2014.
- Documentary Import Declaration Comprehensive Guide.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February 2012, p.61.

- EC, "EU Cost 306 Final Report," 1989.
- Emst & Young Tax Co, "Impact of 2016 Japan tax reform on Customs Law," 2016.
- Evdokia Molve, Thomas Orliac, Peter Minor,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the impact on trade costs,"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s No.118, 2011.
- IAPH, "Implementation of UN/ECE Recommendation[063]- Methodology for Estimating Costs and Benefits of Trade Facilitation," Contribution to UN/CEE meeting, 1986.
- IFCBA, "China customs self-compliance pilot likely to extend into 2015,"
- Import Declarations Overview, Australian Customs Service, 2005, p.60.
- International Trade Center,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A Business Guide for Developing Countries," 2013, pp.10-11
- Japan customs, "ADB-WCO National Workshop on RKC Implementation", 2014.
- _____, "Japanese experience on implementing RKC requirement on Special Procedures for Authorized Persons and AEO," 2014.
- Juha Hintsa, Toni Mannisto, Luca Urcioli and Mikael Granqvist, "Future development of e-Customs: a survey study with Swiss compan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Government Research*, Vol.8, No.4, IGI Global, 2012, pp.1-13.
- Mondaq, "China: China Customs: pilot "Voluntary Disclosure" Programme", 2016.
- Neufield, Nora, "The Long and Winding Road: How WTO Members Finally Reached 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WTO Economic Research and Statistics Division, Staff Working Paper, 2014.
- Paolo Cecchini, "The European Challenge 1992: The Benefit of a Single Market," Hampshire, Gower Publishing, 1988.
- Pravin Gordhan, "Customs in the 21st Century", *World Customs Journal*, Vol.1, No.1, 2007, pp.49-54.
- Shao Weijian, "China AEO Program," 2016.
- Stefan Henningsson, Niels Bjorn-Andersen, "Exporting e-Customs to Developing

- Countries: A Semiotic Perspective”, Inform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Paper 7, Proceedings of Second Annual SIG GlobDev Workshop, Phoenix, USA, 2010, pp.1-17.
- Stephen Holloway, “THE TRANSITION FROM eCUSTOMS TO eBORDER MANAGEMENT”, *World Customs Journal*, Vol.3, No.1, International Network of Customs Universities, 2009, pp.13-25.
- UNCTAD, “Columbus Ministerial Declaration on Trade Efficiency,” 1994.
- _____, “Trade Facilitation-Technical Notes: Advance Rulings(TN/TF22),” 2011.
- US CBP, “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2006-2011 Strategic Plan, August 2006, p.37.
- WCO, “Compendium of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Programmes,” 2015, p.30.
- _____, “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Guidelines, Benefits to AEO,” 2015.
- _____, “Practical Guidelines Valuation Control,” 2012, pp.21-24.
- WTO, “2015 세계 무역보고서”, 2015.
- Yadashi Yasui, “Trade Facilitatio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CO Research Paper No.30, 2014, p.4.
- Yun-Wing Sung, “The China-Hong Kong Connection(The Key to China’s Open Door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10.

【인터넷자료】

<http://blog.naver.com/leegerlie/80011172046>

[http://chn.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4419&seqno=100267.](http://chn.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4419&seqno=100267)

http://english.exportal.or.kr/nation/101002/stamp/101002_4002_12991.pdf

<http://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97-71/index.html>

<http://portal.customs.go.kr/kcsass/index.jsp>

<http://www.aeo.or.kr/intrcn/aeoNationMraView.do>

<http://www.canada.gc.ca/aboutgov-ausujetgouv/structure/executive-executif-eng.html>

<http://www.cbp.gov/trade/priority-issues/import-safety/ctac>

<http://www.cbsa-asfc.gc.ca/eservices/overviewsommaire-eng.html>

http://www.cbsa-asfc.gc.ca/import/acc-resp-eng.html#P266_22757

<http://www.cbsa-asfc.gc.ca/import/ex-eng.html>

http://www.cbsa-asfc.gc.ca/import/services-eng.html#opt_04

<http://www.cbsa-asfc.gc.ca/prog/aci-ipecc/menu-eng.html>

<http://www.cbsa-asfc.gc.ca/publications/dm-md/d7/d7-4-1-eng.html>

<http://www.cra-arc.gc.ca/tx/bsnss/tpcs/bn-ne/bro-ide/menu-eng.html>

<http://www.customs.go.jp>

<http://www.customs.go.jp/english/aeo/pamphlet.pdf>

<http://www.customs.go.jp/hozei/index.htm>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3_jr.htm

<http://www.customs.go.jp/yusyutu/index.htm>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aeo/list.htm>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zeikancode.htm>

<http://www.customs.go.jp/zeikan/z-kikou.htm>

<http://www.dongponews.net/news/aricleView,html?idxno=29250>

<http://www.export.gov/>

<http://www.jastpro.org>

<http://www.maff.go.jp/pps/j/introduction/import/ikensa/index.html>

<http://www.meti.go.jp/policy/anpo/index.html>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index.html

<http://www.wcoomd.org/en/topics/origin/instrument-and-tools/comparative-study-on-preferential-rules-of-origin/specific-topics/study-topics/rul.aspx>

http://www1.mhlw.go.jp/topics/ysk_13/tp0419-1b.html